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 제3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제4차 본회의 회의자료



서 산 시 의 회

■■■■■■■■ **목 차** ■■■■■■■■

의사일정	안 건 명	쪽번호
1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전부개정규칙안	3
2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3	서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53
4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5	서산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2
6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4
7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6
8	서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5
9	서산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4
10	서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	180
11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공공용지 활용(동문1동 주차장)을 위한 토지 취득 - 수소도시 조성사업 부지 매입	196
12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3
13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9
14	생명연 서산분원 건립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	257
15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270
16	서산중앙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282
17	양유정햇빛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290
18	서산 바이오 웰빙 연구특구 계획 변경(7차) 의견제시의 건	298
19	도시관리계획(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11
2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25
21	서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342
2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89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7. 30. (목)

제 4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서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27.
의 회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26. 7. 16.
- 나. 발 의 자 : 가충순 의원 외 13명
- 다. 회부일자 : 2026. 7. 20.
- 라. 심사일자 : 2026. 7. 27.

2. 제안설명 요지

- 지방의회의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규칙 개정 권고에 따라 현행 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의 추천·공모 절차 구체화 및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 위촉 의무화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국 45일 전까지 의회 누리집에 사전 공개 및 10일 이상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다. 출장계획 변경 시 변경계획서 공개, 주민의견 수렴 및 심사위원회 재의결 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라. 임기만료 1년 이내 의원의 일반 목적 출장 허가요건 강화 및 징계·환수 처분 의원의 2년 이내 국외출장 제한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마.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적법·적정성 심의 절차 신설 및 위법·부당 출장 시 외부 감사·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바.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 요구 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징계현황 공개 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사.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위법·부당한 지시 금지 및 직원 보호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4. 검토의견 요지

- 본 규칙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규칙 개정 권고에 따라 현행 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이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26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발 의 자	가충순 의원 외 13명
발의연월일	2026. 07. 16.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가충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26 호
----------	--------

발의연월일 : 2026. 07. 16.

발 의 자 : 가충순, 장갑순, 강석환,
기양순, 김기욱, 김애란,
김혜림, 송치윤, 안원기,
이경화, 이국찬, 이 만,
이정수, 조동식

1. 개정이유

- 지방의회의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규칙 개정 권고에 따라 현행 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정 사항)

- 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의 추천·공모 절차 구체화 및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 위촉 의무화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국 45일 전까지 의회 누리집에 사전 공개 및 10일 이상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다. 출장계획 변경 시 변경계획서 공개, 주민의견 수렴 및 심사위원회 재의결 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라. 임기만료 1년 이내 의원의 일반 목적 출장 허가요건 강화 및 징계·환수 처분 의원의 2년 이내 국외출장 제한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마.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적법·적정성 심의 절차 신설 및 위법·부당 출장 시

- 외부 감사·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바.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 요구 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징계현황
공개 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사.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위법·부당한 지시 금지 및 직원 보호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40조, 제52조, 제98조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 「서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5조제1항

나. 관련 공문

-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안내」
충청남도의회 총무담당관-12025(2025. 12. 9.)

다. 현행 규칙

-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라.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공무국외출장하는 경우
4. 서산시장의 요청을 받아 공무국외출장 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제4조에 따른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전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 대상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의회 의정과와의 관련성
5.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사항

⑥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⑦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⑧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및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출장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관 방문 중심으로 일정을 구성하고,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이나 출장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까지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출장계획서가 의결된 후 출장 목적, 기간, 방문 기관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 이상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고 주민의견 수렴 후 심사위원회의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하며, 구체적인 환수금액 및 환수기한 등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③ 의장은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은 출장의 필요성, 긴급성, 출장 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제3호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제1항제4호에 따라 환수조치가 확정된 의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은 귀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심의 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13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의회 누리집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 열람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 대상 의원에 대하여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직원 보호 등)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 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을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9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8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4.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출장의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방의정과 관련성	1.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지?		
	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지?		
	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		
	2. 출장자 중 징계·환수 처분으로 출장제한 사유가 있는지?		
	3.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지?		
	4.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지?		
안전사고 예방 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 '아니오'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명	계	체재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5. 출장 주요정보 요약

공무국외출장 주요정보요약		
출장명		
출장자 명단	의원	
	직원	
	기타	
출장기간		
방문국가		
공식방문기관 (접촉자)		
여행경비	체재비	
	준비금	
	항공료	
	차량임차료	
	통역비	
	물품구입	
	기타비용	
	총 계	

비용 상세정보								
총 여행경비 (A+B+C +D+E+F+G)								
체재비 (A=a+b+c)								
	적용환율							
	구분(금액)	급지	호수	상한	일수	인원	산출금액	실지금액
	일비 (a)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O / X]						
	식비 (b)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O / X]						
	숙박비 (c)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O / X]						
준비금 (B)		지급사유:				금액:		
항공료 (C)		이용구간:				금액:		
차량임차료 (D)		이용일수: 이용차량:				금액:		
통역비 (E)		이용내역:				금액:		
기념품 등 물품구입 (F)		구입목적: 물 품 명:				금액:		
기타비용 (G)		지급사유:				금액: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 I.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
- II.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 III.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

3. 첨부자료

○ 출장계획서 및 회의록

※ 부결되었다가 재의결된 경우 부결된 심사위의 회의록도 포함

○ 실제 출장 수행 출장 주요정보 요약(별지 제1호 서식의 5.활용)

※ 출장자 취소, 현지 일정변경 등에 따른 출장, 비용 변동을 반영

○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

※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합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개별 의원별 보고서를 포함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②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삭제
- ④ 삭제
- ⑤ 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75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서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서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 공문

개인정보 철저히 지키고, 신뢰 높이고!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안내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229(2025. 12. 8.)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 및 시군 의회에서는 관련 조례(규칙) 개정 및 공무국외출장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나. 주요내용 : 심사위원회, 대행계약, 예산집행 및 초과부담, 사후관리 등(세부내용 불임 참조)

-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의 심사위원회 위촉 의무화
- 의원의 임기만료 전 1년 이내 출장 제한(외국정부 공식초청, 국제회의 참석 등 예외)
- 의원의 직원경비 대납 및 의원 자부담에 따른 직원 자부담 강요 금지
-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에 대한 직원의 거부 등

붙임 1.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1부.

2.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1부. 끝.



충청남도의회사무처장인

수신자 4) 의회사무처, 시군의회

주무관	총무팀장	총무팀담당관	전달 2025. 12. 8
이현정	박동진		정재석

참조지

시행 총무팀담당관-12025 (2025. 12. 9.) 접수 의회사무국-7595 (2025. 12. 9.)

우 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삼고읍 도청대로 800, 충청남도의회 총무팀담당관실 / <http://council.chungnam.go.kr>

전화번호 041-636-5056 팩스번호 041-635-6009 / hyunji12025@nail.go.kr / 비공개

우리들이 만드는 개인정보보호 안심 사회. 함께해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지방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소속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된 ○○시·도(○○시·군·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지방의회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시·도의회 9인(시·군·구 의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00시·도(00시·군·구)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 ⑤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⑥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지방의회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지방의회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지방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지방의회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방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또는 의사담당관 등)이 된다.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군·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지방의회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지방의회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해당 의회의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회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회의원은 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

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직원 보호 등) ① 지방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지방의회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별지 서식]은 개정 규칙안과 같으므로 첨부 생략

다. 현행 규칙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정) 2003.04.27 규칙 제 6호
(일부개정) 2011.09.30 규칙 제 414호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
(일부개정) 2015.07.29 의회규칙 제17호
(전부개정) 2019.09.25 의회규칙 제2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서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서산시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

은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전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기타 국외출장과 관련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서면 심사를 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서명을 받으면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서산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2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 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3일 이내에 서산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자료 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19.9.25. 의회규칙 제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6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지 제1호서식](제12조 제1항 관련)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명	계	체재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
-
-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 I.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 II.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 III.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서산시의회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첨부자료

○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라.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의 당연직 위원 규정 삭제로 민간위원이 최대 2명 증가할 수 있어, 안 제10조(수당 및 여비)에 따른 수당·여비 지급대상이 소폭 확대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사기준 및 출장계획서·보고서 서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위원회 위원 정수의 변경이나 새로운 지급기준의 신설 없이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및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기존 여비·수당 지급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 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전문위원 신 광 수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7. 30. (목)

제 4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27.
의 회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26. 7. 16.
- 나. 발 의 자 : 김애란 의원 외 13명
- 다. 회부일자 : 2026. 7. 20.
- 라. 심사일자 : 2026. 7. 27.

2. 제안설명 요지

-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실시 이후 권고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불명확한 문구를 정비하여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여비 지급 기준 명확화를 위해 “5배 상당액으” 를 “5배” 로 정비함.
(안 제5조제3항)

4. 검토의견 요지

- 본 일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실시 이후 권고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불명확한 문구를 정비하여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27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애란 의원 외 13명
발의연월일	2026. 07. 16.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애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27 호
----------	--------

발의연월일 : 2026. 07. 16.

발 의 자 : 김애란, 장갑순, 가충순,
강석환, 기양순, 김기욱,
김혜림, 송치윤, 안원기,
이경화, 이국찬, 이 만,
이정수, 조동식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실시 이후 권고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불명확한 문구를 정비하여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비 지급 기준 명확화를 위해 “5배 상당액으” 를 “5배” 로 정비함
(안 제5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공무원 여비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5배 상당액으”를 “5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여비 부담 수령시 가산징수)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u>5배 상당액</u> 으로 한다.	제5조(여비 부담 수령시 가산징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5배</u> -----.

《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5조제3항의 불명확한 문구 및 제1항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단순 자구·체계 정비 의안임.

2. 재정수반요인 검토

- 가산징수 대상·요건 및 배율(부정 수령액의 5배)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어, 이 조례안의 시행으로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 발생하지 아니함.

3. 결론

- 「지방자치법」 제78조 및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전문위원 신 광 수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7. 30. (목)

제 4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27.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7. 15.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기획예산담당관)

다. 회부일자 : 2026. 7. 20.

라. 심사일자 : 2026. 7. 27.

2. 제안설명 요지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는 지자체의 숨은 규제로 작용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 불편과 불신을 초래하므로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함.
- 이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 띄어쓰기,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 법제부서에서 일괄개정하여 법 적합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소송비용 지원신청서 서식 정비 (안 제1조)

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 정비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문 정비(안 제5조)

라.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사항 정비(안 제6조)

4. 검토의견 요지

가.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나. 법령용어 정비, 인용조문 수정, 운영상 미비점 등 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함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7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7. 15.

서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7 호
----------	-------

제출연월일 : 2026. 7. 15.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는 지자체의 숨은 규제로 적용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 불편과 불신을 초래하므로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함.
- 이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 띄어쓰기,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 법제부서에서 일괄개정하여 법 적합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송비용 지원신청서 서식 정비(안 제1조)
- 나.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 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문 정비(안 제5조)
- 라.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사항 정비(안 제6조)

3. 단계별 추진사항

- 가. 입법계획 결재 : 2026. 5월 중
- 나. 성별영향평가 : 2026. 6월 중
- 다. 입법예고 : 2026. 6. 9. ~ 6. 28.(20일 간)

라. 법제심사 : 2026. 7월 중

마. 조례·규칙심의회 : 2026. 7월 중

바. 시의회 의결 : 2026. 하반기 중

사. 공포·시행 : 2026. 하반기 중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예산조치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라. 법제심사 결과

서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의 개정)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서산시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산시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3조(「서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서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5호 중 “**야외체육시설 : 05:00 ~ 22:00**”을 “**야외체육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평일 : 05:00 ~ 22:00

나. 주말·공휴일 : 05:00 ~ 18:00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6조(「서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서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안 제1조(「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의 개정) 관련

[별표 1]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	소속:			직급:			연락처:			
	이름:			주소:						
심	급	☐ 기소전 수사단계 ☐ 1심 ☐ 2심 ☐ 3심								
사건번호		민사		고소·고발			공소			
		법원	접수일	사건번호	경찰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검찰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신청 금액		총 계		변호사보수			그 밖의 비용			
		원		원			원			
사건개요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① 또는 서명 서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3. 판결문 등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의 서류										

- 안 제4조(「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관련

2. 연습사용료

시 설 별		기 준		사용료 (단위 : 원)						비 고
				일 반	감면 사용료					
					그린 카드 사용시 (본인)	단체 (10인 이상)	청소년, 학생, 군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국가 유공자, 다자녀 가정	유아	
육 경 기 상 장	1회 2시간	평일								월회원 10,000원 (1인1월)
		휴일								
서 산 시 민 관 체 육 관	주간 (1회 2시간)	평일	1,000	900	500	500	500			
		휴일	1,500	1,300	700	700	700			
	야간 (1회 2시간)	평일	1,500	1,300	700	700	700			
		휴일	2,000	1,800	1,000	1,000	1,000			
테 니 스 장 (1 면 당)	주간 (1회 2시간)	평일	2,000	1,800	1,000	1,000	1,000			
		휴일	3,000	2,700	1,500	1,500	1,500			
	조기· 야간 (1회 2시간)	평일	3,000	2,700	1,500	1,500	1,500			
		휴일	4,000	3,600	2,000	2,000	2,000			
서 산 국 민 체 육 센 터	수 영 장	1일 (1회 2시간)	개인	3,000	2,700		2,000	1,500	1,000	13~55세 여성 10% 추가 감면
			단체	2,000			1,500	1,000	500	
		월(1일1회)		40,000	36,000		30,000	20,000	15,000	
		월(강습)		50,000	45,000		40,000	25,000		
	헬 스 장	1일 (1회2시간)		2,000	1,800		1,500	1,000		
		월(1일1회)		20,000	18,000		15,000	10,000		
	에어로빅장		월		30,000	27,000		24,000	15,000	

시 설 별		기 준		사용료 (단위 : 원)						비 고
				일 반	감면 사용료					
					그린 카드 사용시 (본인)	단체 (10인 이상)	청소년, 학생, 군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국가 유공자, 다자녀 가정	유아	
서 산 어 울 림 체 육 관	배드민턴장	주간 (1회 2시간)	평일	1,000	900	500	500	500	월회원 10,000원 (1인1월)	
			휴일	1,500	1,300	700	700	700		
		야간 (1회 2시간)	평일	1,500	1,300	700	700	700		
			휴일	2,000	1,800	1,000	1,000	1,000		
	스쿼시장	1일 (1회2시간)		4,000	3,600		2,000	2,000		
		월(1일1회)		40,000	36,000		20,000	20,000		
	장애인 탁구장	1일 (1회2시간)						500	장애인 전용	
		월(1일1회)						5,000		
서 산 테 크 노 벨 리 국 민 체 육 센 터	수 영 장	1일 (1회 2시간)	개인	3,000	2,700		2,000	1,500	1,000	13~55세 여성 10% 추가 감면
			단체	2,000			1,500	1,000	500	
		월(1일1회)		40,000	36,000		30,000	20,000	15,000	
		월(강습)		50,000	45,000		40,000	25,000		
	헬 스 장	1일 (1회2시간)		2,000	1,800		1,500	1,000		
		월(1일1회)		20,000	18,000		15,000	10,000		
	소규모 체육관	월(강습)		30,000	27,000		24,000	15,000		

신 · 구조문대비표

제2조. 「서산시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9조(운영) ① 상담센터는 시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u>여성가족부</u> ·교육부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운영) ① ----- ----- ----- ----- <u>성평</u> <u>등가족부</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 「서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9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u>여성가족부장관</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성</u> <u>평등가족부장관</u> ----- -----.
제15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	제15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

정 및 임무) ①・② (생략)	정 및 임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u>여성가족부장관</u>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 <u>성평등가족부장관</u> ----- -----.

제4조.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8조(사용시간) ①・② (생략)	제8조(사용시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체육시설의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다.	③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족구장, 서산스포츠테마파크 축구장·풋살장, 서산테크노밸리 <u>야외체육시설 : 05:00 ~ 22:00</u>	5. ----- ----- ----- <u>야외체육시설</u>
<u><신설></u>	<u>가. 평일 : 05:00 ~ 22:00</u>
<u><신설></u>	<u>나. 주말·공휴일 : 05:00 ~ 18:00</u>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u>법인등기부등본</u> , 개인의 경우에는 <u>사업자등록증</u> 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4.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u>법인등기사항증명서</u> ----- ----- ----- -----. 3. 4. (현행과 같음)

제6조. 「서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8조(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제8조(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 ① ----- ----- ----- ----- <u>둘 수 있다.</u> ② (현행과 같음)

《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안 제1조 관련

-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 서산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형사사건: 직무관련 사건으로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민사사건

가. 피소된 경우: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나. 제소한 경우: 상대방(피고)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하였음이 확정된 경우

□ 안 제3조 관련

- 「성평등가족부 직제」 부칙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여성가족부 직제」는 폐지한다.

□ 안 제4조 관련

-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사용료) ③ 제1항에 따른 연습사용의 경우 다음 제1호부터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료 면제,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료의 10퍼센트 감경, 제6호부터 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료의 50

퍼센트를 감경, 제1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경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15.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1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16.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안 제5조 관련

-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 할 수 있다.

□ 안 제6조 관련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시·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안에 그 사유를 명시하거나 미첨부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기획예산담당관-6133(2026. 4. 29.)호 ‘202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행안부 기획정비 과제에 맞춰 필수조례 적기 마련을 대상 자치법규 및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사항, 띄어쓰기 등 단순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개정안에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신 현 우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서 산 시		
수신 기획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서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기획예산담당관-7618(2026. 6. 5.)호와 관련됩니다.			
2. 「서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가족지원과장 			
2026. 6. 8.			
주무관	김지영	아동청소년팀장	김미옥
함초자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시행	가족지원과-19098	(2026. 6. 8.)	접수
무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가족지원과 (읍내동)	(2026. 6. 8.)
전화번호	041-660-3021	팩스번호	041-660-2055
		/ coconut790@korea.kr	/ 비공개(5)
비전있는 희망 도시, 서산			

라. 법제심사 결과

자치입법안 심사조서

□ 서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 사항	심사항목	심 사 세 부 내 용	심 결 사 과
선행 절차	사전협의	관련기관, 단체, 부서와 사전협의 여부	적 정
	소비자 정책심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여부	해당없음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 및 관련부서 검토	적 정
	비용추계	예산비용 수반시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해당없음
	규 제	규제 해당 여부	해당없음
입법 내용	필 요 성	①새로운 자치입법 제·개정의 필요성 ②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	적 정
	적 법 성	①상위법령 위배 또는 타 자치법규와 모순 여부 ②주민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 시 상위법령의 근거 여부	적 정
	타 당 성	①다른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규정 여부 ②조 또는 항간 상치되는 부분의 존재 여부 ③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 규정 여부	적 정
입법 형식	표현방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이행 여부	적 정
	조문배열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의 배열 여부	적 정
작성 부칙	작성형식	제·개정이유, 조례안 및 관련법령 첨부 여부	적 정
부칙 규정	시 행 일	소급적용 규정 여부	해당없음
	표기요령	①권리제한, 의무부과 시 30일 이상 유예기간 규정 여부 ②경과조치규정으로 기득의 권리, 지위침해 방지 여부	해당없음
기타	행정규칙 예산관련	①관련 하위법규, 행정규칙 등을 함께 검토 여부 ②예산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자원문제 고려 여부	적 정
종합검토의견		-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 띄어쓰기 등 단순 사항 정비를 위해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 없음.	

심사 를 마 침	심사일	2026. 7. 1.(제1314호)
	심사자	지방행정서기 최 욱
	확인자	지방행정사무관 신현우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7. 30. (목)

제 4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27.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6. 7. 16.
-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회계과)
- 다. 회부일자 : 2026. 7. 20.
- 라. 심사일자 : 2026. 7. 27.

2. 제안설명 요지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2025. 12.)에 따라 서열 중심의 관사 등급 구분(1·2·3급)을 폐지하고 직무 관련성에 맞게 사용 대상을 정비하며, 관사 운영비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가. 관사 사용대상 관련 용어를 ‘공무원’에서 ‘직원’으로 정비함
(안 제50조, 제53조, 57조)
- 나. 관사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관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대상을 정비함 (안 제51조, 제52조)

- 다. 관사 운영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전기·수도·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정비함 (안 제56조)
- 라. 관사 사용료 면제 규정을 관사 통합운영 방식에 맞게 정비함
(안 제57조)

4. 검토의견 요지

- 가.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기존의 직급 중심 관사 운영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관사의 정의, 사용허가 대상, 운영비 부담기준 및 사용료
면제기준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임
- 나. 관사의 효율적인 활용과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운영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입법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8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07. 16.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8 호
----------	-------

제출연월일 : 2026. 7. 16.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2025. 12.)에 따라 서열 중심의 관사 등급 구분(1·2·3급)을 폐지하고 직무 관련성에 맞게 사용대상을 정비하며, 관사 운영비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관사 사용대상 관련 용어를 ‘공무원’에서 ‘직원’으로 정비함
(안 제50조, 제53조, 57조)
- 나. 관사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관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대상을 정비함 (안 제51조, 제52조)
- 다. 관사 운영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전기·수도·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정비함 (안 제56조)
- 라. 관사 사용료 면제 규정을 관사 통합운영 방식에 맞게 정비함(안 제57조)

3. 단계별 추진사항

- 가. 입법계획 결재: 2026. 5. 7. (회계과-15765)
- 나. 성별영향평가: 2026. 5. 20. (가족지원과-17527)

다. 입법예고: 2026. 5. 18. ~ 2026. 6. 7.(회계과-16990)

- 공고번호 : 서산시 공고 제2026-1533호

- 결 과 : 의견없음

라. 법제심사 : 2026. 6. 15. (기획예산담당관-8050)

마. 조례·규칙심의회 : 2026. 6. 22.

바. 시의회 의결 : 2026. 8월중

사. 공포·시행 : 2026. 8월중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관련지침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의 <u>소속공무원</u> 의 사용을 위하여 <u>소유하는</u>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정의) ----- ----- --- <u>소속직원</u> ----- -- <u>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u> <u>하는</u> ----- --.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삭 제 2. 2급 관사 : 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	제51조(관사의 사용허가 대상) 관사의 사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 특성상 근무지와 인접한 장소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원 2. 신규임용 또는 전입 등에 따라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3. 그 밖에 시장이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u>다만, 1급 및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u>	제52조(사용허가의 신청) ----- ----- ----- . <단서 삭제>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함	제53조(관사의 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직원(이하“사용자”라

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잃어버림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6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생략)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한다)은 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재산·시설 및 비품(備品)의 훼손 또는 분실을 방지할 것
2. 청결을 유지할 것
3. 전기·수도 또는 가스 등 자원을 절약할 것
4.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

제56조(관사운영비의 부담) -----

-----.

-----.

1. (현행과 같음)
2. -----
----- 관리비

<삭 제>

4. -----

-- 경비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삭 제>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삭 제>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삭 제>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 한다)	<삭 제>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 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u>시장</u> 은 -- ----- ----- ----- --.
1. 사용대상 <u>공무원</u> 이 직접 사 용하는 경우	1. ----- <u>직원</u>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 하여 해당 <u>공무원</u> 이 사용하는 경우	3. ----- ----- <u>직원</u> ----- --

《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7장 관사관리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공무원의 사용을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11.8.>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삭제 <2022. 10. 19.>
2. 2급 관사 : 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 <신설 2019.11.8.>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및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8.>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잃어버림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 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정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

에 한한다) <개정 2019.11.8.>

3. 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9.11.8.>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9.11.8.>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9.11.8.>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9.11.8.>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9.11.8.>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신설 2019.11.8.>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

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를 적용한다.

나. 관련 지침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 검토 배경

- '25년 국정감사(한병도 의원) 시 지자체 관사수 증가, 운영비 지원 등 문제점 지적과 함께 행안부가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 제기

< '2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 ▶ 지난 정부 국정과제로 '검소한 관사운영'을 제시, 행안부도 관사운영 개선 권고 하였음에도 관사수*는 지속 증가, 5년간 취득·운영비 1,078억원 소요
 - * 1,828개('21년) → 1,941개('22년) → 2,144개('23년) → 2,148개('24년) → 2,165개('25년)
- ▶ 행안부가 지자체 관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지침을 마련할 필요

□ 제도 현황

- (근거) 관사운영은 자치사무로, 지자체 별 「공유재산조례」에 따라 운영, 공유재산법령 및 운영기준에는 재산분류 및 공개 근거만 규정
- (유형) 자치단체 조례로 통상 사용자에 따라 1~3급* 관사로 분류
 - * 1급: 지자체장, 2급: 부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3급: 1·2급 이외의 자
- (운영비) 대부분 지자체는 1·2급 관사에 기본비품, 수선비 등을 지원, 일부는 공공요금 등 관리비도 지원이 가능토록 조례에 규정

□ 관사운영 현황

- 2006년 ~ , 표준조례안에 의해 자치단체 조례 제정 운영
 - 이후, 우리부는 지자체 관사 운영개선 지속 권고('10년, '22년)

2010년	2022년
(광역) 관사유지, 주민개방 등 이용도 제고 강구 (기초) 관사폐지, 존치불가피시 조례에 면적등 규정	(단체장) 광역기초 관사 폐지 및 주민공개 강화 (부단체장 등 소속공무원)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

- (관사 수) 5년 간 지자체 총 관사수 증가('21년 1,828개 → '25년 2,165개, 18.4% ↑), 1급관사는 감소하였으나 소속직원 사용의 3급관사가 증가
* (1급관사) '21년 10개 → '25년 7개, (3급관사) '21년 1,629개 → '25년 1,965개(강원 제2청사 관련 135 ↑ 등)
- (운영비 지원) 공공요금 등 관리비가 해당되며, 자부담 원칙이면서 일부 지자체가 1·2급 관사 위주로 운영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
- (사용료 부과) 관사 사용에 따른 임차비 성격으로 대부분 지자체가 1·2급관사는 무상, 3급관사는 목적·용도에 따라 유·무상 사용 중

□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권고)

《 관사 운영 기본방향 》

- ❖ 단체장 관사 폐지 및 1급·2급·3급 관사를 통합 운영 조례 개정 필요
- ❖ 운영비 등 자부담 원칙 준수 조례 개정 필요
- ❖ 관사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주민 공개

- (관사운영 기본원칙) 현행 조례에서 직위별로 구분하고 있는 1·2·3급 관사를 일원화하고, 운영방식은 소속 직원*의 직무 관련성 기준으로 개선
* 조례 개정(관사 정의) : 소속 공무원 → 소속 직원
- (사용허가 등) 아래와 같이 직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관사 사용대상자, 사용허가·취소, 사용료 부과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

※ 사용료는 해당 관사 사용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유·무상 허용

- ◆ 다른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일시 인사발령된 직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거주용 재산(부단체장 등)
- ◆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게 되는 직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거주용 재산(타지역 출장소, 협력관 등)
- ◆ 원래의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곤란한 도서·벽지 등으로 인사발령된 직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거주용 재산(섬 발령 근무자 등)
- ◆ 기타 관사의 위치, 용도 등에 비추어 직무상 관련성이 있는 직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거주용 재산(특수지비상근무자, 산림보호·수문관리 종사자 등)

- (운영비 등) 시설관리 및 개인사용 목적에 따라 운영비 부담 주체 명확화
 - 전기·수도·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 부담
 - 건물 설비(외관, 보일러 등)나 기본 비품(내장형 가전, 가구 등)의 구입·교체·수리에 필요한 시설관리 비용은 관리기관인 지자체가 부담
- ※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파손된 경우는 사용자가 수리비 등 부담
- (주민공개 강화) 관사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주민통제 강화를 위해 관사운영 현황의 공개 범위 확대(단체장 관사 → 관사)
 - 관사 통합운영 지자체는 관사수, 소유형태, 운영비 등 총괄현황 공개<서식1>
 - 관사운영 미 개선 지자체는 1·2급관사 등 세부내역도 공개<서식1, 2>

□ 향후계획

- '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지자체 통보(~'25.12)
- 가이드라인 이행 조치계획 취합(~'26.1.<서식3>) 및 개선상황 점검(~'26.6.)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안에 그 사유를 명시하거나 미첨부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 수반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최 광 일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도약하는 서산, 활맛나는 서산



서 산 시



수신 회계과장
(경유)

제목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회계과-17400(2026. 5. 20.) 호와 관련됩니다.

2.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은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가족지원과장 

주무관	김지영	마성정책임담당장	김영석	가족지원과장	2026. 5. 20. 심은주
협조자					
시행	가족지원과-17527	(2026. 5. 20.)	접수	회계과-17433	(2026. 5. 20.)
우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권아문길 1, 가족지원과 (음대동)		/ https://www.seosan.go.kr	
전화번호	041-660-3021	팩스번호	041-660-2055	/ cocoru1700@korea.kr	/ 비공개(5)
비전있는 희망 도시, 서산					

마. 법제심사 결과(자치입법안 심사조서)

자치입법안 심사조서

□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사항	심사항목	심사세부내용	심결과과
선행절차	사전협의	관련기관, 단체, 부서와 사전협의 여부	적정
	소비자정책심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여부	해당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 및 관련부서 검토	적정
	비용추계	예산비용 수반시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해당없음
	규제	규제 해당 여부	해당없음
입법내용	필요성	①새로운 자치입법 제·개정의 필요성 ②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	적정
	적법성	①상위법령 위배 또는 타 자치법규와 모순 여부 ②주민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 시 상위법령의 근거 여부	적정
	타당성	①다른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규정 여부 ②조 또는 항간 상치되는 부분의 존재 여부 ③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 규정 여부	적정
입법형식	표현방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이행 여부	적정
	조문배열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의 배열 여부	적정
형식	작성형식	제·개정이유, 조례안 및 관련법령 첨부 여부	적정
부칙규정	시행일	소급적용 규정 여부	해당없음
	표기요령	①권리제한, 의무부과 시 30일 이상 유예기간 규정 여부 ②경과조치규정으로 기득의 권리, 지위침해 방지 여부	해당없음
기타	행정규칙 예산관련	①관련 하위법규, 행정규칙 등을 함께 검토 여부 ②예산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자원문제 고려 여부	적정
종합검토의견		- 상위기관의 지침에 따라 관사 관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 없음.	

심사를마침	심사일	2026. 6. 15.(제1309호)
	심사자	지방행정서기 최 욱
	확인자	지방행정사무관 신현우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7. 30. (목)

제 4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27.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6. 7. 16.
-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민원봉사과)
- 다. 회부일자 : 2026. 7. 20.
- 라. 심사일자 : 2026. 7. 27.

2. 제안설명 요지

- 2022. 7. 11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에 신설된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서산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 내용

-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나.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민원실의 위임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민원실 근무자 우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검토의견 요지

가.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개정(2022.

7. 11.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민원실 운영시간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산시 실정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입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나. 또한 본 조례 제정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의 가·감점 지표(조례 제정 없이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 시 감점 -1점)에 대비하고, 대민 행정 서비스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적실성 있는 조치라고 사료됨.

다. 현장민원실 설치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 민원상담인 운영 등 대민 편의 제공에 관한 책무(안 제7조 및 제9조)를 법제화함으로써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라. 아울러 민원실 근무자의 2년 이상 근무 시 전보 우대, 우수 인력 배치 및 파견 요청 근거(안 제8조)를 명시함으로써 감정노동에 노출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대민 봉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마.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민원 행정의 효율화와 시민 편의 증진, 공직사회 근무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적합하게 규정 되었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9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7. 16.

서산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9 호
----------	-------

제출연월일 : 2026. 7. 16.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제정이유

- 본 조례 제정안은 2022. 7. 11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에 신설된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서산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나.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민원실의 위임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민원실 근무자 우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단계별 추진사항

- 가. 개정 계획 결재 : 2026. 4. 20. (민원봉사과-3541)
나. 성별 영향 평가 : 2026. 4. 22. (가족지원과-14419)

- 결 과 : '서산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다. 행정예고

- 기 간 : 2026. 4. 28. ~ 2026. 5. 18. / 20일간
- 공고번호 : 서산시 공고 제2026-1337호
- 결 과 : 의견 없음

라. 법제 심사 : 2026. 5. 21.

마. 조례·규칙 심의회 : 2026. 7월 중

바. 공포·시행 : 2026. 8월 중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붙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서산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민원실 창구가 설치된 부서)를 말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무인민원발급창구”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과 토요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점심시간의 세부 운영방법은 별도 방침에 따른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위임사항) 시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교대근무 등 점심시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

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시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에 대해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민원실 근무자 우대) ① 시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행정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9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해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이하 “현장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 외부에 현장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5.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6.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7. 삭제 <2022. 1. 11.>
8.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

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1.]

제9조(민원실) ① 민원실의 장은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용지·필기구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시설·환경 등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제2호·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1. 4. 28., 2021. 11. 30.>
-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18., 2019. 12. 31., 2021. 11. 30.>

[전문개정 2010. 7. 1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2020. 6. 9., 2020. 12. 22., 2021. 6. 8., 2023. 5. 16., 2024. 1. 16., 2025. 1. 7.>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

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다. 삭제 <2013. 8. 6.>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 시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제정안에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장 이 경 숙

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충남서산019			
정 책 명	서산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부서명	민원봉사과		
	담당자명	유은주	전화번호	041-660-224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4월 2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민원봉사과)	○ 서산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민원실의 운영) 에 의거 서산시 실정에 맞는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조례 제정 운영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서산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4월 22일				
서산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영/041-660-3021)				
민원봉사과장 귀하				

라. 법제심사 결과(자치입법안 심사조서)

자치입법안 심사조서

□ 서산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사항	심사항목	심사세부내용	심사결과
선행절차	사전협의	관련기관, 단체, 부서와 사전협의 여부	적정
	소비자정책심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여부	해당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 및 관련부서 검토	적정
	비용추계	예산비용 수반시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해당없음
	규제	규제 해당 여부	해당없음
입법내용	필요성	①새로운 자치입법 제·개정의 필요성 ②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	적정
	적법성	①상위법령 위배 또는 타 자치법규와 모순 여부 ②주민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 시 상위법령의 근거 여부	적정
	타당성	①다른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규정 여부 ②조 또는 항간 상치되는 부분의 존재 여부 ③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 규정 여부	적정
입법형식	표현방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이행 여부	적정
	조문배열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의 배열 여부	적정
	작성형식	제·개정이유, 조례안 및 관련법령 첨부 여부	적정
부칙규정	시행일	소급적용 규정 여부	해당없음
	표기요령	①권리제한, 의무부과 시 30일 이상 유예기간 규정 여부 ②경과조치규정으로 기득의 권리, 지위침해 방지 여부	해당없음
기타	행정규칙 예산관련	①관련 하위법규, 행정규칙 등을 함께 검토 여부 ②예산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자원문제 고려 여부	적정
종합검토의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에 신설된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지자체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 없음.	

심사를마침	심사일	2026. 5. 21.(제1305호)
	심사자	지방행정서기 최 욱
	확인자	지방행정사무관 신현우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7. 30. (목)

제 4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27.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6. 7. 16.
-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징수과)
- 다. 회부일자 : 2026. 7. 20.
- 라. 심사일자 : 2026. 7. 27.

2. 제안설명 요지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부담 완화와 불편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시민 누구나 시간과 비용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7조제1항제7호)
 - － 수수료 면제 대상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무인민원기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로 확대

4. 검토의견 요지

가. 본 개정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민원서류 발급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코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수수료 면제 대상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민원문서로 확대함으로써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와 행정서비스 이용자 부담 완화, 고객 만족 민원 서비스 향상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10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7. 16.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0 호
----------	--------

제출연월일 : 2026. 7. 16.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부담 완화와 불편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시민 누구나 시간과 비용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7조제1항제7호)
 - 수수료 면제 대상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무인민원기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로 확대

3. 단계별 추진사항

- 가. 입법계획 결재 : 2026. 4. 9. (민원봉사과-3279호)
- 나. 성별영향평가 : 2026. 4. 22. (징수과-4248호)
- 다. 입법예고 : 2026. 4. 28. (징수과-4430호)
 - 공고일자 : 2026. 4. 28.(화) ~ 5. 20.(수) / 22일간
 - 공고번호 : 서산시 공고 제2026-1336호
 - 결 과 : 의견없음

라. 법제심사 : 2026. 5. 27. (기획예산담당관-7229호)

마. 조례·규칙심의회 : 2026. 6. 22. (기획예산담당관-8617)

바. 시의회 의결 : 2026. 7월 중

사. 공포·시행 : 2026. 7월 중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라. 법제심사 결과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 문서를 포함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업무 수수료는 제외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 문서를 포함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경제환경국 징수과장 김종길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충남서산018			
정 책 명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부서명	징수과		
	담당자명	정봉현	전화번호	041-660-228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4월 2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징수과)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수수료 면제 대상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무인민원기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로 확대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4월 22일				
서산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영/041-660-3021)				
징수과장 귀하				

라. 법제심사 결과

자치입법안 심사조서

□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사항	심사항목	심사세부내용	심결과과
선행절차	사전협의	관련기관, 단체, 부서와 사전협의 여부	적정
	소비자정책심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여부	해당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 및 관련부서 검토	적정
	비용추계	예산비용 수반시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해당없음
	규제	규제 해당 여부	해당없음
입법내용	필요성	①새로운 자치입법 제·개정의 필요성 ②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	적정
	적법성	①상위법령 위배 또는 타 자치법규와 모순 여부 ②주민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 시 상위법령의 근거 여부	적정
	타당성	①다른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규정 여부 ②조 또는 항간 상치되는 부분의 존재 여부 ③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 규정 여부	적정
입법형식	표현방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이행 여부	적정
	조문배열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의 배열 여부	적정
	작성형식	제·개정이유, 조례안 및 관련법령 첨부 여부	적정
부칙	시행일	소급적용 규정 여부	해당없음
규정	표기요령	①권리제한, 의무부과 시 30일 이상 유예기간 규정 여부 ②경과조치규정으로 기득의 권리, 지위침해 방지 여부	해당없음
기타	행정규칙 예산관련	①관련 하위법규, 행정규칙 등을 함께 검토 여부 ②예산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재원문제 고려 여부	적정
종합검토의견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 없음.	

심사를마침	심사일	2026. 5. 27.(제1306호)
	심사자	지방행정서기 최 욱
	확인자	지방행정사무관 신현우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7. 30. (목)

제 4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27.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6. 7. 16.
-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경로장애인과)
- 다. 회부일자 : 2026. 7. 20.
- 라. 심사일자 : 2026. 7. 27.

2. 제안설명 요지

-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 시 우선구매 원칙을 규정
-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사항을 구체화
-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에 대한 평가 및 포상 근거를 마련

3. 주요 내용

- 가.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가격,
품질 및 납품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하면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 추가(안 제5조)

- 나. 시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촉진계획에 전년도 구매실적,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을 포함한 구매계획,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추가(안 제6조)
- 다.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에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9조)

4. 검토의견 요지

- 가. 본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우선 구매 원칙을 명확히 하고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구매실적에 따른 평가 및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나.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계획·수립을 통해 우선구매율을 제고함으로써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과 수익창출로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입법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11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7. 16.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1 호
----------	--------

제출연월일 : 2026. 7. 16.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 시 우선구매 원칙을 규정
-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사항을 구체화
-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에 대한 평가 및 포상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가격, 품질 및 납품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하면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 추가(안 제5조)
- 시장이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촉진계획에 전년도 구매실적,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을 포함한 구매계획,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추가(안 제6조)
-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에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안 제9조)

3. 단계별 추진사항

가. 입법계획 결재 : 2026. 5. 13.(경로장애인과-22899호)

나. 성별영향평가 : 2026. 5. 14.(가족지원과-16711호)

다. 입법예고

- 기 간: 2026. 5. 15. ~ 6. 4.[20일간]
- 공고번호: 서산시 공고 제2026-1498호
- 결 과: 의견 없음

라. 법제심사일 : 2026. 6. 15.

마. 조례·규칙심의회 : 2026. 6월 중

바. 시의회 의결 : 2026. 7 ~ 8월 중

사. 공포·시행 : 2026. 7 ~ 8월 중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라. 법제심사 결과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제3조의2를 제4조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

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을 포함한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은 법 제7조제3항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중전의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 생산품의 가격, 품질,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제2항 중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4항” 을 “구매하는
경우 법 제7조제5항” 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대상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 법인 ·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조의2 (생 략)</u> <u>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①</u> <u>중증장애인생산품은 다음 각 호의</u> <u>시설 등으로부터 우선 구매할 수</u> <u>있다.</u> 1. · 2.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 품을 <u>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4항</u> <u>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u> <u>있다.</u> <u><신 설></u>	<u>제4조 (현행 제3조의2와 같음)</u> <u>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①</u> <u>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u> <u>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려</u> <u>는 경우 해당 생산품의 가격, 품</u> <u>질,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때에는</u> <u>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우</u> <u>선구매하여야 한다.</u> 1. · 2. (현행과 같음) ② ----- --- <u>구매하는 경우 법 제7조제5항</u> -----. <u>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①</u> <u>시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u> <u>령 10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u> <u>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수립 · 시행</u> <u>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촉진계획에는 다 <u>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u> <u>다.</u> 1. <u>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u> <u>실적</u>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 ① 시장
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중증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간담
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우선구매 촉진계획에는 법 제4
조 이외에 다음 각 호 사항을 포
함시켜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 지원에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을 포함한 구매계
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
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
서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
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은 법 제7조제3항 및 관련 법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

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 제7조 (생 략)

<신 설>

제7조 · 제8조 (현행 제6조 및 제7조
와 같음)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4
조에 따른 대상기관에 대한 업무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
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
한 기관 · 법인 · 단체 및 개인 등
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 ③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
2.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⑦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삭제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안에 그 사유를 명시하거나 미첨부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실적 및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 행정업무 범위에서 수행 가능하며 해당 개정안에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 복지문화국 경로장애인과장 권 범 진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도약하는 서산, 싹맞나는 서산

서 산 시

수신 경로장애인과장
(경유)

제 목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경로장애인파-22935(2026. 5. 13.)호와 관련됩니다.
2.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불일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불일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가족지원과장

주무관 김지영 여성정책팀장 표복 카카오톡 아이디 2028. 5. 14. 심복주
 협조자
 시행 카카오톡과-18711 (2028. 5. 14.) 접수 경로창애인과-29047 (2028. 5. 14.)
 주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무렵 1, 카카오톡과 (음나들) / <https://www.seosan.go.kr>
 전화번호 041-980-9021 팩스번호 041-980-2055 / coconut700@korea.kr / 비공개(5)
 비전임는 회만 도시, 서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충남서산020			
정 책 명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부서명	경로장애인과		
	담당자명	신지영	전화번호	041-660-2688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5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경로장애인과)	○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실적 및 촉진 실효성 제고 -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원칙 규정,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시행 구체화, 구매실적에 대한 평가 포상 근거마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과 관련하여 성 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 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5월 13일 서산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영/041-660-3021) 경로장애인과장 귀하				

라. 법제심사 결과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서 산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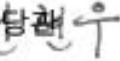


수신 경로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법제심사 결과 통보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로장애인과-26246(2026. 6. 5.)호 관련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법제심사 결과 1부. 끝.

기획예산담당관 

주부관		기획예산담당관		전달 2026. 6. 15.	
최욱	의회법무팀장	이만수	기획예산담당관	신원우	
참조자					
시행	기획예산담당관-8055	(2026. 6. 15.)	접수	경로장애인과-27481	(2026. 6. 15.)
우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로길 1. (읍내동)	/ http://www.seosan.go.kr		
전화번호	041-660-3039	팩스번호	041-660-2249	/ chi.dnr0205@korea.kr	/ 대국민 공개
비전있는 희망 도시, 서산					

자치입법안 심사조서

□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사항	심사항목	심 사 세 부 내 용	심 결 사 과
선행 절차	사전협의	관련기관, 단체, 부서와 사전협의 여부	적 정
	소비자 정책심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여부	해당없음
	성별영향 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 및 관련부서 검토	적 정
	비용추계	예산비용 수반시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해당없음
	규 제	규제 해당 여부	해당없음
입법 내용	필 요 성	①새로운 자치입법 제·개정의 필요성 ②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	적 정
	적 법 성	①상위법령 위배 또는 타 자치법규와 모순 여부 ②주민권리제한, 의무부과 별칙제정 시 상위법령의 근거 여부	적 정
	타 당 성	①다른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규정 여부 ②조 또는 항간 상치되는 부분의 존재 여부 ③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 규정 여부	적 정
입법 형식	표현방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이행 여부	적 정
	조문배열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의 배열 여부	적 정
부칙	시 행 일	소급적용 규정 여부	해당없음
규정	표기요령	①권리제한 의무부과 시 30일 이상 유예기간 규정 여부 ②경과조치규정으로 기득의 권리, 지위침해 방지 여부	해당없음
	행정규칙 예산관련	①관련 하위법규, 행정규칙 등을 함께 검토 여부 ②예산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재원문제 고려 여부	적 정
종합검토의견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 없음.	

심사 결과 마침	심사일	2026. 6. 15.(제1307호)
	심사자	지방행정서기 최 목
	확인자	지방행정사무관 신현우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7. 30. (목)

제 4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27.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6. 7. 16.
-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가족지원과)
- 다. 회부일자 : 2026. 7. 20.
- 라. 심사일자 : 2026. 7. 27.

2. 제안설명 요지

- 서산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안 제3조)
- 나. 본인부담금 지원, 중지 및 환수 규정(안 제4조~안 제6조)
- 다. 협력체계 구축, 준용 규정(안 제7조~안 제8조)

4. 검토의견 요지

- 가.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 나. 현재 서산시는 서산시가족센터를 통해 정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본인 부담금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 부담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임
- 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저출산 대응 및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국가 정책 방향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됨
- 마. 다만 조례 시행 이후에 지원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수혜자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바. 제정 취지와 법적 타당성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12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7. 16.

서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12 호
----------	--------

제출연월일 : 2026. 7. 16.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서산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안 제3조)
- 본인부담금 지원, 중지 및 환수 규정(안 제4조~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 준용 규정(안 제7조~안 제8조)

3. 단계별 추진사항

- 입법계획 수립: 2026. 5. 20.(가족지원과-17396호)
- 입법예고: 2026. 5. 20.(가족지원과-17511호)
 - 기 간: 2026. 5. 20. ~ 6. 9.(20일간)
 - 공고번호: 서산시 공고 제2026—1563호
 - 결 과: 의견없음
- 성별영향평가: 2026. 5. 21.(가족지원과-17707호)
 - 결 과: 개선사항 없음
- 법제심사: 2026. 6. 15.(기획예산담당관-8084호)
 - 결 과: 법적 문제점 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2026. 6. 15.(기획예산담당관-8084호)
 - 결 과: 원안가결
- 시의회 의결: 2026. 9월 중
- 공포·시행: 2026. 9월 중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법제심사 결과서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서

서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6조(환수)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유로 지원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관련조문

제4조(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충청남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계획

○ 서산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로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본인부담금 월 최대 60만원, 최대 6개월(1가구당 360만원* 한도) 지원 함.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사업주) 사업공고일 기준 직전연도 6개월 이전에 사업자 등록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종사자) 소상공인사업체에 고용되어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에 등재된 자
- (매출액) 직전연도 매출액이 6백만원 이상일 것

***360만원**: 10,000원(1시간 평균 본인부담금) × 60시간(월 최대 지원시간) × 6개월 = 360만원

- 소상공인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지자체(서울: 최대 360만원, 광주: 최대 360만원) 참고

나. 추계 결과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시 연평균 54,000천원, 향후 5년간
약 270,000천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연평균) 15가구* × 10,000원 × 60시간 × 6개월 = 54,000,000원

⇒ (향후 5년간) 15가구* × 54,000,000원 × 5년 = 270,000,000원

*15가구: 「충청남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거한 시군 배정(안) 참고

- 기준 중위소득, 직전연도 연매출, 취약계층, 다자녀 여부에 따라 가점 부여하여 사업대상 선정

다. 재원조달방안

- 보조금 매칭 지원(도비 50%, 시비 50%)

3.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천원)

연 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54,000	54,000	54,000	54,000	54,000	270,000
재원조달		54,000	54,000	54,000	54,000	54,000	270,000
의존재원	도 비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135,000
자체수입	시 비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135,000
총 비용		54,000	54,000	54,000	54,000	54,000	270,000

4. 작성자: 복지문화국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붙임1
소상공인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예산 시군 배정(안)

(단위 : 명 / 원)

시군명	사업량 (배정인원)	예산액		
		계	도비	시군비
합계	200	720,000,000	360,000,000	360,000,000
천안시	34	122,400,000	61,200,000	61,200,000
공주시	11	39,600,000	19,800,000	19,800,000
보령시	10	36,000,000	18,000,000	18,000,000
아산시	29	104,400,000	52,200,000	52,200,000
서산시	15	54,000,000	27,000,000	27,000,000
논산시	10	36,000,000	18,000,000	18,000,000
계룡시	10	36,000,000	18,000,000	18,000,000
당진시	16	57,600,000	28,800,000	28,800,000
금산군	7	25,200,000	12,600,000	12,600,000
부여군	11	39,600,000	19,800,000	19,800,000
서천군	8	28,800,000	14,400,000	14,400,000
청양군	8	28,800,000	14,400,000	14,400,000
홍성군	15	54,000,000	27,000,000	27,000,000
예산군	8	28,800,000	14,400,000	14,400,000
태안군	8	28,800,000	14,400,000	14,400,000

■ 세부 지원요건

- (주소요건)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양육자와 아동이 충남 동일 주소 거주
 - ※ 세부요건은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따름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사업주) 사업공고일 기준 직전연도 6개월 이전에 사업자 등록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종사자) 소상공인사업체에 고용되어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에 등재된 자
- (양육자) 부 또는 모 1인이 소상공인 지원요건 충족
 - ※ 양육자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양육공백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매출액) 직전 연도 매출액이 6백만원 이상일 것
- (제외업종) 유흥업소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대상
- (중복지원 불가 사업)
 - 충남형 가족돌봄 수당사업, 소상공인 출산·육아 대체인건비 지원 사업

< 우선순위 적용 가점표 >

구분	세부기준	가점
① 정부아이돌봄서비스 기준중위소득 유형	가형	20점
	나형	17점
	다형	14점
	라형	11점
	마형	8점
② 직전연도 연매출*	6백만원 이상 ~ 3천만원 이하	10점
	3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9점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8점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7점
	6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6점
	7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5점
	8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4점
	9천만원 초과 ~ 1억 4백만원 이하	3점
③ 경제적 취약계층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10점
	한부모 가정 사업자(가족관계증명서 기준)	10점
	장애인 사업자(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10점
④ 다자녀가구 (만 18세 이하 자녀수)	3명 이상	10점
	2명	7점

*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는 연매출액을 월할 계산하여 산정

** 동점자(가점표 합산 결과) 발생시 가점표 ① → ② → ③ → ④ 순으로 우선 적용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도약하는 서산, 실맞나는 서산

서 산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가족지원과-17512(2026.5.20.)호와 관련됩니다.
2. 「서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불입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불입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주무관

김재열

여성정책팀장

김영석

가독지원과장

2025. 5. 21.
심은주

협조자

시행 가독지원과-17707

점수

무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5, 가톨릭지원과 (공내함)

<https://www.seoan.co.kr>

전화번호 041-660-3021

팩스번호 041-660-2055

/coconut700@korea.kr

공개(5)

비전있는 희망 도시, 서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충남서산023			
정 책 명	서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부서명	가족지원과		
	담당자명	강민숙	전화번호	041-660-309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5월 2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가족지원과)	○ 서산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 ~ 제3조) - 본인부담금 지원, 중지 및 환수 규정(안 제4조 ~ 제6조) - 협력체계 구축, 준용 규정(안 제7조 ~ 제8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서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 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5월 21일 서산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영/041-660-3021) 가족지원과장 귀하				

라. 법제심사 결과서

 해뜨는 서산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서 산 시 			
수신 가족지원과장			
(경유)			
제목 법제심사 결과 통보 「서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족지원과-19844(2026. 6. 15.)호 관련 「서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법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법제심사 결과 1부. 끝.			
우 기획예산담당관			
주무관	최욱	의회법무팀장	이인수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전달 2026. 6. 15.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담당관-8084	(2026. 6. 15.)	접수 가족지원과-19921 (2026. 6. 15.)
주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로길 1, (읍내동)	/ http://www.seosan.go.kr
전화번호	041-660-3039	팩스번호 041-660-2249	/ childir0205@korea.kr / 대국민 공개
비전있는 희망 도시, 서산			

자치입법안 심사조서

□ 서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사항	심사항목	심사세부내용	심결사과
선행절차	사전협의	관련기관, 단체, 부서와 사전협의 여부	적정
	소비자정책심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여부	해당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 및 관련부서 검토	적정
	비용추계	예산비용 수반시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적정
	규제	규제 해당 여부	해당없음
입법내용	필요성	①새로운 자치입법 제·개정 의 필요성 ②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	적정
	적법성	①상위법령 위배 또는 타 자치법규와 모순 여부 ②주민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 시 상위법령의 근거 여부	적정
	타당성	①다른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규정 여부 ②조 또는 항간 상치되는 부분의 존재 여부 ③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 규정 여부	적정
입법형식	표현방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이행 여부	적정
	조문배열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의 배열 여부	적정
	작성형식	제·개정이유, 조례안 및 관련법령 첨부 여부	적정
부칙규정	시행일	소급적용 규정 여부	해당없음
	표기요령	①권리제한, 의무부과 시 30일 이상 유예기간 규정 여부 ②경과조치규정으로 기득의 권리, 지위침해 방지 여부	해당없음
기타	행정규칙 예산관련	①관련 하위법규, 행정규칙 등을 함께 검토 여부 ②예산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재원문제 고려 여부	적정
종합검토의견		- 관내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 없음.	

심사를마침	심사일	2026. 6. 15.(제1313호)
	심사자	지방행정서기 최 욱
	확인자	지방행정사무관 신현우

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서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서 산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44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통보

제447회 서산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집행부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심의일시 : 2026. 6. 22.(월)
2. 심의안건 : 총 10건(조례안 9건, 규칙안 1건)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10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 의 결 과
33	서산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 안 가 결
34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가 결
35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가 결
36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가 결
37	서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 안 가 결
38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가 결
39	서산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가 결
40	서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	원 안 가 결
41	서산시 청년·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가 결
42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 안 가 결

붙임 제44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 각 1부(제33호~제42호). 끝.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7. 30. (목)

제 4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 사 보 고 서

2026. 7. 27.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6. 7. 16.
-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건강증진과)
- 다. 회부일자 : 2026. 7. 20.
- 라. 심사일자 : 2026. 7. 27.

2. 제안설명 요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간 및 신청기간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도록 정비하여, 사업 운영 기준의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원 기준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 서비스 이용 기간(5일, 10일, 15일 → 지침에서 정하는 서비스 기간)
- 나.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서비스 제공 기간(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서비스 신청 기간(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침에서 정하는 지원 신청 기간에 따라 본조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

라. 별표/서식에 관한 사항(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 신청자 및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 검토의견 요지

가. 본 조례안은 상위 지침 변동에 따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나. 국가 지원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 개정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으로 구체적인 이용 및 신청기간을 지침에 직접 연결함으로써 사업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빠른 사업이 집행될 것으로 판단됨

다.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13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7. 16.

서산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3 호
----------	--------

제출연월일 : 2026. 7. 16.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간 및 신청기간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도록 정비하여, 사업 운영 기준의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원 기준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서비스 이용 기간(5일, 10일, 15일 → 지침에서 정하는 서비스 기간)

나.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서비스 제공 기간(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서비스 신청 기간(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침에서 정하는 지원 신청 기간에 따라 본조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

라. 별표/서식에 관한 사항(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 신청자 및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 단계별 추진사항

가. 입법계획 결재: 2026. 5. 8.(건강증진과-5064)

나. 입법예고

- 공고일자: 2026. 5. 19. ~ 6. 8. (20일간)
- 공고번호: 서산시보건소 공고 제2026-20호
- 결과: 의견 없음

다. 법제심사 결과통보: 2026. 6. 15.(기획예산담당관-8049)

- 결과: 법적인 문제점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2026. 6. 16.(건강증진과-6172)

마. 조례 · 규칙심의회: 2026. 6. 22.

바. 시의회 의안제출 및 의결: 2026. 7.

사. 공포 · 시행: 2026. 8. ~ 9.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예산조치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라. 법제심사 결과

서산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5일, 10일, 15일의 서비스”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서비스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 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 축하금 지급액: 10만원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공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신청 기간에 따라, 본 조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신 축하금 지원 신청서

인 적 사 항	임 신 부		생년월일	
	배 우 자			
임 신 관 련	임신진단기관 (병원명)			
사 항	현재 임신주수		분만에정일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자 택		휴 대 폰	
「서산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임신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서 산 시 장 귀하				
[본인신청시]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경우는 제출 생략) 단,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임신확인서 1부(산부인과 병·의원 발급) 또는 모자보건수첩, 그 밖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1.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대리 신청인의 범위 : 임신부의 배우자, 임신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개인정보 보호법 제15~22조] ○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임신 축하금 지원 ○ 수집항목: 기록항목 ○ 보유기간: 신청일로부터 5년 ○ 수집근거: 서산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본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증명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거 주 기 간	년 월	임신주수	주	
지원대상 여부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보 건 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지원 유형	☐ 단태아(☐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생아(☐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삼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			
		신청요건	기본 지원대상	☐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소득기준 이하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 제공 장소	[☐ 자택 ☐ 기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 체크)
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유의사항		확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추가제출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¹⁾)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서산시장 귀하

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본인부담금”이란 보건복지부 가 매년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 금을 말한다. 제2조제4호	6. ----- ----- ----- -----, <후단 삭제>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생 략)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현행 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자는 5 일, 10일, 15일의 서비스 중 하나 를 선택 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각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 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 업 지침」에서 정하는 서비스 기 간 ----- -----, <후단 삭제>
제4조(지원 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지원 기준) 제3조제1항에 따 른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임신 축하금 지급액: 10만원	1. 임신 축하금 지급액: 10만원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공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 내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공기간: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사업 지침」에서 정하 는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모 자보건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 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 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	

<u>원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단,</u> <u>출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입</u> <u>원한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120</u> <u>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제1항제1</u> <u>호</u> 제5조(지원 신청) ① 제3조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간에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생 략)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u>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u> <u>일로부터 30일까지 별지 제2호</u> <u>서식에 따라 신청 제5조제1항</u> <u>제1호</u>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생 략)	제5조(지원 신청) ----- ----- ----- -----. 1. (현행과 같음)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신청 기간에 따라, 본 조례 별지 제2 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현행 제1 항과 같음)
--	--

《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신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신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도우미의 신청 방법·절차, 지원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개정안은 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간 및 신청 기한 등 절차적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사업 신설, 지원 대상 확대, 지원 금액 증액 등을 수반하지 않음. 따라서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서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도약하는 서산, 싹틔우는 서산



서 산 시



해뜨는 서산

수신 서산시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경유)

제목 「서산시 임산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건강증진과-6172(2026. 6. 1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산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가 족 지 원 과 장



주무관 **김기영** 여성정책팀장 대결 2026. 6. 17. 가족지원과장 전결
김병서

협조자

시행 가족지원과-20146 {2026. 6. 17.} 접수 건강증진과-6201 {2026. 6. 17.}

우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가족지원과 (읍내동) / <https://www.seosan.go.kr>

전화번호 041-660-3021 팩스번호 041-660-2065 / coconut700@korea.kr / 비공개(5)

비전있는 희망 도시, 서산

라. 법제심사 결과(자치입법안 심사조서)

자치입법안 심사조서

□ 서산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사항	심사항목	심사세부내용	심결과과
선행절차	사전협의	관련기관, 단체, 부서와 사전협의 여부	적정
	소비자정책심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여부	해당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 및 관련부서 검토	적정
	비용추계	예산비용 수반시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해당없음
	규제	규제 해당 여부	해당없음
입법내용	필요성	①새로운 자치입법 제·개정의 필요성 ②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	적정
	적법성	①상위법령 위배 또는 타 자치법규와 모순 여부 ②주민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 시 상위법령의 근거 여부	적정
	타당성	①다른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규정 여부 ②조 또는 항간 상치되는 부분의 존재 여부 ③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 규정 여부	적정
입법형식	표현방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이행 여부	적정
	조문배열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의 배열 여부	적정
형식	작성형식	제·개정이유, 조례안 및 관련법령 첨부 여부	적정
부칙	시행일	소급적용 규정 여부	해당없음
규정	표기요령	①권리제한, 의무부과 시 30일 이상 유예기간 규정 여부 ②경과조치규정으로 기득의 권리, 지위침해 방지 여부	해당없음
기타	행정규칙 예산관련	①관련 하위법규, 행정규칙 등을 함께 검토 여부 ②예산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재원문제 고려 여부	적정
종합검토의견		- 사업지침에 따라 기준을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 없음.	

심사를마침	심사일	2026. 6. 15.(제1310호)
	심사자	지방행정서기 최 욱
	확인자	지방행정사무관 신현우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7. 30. (목)

제 4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서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27.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7. 16.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감염병관리과)

다. 회부일자 : 2026. 7. 20.

라. 심사일자 : 2026. 7. 27.

2. 제안설명 요지

- 서산시 한센인과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인 복지 증진에 기여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4조)

다. 한센병 관리 위탁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7조)

4. 검토의견 요지

가. 본 조례안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한센인과 한센인 피해자의 복지 향상 및 고령·장애 한센인에 대한 의료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관내 한센인 정착마을 주민 대다수가 초고령 및 장애 가구인 점을 감안할 때 의료 연계 서비스 지원이 단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보건소 간호·돌봄 서비스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실질적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소외된 한센인 및 한센인 피해자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하고 한센병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14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7. 16.

서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 14 호
----------	--------

제출연월일 : 2026. 07. 16.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서산시 한센인과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인 복지증진에 기여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4조)
- 한센병 관리 위탁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7조)

3. 단계별 추진사항

- 가. 입법계획 결재 : 2026. 5. 19. (감염병관리과-4470호)
- 나. 성별영향평가 : 2026. 6. 8. (가족지원과-19151호)
 - 결 과 : 별도 개선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 : 2026. 5. 19. (감염병관리과-4480호)
 - 기 간 : 2026. 5. 19. ~ 6. 8. (20일간)
 - 공고번호 : 서산시 공고 제2026-21호
 - 결 과 : 의견 없음
- 라. 법제심사 : 2026. 6. 15. (기획예산담당관-8048호)
- 마. 조례·규칙심의회 : 2026. 7월 중
- 바. 시의회 의결 : 2026. 8월 중

사. 공포·시행 : 2026 10월 중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관련공문

다. 예산조치(미첨부사유서 첨부)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마. 법제심사 결과서

서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산시 한센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인 지원 및 한센병 관리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한센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센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한센인피해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한센인 정착마을”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서산시에 소재한 마을을 말한다.
4. ”보조금“이란 시가 한센인 지원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서산시에 거주하는 한센인 및 한센인피해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센병 관리와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산시에 거주하는 한센인 중 장애·고령 가구에 대한 의

료연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한센병 위탁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한센병 위탁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한센병 치유자의 재활
4. 난치성 한센병 환자의 입원 치료
5. 신환자 발견을 위한 접촉자 및 일반 환자의 검진 및 치료

제6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한센인 및 한센인피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및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더. 한센병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자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자를 말한다.
2. “한센인입소자”란 한센인으로서 국립소록도병원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격리 수용된 자를 말한다.
3. “한센인피해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한센인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수

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

나. 1945년 8월 20일을 전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소록도 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

다. 1962년 7월 10일부터 1964년 7월 25일까지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하여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

라.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결정한 사건

4. “피해자”란 위원회가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한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자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자를 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 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충청남도	성광마을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장마루로 598번길 8
	영락마을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군장동대길 123-1

나. 관련공문

물거리는 충남, 놀거리는 충남, 먹거리는 충남, "충남이언 충문해!"



충 청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개선 관련 조례내용 안내 및 협조

1. 도에서는 한센인 정착마을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조례」 제5조(한센인 정착마을 지원)를 신설하여 관련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24.7.10.)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도내 한센인 정착마을 해당 보건소에서는 동 조례내용을 시군 유관부서에 안내하여 정착마을 내 환경 여건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조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조례 1부. 끝.

충 청 남 도



수신자 서산시보건소장(감염병관리과장), 논산시보건소장(감염병관리과장)

주무관	장대환	감염병예방팀장	전미영	보건정책과장	전영 2025. 5. 7. 류호일
협조자	공우익	김민지	공우익	김유희	주무관 미정숙
시행	보건정책과-12361		(2025. 5. 7.)	접수	감염병관리과-4412 (2025. 5. 7.)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 http://www.chungnam.go.kr/
전화번호	041-635-4307	팩스번호	041-635-3098	/ e dckghw@korea.kr	/ 부본공개

"고향사랑e음" 또는 "농협 방문"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 가능합니다.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한센인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 방식 및 사업 규모 등이 조례 시행 이후 별도의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될 사항이므로, 현 단계에서 소요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움.
- 또한 조례안의 관련 규정은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의 시행 및 위탁 가능성 등을 정한 선언적·권고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비용 발생 여부 및 규모가 확정적이지 아니하므로 기술적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충남서산026			
정 책 명	서산시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담당자명	신예원	전화번호	041-661-8039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6월 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감염병관리과)	○ 서산시 한센인과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 규정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 한센병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한센병 관리 위탁 및 보조금 관한 사항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서산시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6월 08일 서산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영/041-660-3021)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서 산 시



수신 서산시보건소장(감염병관리과장)

(경유)

제목 「서산시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감염병관리과-4937(2026. 6. 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산시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불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불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서 산 시



주무관 **김지영** 여성정책팀장 **출장** 가족지원과장 **전경** 2026. 6. 8.
협조자 **심원주**
시행 가족지원과-19151 (2026. 6. 8.) 접수 감염병관리과-5011 (2026. 6. 8.)
우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가족지원과 (읍내동) / <https://www.seosan.go.kr>
전화번호 041-660-3021 팩스번호 041-660-2055 / coconut700@korea.kr / 비공개(5)
비전있는 희망 도시, 서산

마. 법제심사 결과서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서 산 시



수신 서산시보건소장(감염병관리과장)

(경유)

제목 법제심사 결과 통보 「서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

감염병관리과-5053(2026. 6. 9.)호 관련 「서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의
법제심사 결과를 불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불임 법제심사 결과 1부. 끝.

서 산 시 장



주무관	최복	의회법무팀장	이만수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전달 2026. 6. 15.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담당관-8048	(2026. 6. 15.)	접수	감염병관리과-5187	(2026. 6. 15.)	
무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읍내동)			/ http://www.seosan.go.kr	
전화번호	041-660-3039	팩스번호	041-660-2249	/ chldnr0205@korea.kr	/ 대국민 공개	
비전있는 희망 도시, 서산						

자치입법안 심사조서

□ 서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

심사사항	심사항목	심사세부내용	심결사과
선행절차	사전협의	관련기관, 단체, 부서와 사전협의 여부	적정
	소비자정책심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여부	해당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 및 관련부서 검토	적정
	비용추계	예산비용 수반시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해당없음
	규제	규제 해당 여부	해당없음
입법내용	필요성	①새로운 자치입법 제·개정의 필요성 ②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	적정
	적법성	①상위법령 위배 또는 타 자치법규와 모순 여부 ②주민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 시 상위법령의 근거 여부	적정
	타당성	①다른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규정 여부 ②조 또는 항간 상치되는 부분의 존재 여부 ③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 규정 여부	적정
입법형식	표현방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이행 여부	적정
	조문배열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의 배열 여부	적정
	작성형식	제·개정이유, 조례안 및 관련법령 첨부 여부	적정
부칙규정	시행일	소급적용 규정 여부	해당없음
	표기요령	①권리제한, 의무부과 시 30일 이상 유예기간 규정 여부 ②경과조치규정으로 기득의 권리, 지위침해 방지 여부	해당없음
기타	행정규칙 예산관련	①관련 하위법규, 행정규칙 등을 함께 검토 여부 ②예산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재원문제 고려 여부	적정
종합검토의견		- 한센인과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한센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 없음.	

심사를마침	심사일	2026. 6. 15.(제1311호)
	심사자	지방행정서기 최 욱
	확인자	지방행정사무관 신현우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7. 29. (목)

제 4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공공용지 활용(동문1동 주차장)을 위한 토지 취득
 - 수소도시 조성사업 부지 매입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공공용지 활용(동문1동 주차장)을 위한 토지 취득-

심 사 보 고 서

2026. 7. 27.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7. 16.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회계과(회계과 소관)]

다. 회부일자 : 2026. 7. 20.

라. 심사일자 : 2026. 7. 27.

2. 제안설명 요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공공용지 활용(동문1동 주차장)을 위한 토지 취득(회계과 소관)

- 취득재산 : 토지(일반회계) - 2,583㎡(3,653,324천원)

토지(특별회계) - 1,121㎡(1,591,820천원)

4. 검토의견 요지

- 본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동문1동 일원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 취득의 공익성 또한 충분하다고 사료됨
- 다만, 토지 취득 이후 주차장 조성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토지 보상 과정에서는 감정평가의 적정성 확보와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6.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7.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수소도시 조성사업 부지 매입-

심 사 보 고 서

2026. 7. 27.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6. 7. 16.
- 나. 제 출 자 : 서산시장[회계과(일자리경제과 소관)]
- 다. 회부일자 : 2026. 7. 20.
- 라. 심사일자 : 2026. 7. 27.

2. 제안설명 요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 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서산 수소도시 조성사업 부지 매입(일자리경제과 소관)
 - 취득재산 : 토지(일반회계) - 3,960㎡(1,860,000천원)

4. 검토의견 요지

- 본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요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하며 절차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수소경제 육성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 에너지 기반 구축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부지 취득 이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장기간 미활용 재산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도비 확보 계획,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사업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토지매입 가격의 적정성, 향후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7.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25호
의결연월일	

**-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7.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안 번호	제25호
----------	------

제출연월일 : 2026. 7. 16.

제출자 : 서산시장

1.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2. 제안이유

상기 법령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세부사업: 2건

연번	심의안건	소관부서
1	공공용지 활용(동문1동 주차장)을 위한 토지 취득	회계과
2	서산 수소도시 조성사업 부지 매입	일자리경제과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건수	수량 (면적)	기준가 격	건수	수량 (면적)	기준가 격	건수	수량 (면적)	기준가 격	
취 득	계	토지	27	219,066	13,163,242	35	225,609	14,359,207	8	6,543	1,195,965	
		건물	9	7,509	31,981,900	9	7,509	31,981,900				
		기타	1	-	514,000	1	-	514,000				
	1. 매입	토지	27	219,066	13,163,242	35	225,609	14,359,207	8	6,543	1,195,965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9	7,509	31,981,900	9	7,509	31,981,900				
		기타	1	-	514,000	1	-	514,000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6.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토목공사비포함)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합계 : 8필지		6,543	5,513,324			
1	동문동 42-10	답	1,455	2,035,334	2026. 9.	공공용지 활용	
2	동문동 39-8	답	85	123,250	2026. 9.	공공용지 활용	
3	동문동 39-6	답	108	156,600	2026. 9.	공공용지 활용	
4	동문동 39-7	답	602	866,880	2026. 9.	공공용지 활용	
5	동문동 39-10	답	93	132,060	2026. 9.	공공용지 활용	
6	동문동 42-9	답	240	339,200	2026. 9.	공공용지 활용	
7	대죽리 산182-5	임야	356	167,400	2026. 9.	수소도시 조성	
8	대죽리 산183-5	임야	3,604	1,692,600	2026. 9.	수소도시 조성	

회계명: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단위 : m², 천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건수	수량 (면적)	기준가격	건수	수량 (면적)	기준가격	건수	수량 (면적)	기준가격	
취 득	계	토지				1	1,121	430,464	1	1,121	430,464	
		건물										
		기타										
	1. 매입	토지				1	1,121	430,464	1	1,121	430,464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6.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토목공사비포함)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합계 : 1필지		1,121	1,591,820			
1	동문동 41-7	답	1,121	1,591,820	2026. 9.	공공용지 활용	

공공용지 활용(동문1동 주차장)을 위한 토지 취득

연 번	1
-----	---

소관부서: 회계과

1. 제안이유

- 공공용지로 활용(동문1동 주차장 조성)할 예정지를 사전에 취득하여 공공목적 활용 및 계획적인 기반 시설 확충에 기여코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동문동 41-7 외 6필지
- 매입시기: 2026년 하반기
- 소요예산: 약 53억원 ※ 공유재산 특별회계: 18.7억 기 예산 수립
- 활용계획: 동문1동 주차장 조성
- 취득대상 재산(토지)

(단위 : 천원, m²)

소재지	지목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비용 (추정가격)	비고
계		3,704	1,527,226	5,245,144	
동문동 41-7	답	1,121	430,464	1,591,820	
동문동 42-10	답	1,455	625,650	2,035,334	
동문동 39-8	답	85	36,550	123,250	
동문동 39-6	답	108	46,440	156,600	국(기재부)
동문동 39-7	답	602	258,860	866,880	국(기재부)
동문동 39-10	답	93	32,494	132,060	국(기재부)
동문동 42-9	답	240	96,768	339,200	

3. 그동안 추진현황

- 2025. 1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요청
- 2026.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2026. 3.: 토지 매입을 위한 분할 측량 실시
- 2026. 4.: 토지 취득 계획 수립
- 2026. 5.: 토지주 매입 협의 진행 및 감정 평가 실시
- 2026. 6.: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4. 향후계획

- 2026. 7.: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2026. 9.~: 사유지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5. 의결을 요하는 사항

- 매입 토지에 동문1동 주차장을 조성하여 행정복지센터 이용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야간 시간대 주변지역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 및 안전문제를 해소하여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 코자 합니다.
- 공공용지 활용을 위한 토지 취득 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치 및 현장사진, 관련법규 등

[붙임1] 위치 및 현장사진

(단위 : ㎡, 천원)

대상지	소재지	동문동 41-7 외 6필지	지목	답	면적	3,704
	용도	답	기준가격		1,527,226	



[붙임2]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심의회 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심의회 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30., 2019. 11. 8., 2022. 10. 19.>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다음 연도 예산 의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4. 25, 2015. 10. 30., 2019. 11. 8., 2022. 10. 19., 2023.5.31.>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 10. 19.>

1.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1. 향후 활용 및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효용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또는 비축부동산의 취득

2. 토지의 효율성 제고 및 토지 미래가치의 향상을 위한 분할·합병 및 공유재산의 집단화에 따른 경비

3. 공유재산을 활용한 수익증대 사업,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활성화 사업

4. 시 자체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비

5.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서산 수소도시 조성사업 부지 매입

연 번

2

소관부서: 일자리경제과

1. 제안이유

- 서산 수소도시 조성사업* 및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의 차질 없는 완성과 적기 준공을 위해 최적의 사업 부지인 대산충의 산업단지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의 확실성 및 실행 속도를 제고하고자 함.

* ** 사업 개요: [붙임 2]

2. 사업개요

- 소재지: 대산읍 대죽리 산 182-5 외 1필지
- 면적: 3,960㎡(1,200평) / 대산충의 일반산업단지 內
- 예상가액: 18.6억원(평당 약 155만원)
- 매입방법: 관련 법령에 따른 '분양 및 입주 계약' 방식으로 입주 계약 체결 후 용지 매매 계약 진행

※ 대산충의 일반산업단지 개요

- 위치: 대산읍 대죽리 198-7번지 일원
- 면적: 121,901㎡(구역 외 도로: 3,054㎡)
- 사업기간: 2019. 9. ~ 2027. 6.
- 시행방식: 민간개발방식
- 주요 유치업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 등

○ 취득대상 재산(토지)

(단위 : 천원, m²)

소재지	지목	취득면적	재산가격 (추정가격)	소유자	비고
계		3,960	99,203 (1,860,000)		
대죽리 산182-5	임야	356	2,976 (167,400)	대신자산신탁(주)	
대죽리 산183-5	임야	3,604	96,227 (1,692,600)	대신자산신탁(주)	

※ 대산층의 산단은 현재 조성 공사 중으로 매입 대상 토지의 획지 확정 (지번 부여)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표는 현재 지번 현황임.

3. 기타사항

○ 토지상태: 산업단지 조성 공사 중(2027년 상반기 완료 예정)

4. 그동안 추진현황

- 2026. 3.: 부지 매입 관련 업무 협의(서산시-충의산업단지(주))
- 2026. 4.: 국토부 수소도시 조성사업 정기점검(사업부지 변경 보고)
- 2026. 6.: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원안가결

5. 향후계획

- 2026. 8.: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결
- 2026. 8.: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2026. 9.: 충의산업단지 사업자와 분양 계약 추진
- 2027. 上.: 중도금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6. 의결을 요하는 사항

- 서산 수소도시 조성사업과 이와 연계한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의 차질 없는 완성과 적기 준공을 위해 최적의 인프라를 갖춘 대산층의 일반산업단지 내 사업 부지를 적기에 확보하여 사업의 확실성과 실행 속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서산 수소도시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관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위치 및 사진현황 1부.
2. 사업 개요 1부.
3. 관련 법령 1부. 끝.

[붙임 1] 위치 및 사진현황

(단위 : 천원, m²)

대상지	소재지	대산읍 대죽리 182-5 외 1필지	지목	임야	면적	3,960
	용도	산업시설 용지	재산가액		99,203	



[붙임 2] 사업개요

1. 서산 수소도시 조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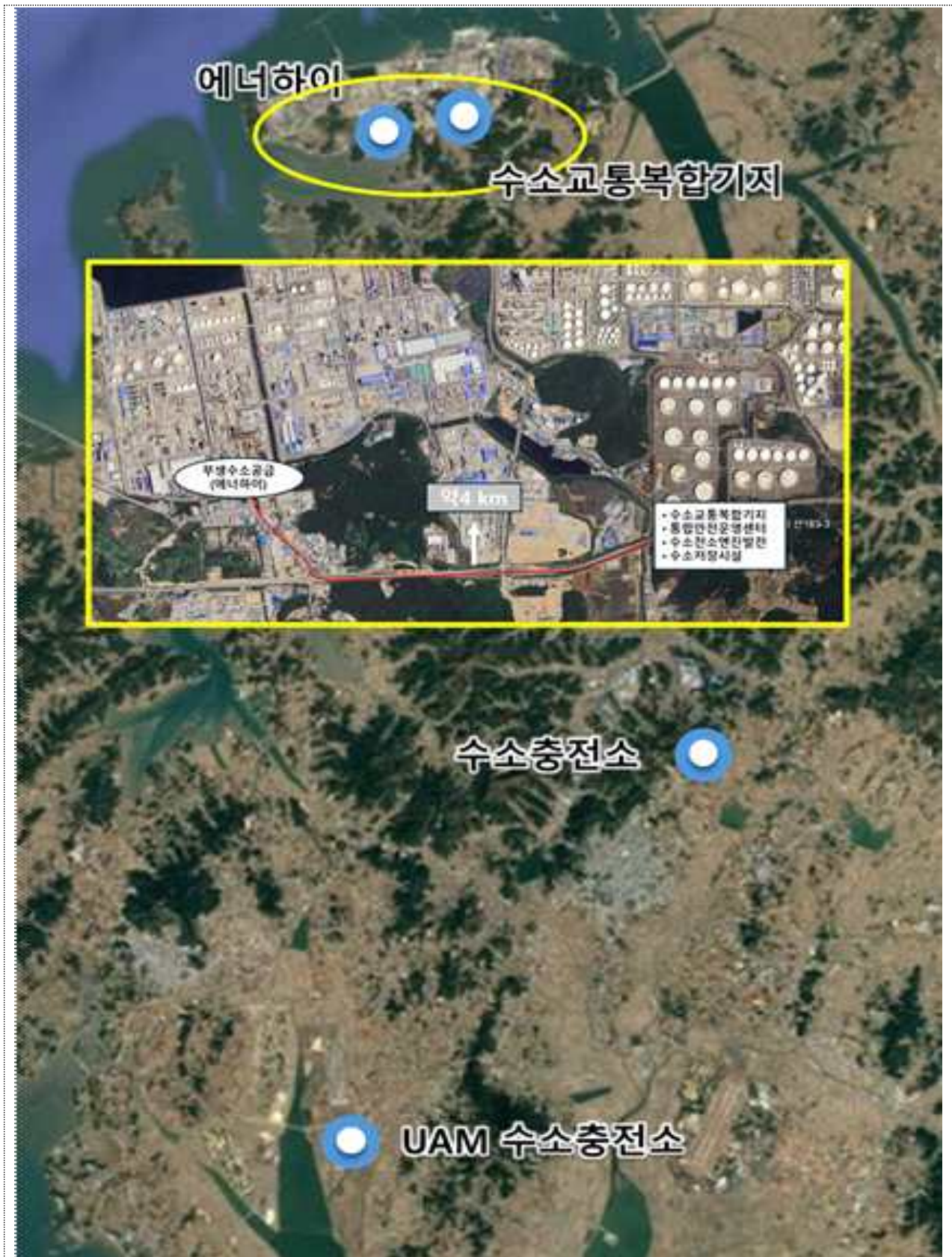
수소도시란?

수소를 주에너지원의 하나로 사용되는 도시로, 수소를 가정·건물, 수송, 발전 등 생활·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 시설(생산-이송·저장-활용)을 갖춘 ‘수소 특화 도시’

□ 사업개요

- 기 간: '25.~'28년(4년)
 - 위 치: 서산시 대산읍(대산석유화학단지) 및 부석면 일대
 - 사 업 비: 300억 원(국 150, 도 45억, 시 105억) * 부지매입비 별도
 - 주요내용: 수소 생산·공급·이송·저장·활용 등 관련 인프라 구축
 - (생산·공급) 롯데에너지하이 생산기지를 통해 일일 1.4톤 공급, 현대건설 1MW급 수전해 시설 연계 (별도 사업)
 - (이송·저장) 수소 공급지와 4km 직공급 배관을 충전소에 연결, 충전소 내 1t급 저장 설비 2기 구축하여 상용차 100대 이상 대응
 - (활 용) 80kg/h급 충전소 2개소 신설 (자체 1, 별도 사업 1), 200kW급 수소 전소엔진 발전기 1기 구축 (15억 원).
 - (안전 및 특화 요소) 통합안전운영센터 구축을 통해 모니터링 및 수요·재고 관리, 미래 모빌리티 그린 UAM(도심항공교통) 지원용 수소충전소 구축
 - (기 타):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및 설계 용역 추진
- ※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사업의 실효성 및 운영 효율성 검토 결과에 따라 세부사업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계획(구상)도



□ 그동안 추진사항

- '24. 5.: 국토부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
- '24. 9.: 3기 수소도시 조성사업 선정
- '25. 6.: 수소도시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
- '26. 2.: 기존 부지 문제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중지
- '26. 4.: 사업 대상지 변경 결정

- (당 초) SAF종합실증센터 사업 부지
- (변 경) 대산층의 일반산업단지
- (사 유) SAF실증센터 사업 부지 조성을 위한 현대오일뱅크의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 장기 지연됨 → 사업의 차질 없는 적기 준공을 위해 입지적 적합성, 인프라의 완비성, 행정절차의 신속성을 모두 갖춘 대산층의 일반 산업단지로 변경

□ 앞으로 계획

- '26. 6. ~ 7.: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상정
- '26. 7. : 수소도시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용역 중지 해제
- '26. 8.~ 9.: 추가경정예산안 반영(계약금), 분양계약
- '26. 12.: 마스터플랜 준공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2.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수소교통 복합기지란?

교통거점*에 대용량 수소 충전·저장시설 및 부대시설(주차장, 편의시설, 생산시설 등)을 갖춘 수소 충전기지

* 수소도시, 물류센터, 산업단지(배후 지원시설 포함), 공공택지 등

☐ 사업개요

- 기 간: '27.~'28년(2년)
- 위 치: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89
- 사 업 비: 63억 원(국 42.9, 도 5.4억, 시 14.7억)
- 주관기관: 서산시, 한국가스기술공사
- 주요내용: 충전소: 80kg/h급 충전소 2개소 및 주차장 등 구축

☐ 그동안 추진사항

- '26. 1.: 국토부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 공모
- '26. 4.: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 선정

☐ 앞으로 계획

- '26. 5. ~ 12.: 수소충전소 관련 행정절차 및 허가 준비
- '27. 上.: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 실시설계 추진
- '28. 上.: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 착공

[붙임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30., 2019. 11. 8., 2022. 10. 19.>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다음 연도 예산 의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4. 25, 2015. 10. 30., 2019. 11. 8., 2022. 10. 19., 2023.5.31.>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 10. 19.>

1.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7. 30. (목)

제 4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27.

산 업 건 설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6. 7. 16.

나. 발 의 자 : 서산시장(기후환경대기과)

다. 회부일자 : 2026. 7. 20.

라. 심사일자 : 2026. 7. 27.

2. 제안설명 요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26.1.1.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서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서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서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서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안 제3장의 제목, 제9조의 제목 및 제9조제1항)
-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0조제4항)

4.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와 상위법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 상위 법령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공정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시민 의견이 정책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현행 조례는 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은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금번 개정안은 위원 위촉 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한된 위원 정원 내에서 전문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에는 일정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제10조제4항을 신설하는 방식보다는 제10조제3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별도의 위촉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 외 관련 법령의 충돌이나 형식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수정안 붙임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4.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위원은다음각호에 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 1. ~ 3. (생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다음각호에 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 1. ~ 3. (개정안과 같음) 4. <u>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u> <u><삭제></u>
<u><신설></u>	<u>④ 제3항제3호에 따라</u> <u>위원을 위촉할 때에는</u> <u>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의 안 번 호	제 15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07. 16.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5 호
----------	--------

제출연월일 : 2026. 07. 16.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26.1.1.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서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서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서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장의 제목, 제9조의 제목 및 제9조제1항)
-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0조제4항)

3. 단계별 추진사항

- 입법계획 결재 : 2026. 5. 12. (기후환경대기과-13199호)
- 성별영향평가 : 2026. 5. 18. (가족지원과-17054호)
 - 결 과 : 별도 개선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26. 5. 15. (기후환경대기과-13489호)
 - 기 간 : 2026. 5. 15. ~ 6. 4. (20일간)
 - 공고번호 : 서산시 공고 제2026-1506호

- 결 과 : 의견 없음
- 법제심사 : 2026. 6. 15. (기획예산담당관-8504호)
- 조례·규칙심의회 : 2026. 6. 22.(월)
- 시의회 의결 : 2026. 7 ~ 8월 중
- 공포·시행 : 2026. 7 ~ 8월 중

4.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및 조례
- 나. 예산조치
-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 라. 법제심사 결과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서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서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제3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3장	기후위기	대응위원회
제9조(서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	제9조(서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	
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회의	구성·운영) ①	-----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		-----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		-----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	-----		-----
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	-----		-----
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산시 2	-----		-----
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		-----를 둔
다.		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③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	
	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		
	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사		
	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제22조(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4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수반요인 없음

4. 작성자: 환경녹지국 기후환경대기과장 안 성 민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서 산 시



해뜨는 서산

수신 기후환경대기과장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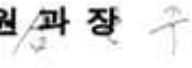
제목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기후환경대기과-13514(2026. 5. 15.)호와 관련됩니다.

2.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불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불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가 족 지 원 과 장



주무관	김지영	여성정책팀장	김영석	가족지원과장	2026. 5. 18. 심은주
협조자					
시행	가족지원과-17054	(2026. 5. 18.)	접수	기후환경대기과-13646	(2026. 5. 18.)
무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가족지원과 (을내동)	/ https://www.seosan.go.kr		
전화번호	041-660-3021	팩스번호	041-660-2055	/ coconut700@seosan.go.kr	/ 비공개(5)
비전있는 희망 도시, 서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충남서산021			
정 책 명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부서명	기후환경대기과		
	담당자명	정한나	전화번호	041-660-232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5월 1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후환경대기과)	○ 서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서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3장의 제목, 제9조의 제목 및 제9조제1항) ○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 반영되도록 규정 신설(안 제10조제4항)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 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5월 17일				
서산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영/041-660-3021)				
기후환경대기과장 귀하				

라. 법제심사 결과

자치입법안 심사조서

□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사항	심사항목	심사세부내용	심결과
선행절차	사전협의	관련기관, 단체, 부서와 사전협의 여부	적정
	소비자정책심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여부	해당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 및 관련부서 검토	적정
	비용추계	예산비용 수반시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해당없음
	규제	규제 해당 여부	해당없음
입법내용	필요성	①새로운 자치입법 제·개정의 필요성 ②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	적정
	적법성	①상위법령 위배 또는 타 자치법규와 모순 여부 ②주민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 시 상위법령의 근거 여부	적정
	타당성	①다른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규정 여부 ②조 또는 항간 상치되는 부분의 존재 여부 ③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 규정 여부	적정
입법형식	표현방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이행 여부	적정
	조문배열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의 배열 여부	적정
부칙	작성형식	제·개정이유, 조례안 및 관련법령 첨부 여부	적정
규정	시행일	소급적용 규정 여부	해당없음
	표기요령	①권리제한, 의무부과 시 30일 이상 유예기간 규정 여부 ②경과조치규정으로 기득의 권리, 지위침해 방지 여부	해당없음
기타	행정규칙 예산관련	①관련 하위법규, 행정규칙 등을 함께 검토 여부 ②예산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자원문제 고려 여부	적정
종합검토의견		- 상위법령의 개정 시행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여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 없음.	

심사를마침	심사일	2026. 6. 15.(제1308호)
	심사자	지방행정서기 최 욱
	확인자	지방행정사무관 신현우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7. 30. (목)

제 4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27.

산 업 건 설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6. 7. 16.

나. 발 의 자 : 서산시장(주택과)

다. 회부일자 : 2026. 7. 20.

라. 심사일자 : 2026. 7. 27.

2. 제안설명 요지

-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서산시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별지 제1호 서식(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서약서 및 동의서) 변경

4. 검토의견 요지

- 개정조례안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의 서식을 현실 여건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시행 등 제도 변화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전자정부법」에 맞게 명확히 하고, 신청서와 동의서에 중복 규정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일원화하여 서식의 체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무주택 확인 범위, 지원 취소 및 환수 사유의 용어,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등 일부 내용은 조례의 지원 대상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서식의 체계성 및 법적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와 같이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수정안 붙임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 지]

■ [별지 제1호서식]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택 소유여부(✓체크) ☐ 무주택	
	주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				
혼인신고일	년 월 일					
배우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주택소유여부(✓체크) ☐ 무주택	
	(남 _____명, 여 _____명)					
임차주택 현황	소재지				임대인	
	임차면적	m ²	임차보증금		원	
	계약기간	(_____년 _____월 _____일 ~ _____년 _____월 _____일)				
대출정보	대출인		금융기관		총 대출금	
	대출일자		대출금 잔액		대출용도	
지원계좌	금융기관			예금주(※신청인 명의)		
	계좌번호					
본인은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				접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2호)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포함) 4.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 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 되도록 표시 발급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 증명원 1부 제출 6. 신분증 및 금융기관 통장 각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접수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1. 주민등록표등본 2.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전국 기준) ※ 주택소유자(임대인)등 신청자와의 관계 확인필		
				접수기관		
				확인자 직급: _____ 성명: _____ (서명) 소속 _____ 읍·면·동장 직인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약서 및 동의서

1. 신청자격 확인 및 서약

본인은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신 청 내 용		신청인 확인란
1. 혼인관계 확인	본인 및 배우자는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관계임	(서명 또는 인)
2. 무주택 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무주택자임	(서명 또는 인)
3. 대출용도	본인(또는 배우자)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마련용도'로 대출금을 받아 이자 납부를 하고 있음	(서명 또는 인)
4. 임차계약 사항	임차주택은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소유의 주택이 아니며, 실제 주택소유자와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서명 또는 인)
5. 지원취소 및 환수	지원요건을 상실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에 동의함.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 가족관계, 혼인 여부, 주택소유 여부, 전세자금대출 관련 정보, 소득확인 정보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지원 종료 후 5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 대상 심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서약자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의 안 번 호	제 16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7. 14.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6 호
----------	--------

제출연월일 : 2026. 7. 16.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서산시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 서식(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서약서 및 동의서) 변경

3. 단계별 추진사항

- 가. 입법계획 결재: 2026. 5. 20.(주택과-16444)
- 나. 성별 영향 평가: 2026. 6. 8.(가족지원과-19149)
- 다. 입법예고
 - 공고일자: 2026. 5. 21. ~ 6. 10.(20일간)
 - 공고번호: 서산시 공고 제2026-1573호
 - 결 과: 의견 없음
- 라. 법제심사: 2026. 6. 15.(기획예산담당관-8047)

마. 조례·규칙심의회: 2026. 6. 22.(기획예산담당관-8617)

바. 시의회 의결 및 공포: 2026. 8월 중

사. 시행: 2027. 1. 1.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예산조치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라. 법제심사 결과서(자치입법안 심사조서)

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택 소유여부(✓체크) ☐ 무주택		
	주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					
혼인신고일	년 월 일						
배우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주택소유여부(✓체크)		
		(남,여)			☐ 무주택		
가족사항 (자녀)	(남 _____명, 여 _____명)						
임차주택 현황	소재지					임대인	
	임차면적	m ²	임차보증금		원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대출정보	대출인		금융기관		총 대출금		
	대출일자		대출금 잔액		대출용도		
지원계좌	금융기관			예금주(※신청인 명의)			
	계좌번호						
본인은 위와 같이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공무원이 「전자 정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접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 구비서류				접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2호)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포함) 4.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 날인) - 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 되도록 표시 발급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 증명원 1부 제출 6. 신분증 및 금융기관 통장 각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접수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1. 주민등록표등본 2.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세대원 전체) ※ 주택소유자(임대인)등 신청자와의 관계 확인필			
				접수기관			
				확인자 직급: 소속 성명: 읍·면·동·장 직인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약서 및 동의서														
☐ 신청인은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5가지 항목에 대하여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환할 것임을 서약 합니다.														
신 청 내 용		신청인 확인란												
1. 혼인관계 확인	본인 및 배우자는 20 . . .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관계임	(서명 또는 인)												
2. 무주택 여부	세대주, 세대원 전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서명 또는 인)												
3. 대출용도	본인(또는 배우자)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마련용도’로 대출금을 받아 이자 납부를 하고 있음	(서명 또는 인)												
4. 임차계약 사항	본인(또는 배우자)는 임차주택이 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실제 주택 소유자와의 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음	(서명 또는 인)												
5. 지원취소 및 환수	신청자가 사업에 선정된 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 하는 것에 동의함	(서명 또는 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 분</th> <th>사 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지원취소 및 환수조치</td> <td> - 대출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 기타 시장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경우 </td> </tr> </tbody> </table>		구 분	사 유	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 대출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 기타 시장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경우									
구 분	사 유													
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 대출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 기타 시장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5%;">수집·이용 항목</th> <th style="width: 35%;">수집·이용 목적</th> <th style="width: 30%;">보유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가족관계사항, 결혼여부, 주택소유여부, 금융대출자료, 소득상황</td> <td>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급여처리를 위한 수집</td> <td>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td> </tr> </tbody> </table>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5%;">항 목</th> <th style="width: 35%;">수집목적</th> <th style="width: 30%;">보유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주민등록번호</td> <td>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급여처리를 위한 수집</td> <td>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td> </tr> </tbody> </table>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가족관계사항, 결혼여부, 주택소유여부, 금융대출자료, 소득상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급여처리를 위한 수집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급여처리를 위한 수집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가족관계사항, 결혼여부, 주택소유여부, 금융대출자료, 소득상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급여처리를 위한 수집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급여처리를 위한 수집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20 년 월 일 서약자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

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건설교통국 주택과장 조수현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충남서산028			
정 책 명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부서명	주택과		
	담당자명	김미순	전화번호	041-660-213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6월 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주택과)	○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 별제 제1호 서식(지원 신청서) 변경 - 별지 제2호 서식(서약서 및 동의서) 변경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6월 08일				
서산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영/041-660-3021)				
주택과장 귀하				

라. 심사조서

자치입법안 심사조서

□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사항	심사항목	심사세부내용	심결과과
선행절차	사전협의	관련기관, 단체, 부서와 사전협의 여부	적정
	소비자정책심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여부	해당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 및 관련부서 검토	적정
	비용추계	예산비용 수반시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해당없음
	규제	규제 해당 여부	해당없음
입법내용	필요성	①새로운 자치입법 제·개정의 필요성 ②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	적정
	적법성	①상위법령 위배 또는 타 자치법규와 모순 여부 ②주민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 시 상위법령의 근거 여부	적정
	타당성	①다른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규정 여부 ②조 또는 항간 상치되는 부분의 존재 여부 ③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 규정 여부	적정
입법형식	표현방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이행 여부	적정
	조문배열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의 배열 여부	적정
부칙	작성형식	제·개정이유, 조례안 및 관련법령 첨부 여부	적정
규정	시행일	소급적용 규정 여부	해당없음
	표기요령	①권리제한, 의무부과 시 30일 이상 유예기간 규정 여부 ②경과조치규정으로 기득의 권리, 지위침해 방지 여부	해당없음
기타	행정규칙 예산관련	①관련 하위법규, 행정규칙 등을 함께 검토 여부 ②예산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재원문제 고려 여부	적정
종합검토의견		-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식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 없음.	

심사를마침	심사일	2026. 6. 15.(제1312호)
	심사자	지방행정서기 최 욱
	확인자	지방행정사무관 신현우

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서 산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44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통보

제447회 서산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집행부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물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심의일시 : 2026. 6. 22.(월)
2. 심의안건 : 총 10건(조례안 9건, 규칙안 1건)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10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 의 결 과
33	서산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 안 가 결
34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가 결
35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가 결
36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가 결
37	서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 안 가 결
38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가 결
39	서산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가 결
40	서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	원 안 가 결
41	서산시 청년·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가 결
42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 안 가 결

물임 제44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 각 1부(제33호~제42호). 끝.

서 산 시



수신자 정수과장, 민원봉사과장, 회계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기후환경과(기후조), 가족지원과장, 서산시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주택과장, 서산시보건소장(감염병관리과장)

주무관 최욱 의회법무팀장 여연수 기획예산담당 전결 2026. 6. 24.
관 신현후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담당관-8617 (2026. 6. 24.) 정수 주택과-20549 (2026. 6. 24.)

부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읍내동) / <http://www.seosan.go.kr>

전화번호 041-660-3039 팩스번호 041-660-2249 / chidnr0205@korea.kr / 무문공개(4,5)

비전있는 희망 도시, 서산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7. 30. (목)

제 4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생명연 서산분원 건립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생명연 서산분원 건립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27.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6. 7. 16.

나. 발 의 자 : 서산시장(미래전략담당관)

다. 회부일자 : 2026. 7. 20.

라. 심사일자 : 2026. 7. 27.

2. 제안설명 요지

- 융합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의 구심점이 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의 원활한 건립을 도모하고자 3자(市,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현대건설) 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투자협약 개요
 - 협 약 명 :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내 생명연 서산분원 건립 투자협약
 - 당 사 자 : 서산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현대건설
 - 목 적 : 서산분원 위치 및 부지 매입 조건 합의
 - 역할분담
 - 서 산 시 : 서산분원 건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수행

* 총 149.82억 원을 생명연에 출연(부지매입비 35, 건축비 114.82)

· 생 명 연 : 서산분원 건립(연구개발, 기업지원 및 인재양성)

· 현대건설 : 서산분원 부지 매각(3년 할부), 특구 내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건립 개요>

- 기 간: 2027. ~ 2031.
- 위 치: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내 첨단바이오단지
- 사 업 량: 총부지 33,058㎡, 연면적 7,560㎡
- 총사업비: 417.73억 원(국 153.09, 도 76.55, 시 149.82, 생명연 38.27)
- 주요시설: 연구동(지상2, 지하1), 기숙사(지상4, 지하1), 스마트온실
- 종사자수: 총 54명(연구 49, 경영지원 5)

4. 검토의견 요지

- 본 동의안은 2016년부터 추진해 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유치사업이 2025년 11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서산분원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기반시설 조성 등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및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기존 협약은 사업 추진의 주요 주체인 충청남도, 대한민국 국회, 서산시 및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간 예산 지원과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체결되어 왔음.
- 반면, 금번 협약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의 토지 소유자이자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현대건설을 협약 당사자로 포함하고,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서산시 및 한국생명공학

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기반시설 조성, 부지 매입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는 한편, 서산시가 부담하는 토지매입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인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2026년 3월 13일 제정된 「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지역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및 연구개발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산석유화학 단지의 환경문제, 해양생태계 복원, 담수호 수질 개선, 축산분뇨 악취 저감기술 개발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 투자협약에서 정한 각 기관의 역할과 의무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약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17 호
의결연월일	

생명연 서산분원 건립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7. 16.

생명연 서산분원 건립 투자협약 체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17 호
------------	--------

제출연월일 : 2026. 7. 16.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제안이유

융합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의 구심점이 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의 원활한 건립을 도모하고자 3자(市,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현대건설) 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투자협약 개요

- 협 약 명: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내 생명연 서산분원 건립 투자협약
- 당 사 자: 서산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현대건설
- 목 적: 서산분원 위치 및 부지 매입 조건 합의
- 역할분담

- 서 산 시: 서산분원 건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수행

* 총 149.82억원을 생명연에 출연(부지매입비 35, 건축비 114.82)

- 생 명 연: 서산분원 건립(연구개발, 기업지원 및 인재양성)
- 현대건설: 서산분원 부지 매각(3년 할부), 특구 내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건립 개요

- 기 간: 2027. ~ 2031.
- 위 치: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내 첨단바이오단지
- 사 업 량: 총부지 33,058㎡, 연면적 7,560㎡
- 총사업비: 417.73억 원(국 153.09, 도 76.55, 시 149.82, 생명연 38.27)

- 주요시설: 연구동(지상2, 지하1), 기숙사(지상4, 지하1), 스마트온실
- 종사자수: 총 54명(연구 49, 경영지원 5)

3. 그동안 추진사항

- 2022. 4.: 생명연 서산분원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원안 가결
- 2022. 4.: 생명연 서산분원 설립에 관한 협약 체결(道, 국회의원, 市, 생명연)
- 2023. 10.: 생명연 서산분원 타당성조사 불통과
- 2024. 10.: 생명연 서산분원 설립에 관한 협약 수정* 체결(道, 국회의원, 市, 생명연)
- * 건축규모(9,280㎡ → 7,560㎡) 및 총사업비(427.5억원 → 448.45억원) 변경
- 2024. 10.: 생명연 서산분원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 변경동의안 원안 가결
- 2025. 11.: 생명연 서산분원 타당성재조사* 통과
- * B/C 비율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조정(448.45억원 → 417.73억원)
- 연구장비 구입비 23.64억원 등 약 30억원 감축

4. 앞으로 추진계획

- 2026. 8.: 생명연 서산분원 건립 투자협약 체결(市, 생명연, 현대건설)
- 2026. 9.: 「2026년 서산시 융합그린바이오 포럼」 개최
- 2026. 12.: 2027년도 사업비 확보
- 2027. 7.: 계획설계 착수
- 2027. 11.: 중간설계 착수
- 2028. 6.: 실시설계 착수
- 2029. 9.: 서산분원 착공
- 2031. 12.: 서산분원 개원

5. 참고사항

- 가. 위치 및 현장사진
- 나. 투자협약서(안)
- 다. 관련법령

참고1

위치 및 현장사진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내 생명연 서산분원 건립 투 자 협 약 서

서산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 및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는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이하 “특구”) 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이하 “서산분원”) 건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전략 산업 육성 및 국가 바이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특구 내 서산분원 건립을 위한 각 당사자의 역할과 협력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개요)

1. 위 치: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일원(특구 내 첨단바이오단지)
 2. 규 모: 부지 33,058㎡, 연면적 7,560㎡
 3. 총사업비: 417.73억원* (국비, 지방비, 연구원 자체자금 등 포함)
* 부지매입비 35억원, 건축비 382.73억원
 4. 사업기간: 2027~2031년 (5년간)
 5. 주요시설: 연구동, 시험동, 기숙사 각 1동 등
- ※ 여건에 따라 총 투자금액 및 사업기간 변경 가능

제3조 (당사자별 역할)

1. 서산시: 서산분원 건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수행한다.
2. 생명연: 서산분원 건설에 필요한 국비사업 확보 이후 특구 내 부지 매입 및 서산분원을 건립하고,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기업지원 및 인재양성에 힘쓴다.
3. 현대건설: 특구 조성 사업자로서 서산분원 부지(원형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서산분원이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단지 내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에 최선을 다한다.

제4조 (부지 매입 및 사용 승낙)

1. **(재원 조달)** 서산시는 서산분원 부지매입비 35억원을 국비 사업기간 1차년도부터 3년간 분할하여 생명연에 출연한다.
2. **(매매 계약)** 생명연과 현대건설은 서산시의 부지매입비 출연 일정을 반영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되, 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방식은 별도로 합의한다.
3. **(사전 사용 승낙)** 현대건설은 대금 완납 전이라도 생명연이 2027년 설계 착수 및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 체결 직후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행한다.
4. **(협력 의무)** 생명연은 선사용 부지 내 안전관리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현대건설의 특구 조성 공사에 협조한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각 기관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와 자료를 상호 공유한다.

제6조 (효력 및 준수)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각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 내용을 준수하며, 세부 사항은 별도의 합의서나 계약에 의한다.

2026년 8월 일



해뜨는 서산

서 산 시
시장 이 완 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 장 권 석 윤



현 대 건 설
대표 이 한 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연구기관이 제24조제2항제8호의2에 따라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 설립·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해당 연구기관의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산업에 적용한다.

3. 바이오, 항공, 생태, 금속·뿌리, 세라믹 등 지역특화산업

제6조(지역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연구개발, 기술이전·자문, 정보 보안 등의 기술 지원 사업

7.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 사업

②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3. 정부나 충청남도 또는 시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보조·출연·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등) 제6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서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연구기관 등 유치
2. 바이오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입주공간·거주활동 지원
3.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및 기업·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7. 30. (목)

제 4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고기능 특수고분자 종합 실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고기능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27.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6. 7. 16.

나. 발 의 자 : 서산시장(미래전략담당관)

다. 회부일자 : 2026. 7. 20.

라. 심사일자 : 2026. 7. 27.

2. 제안설명 요지

- 서산은 산업부 「2026년 제3차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됨.(2026. 7. 10.)
-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내 신규과제인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를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출연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사 업 명 : 고기능성 특수고분자¹⁾ 중합 실증 기반 구축사업

1) · 기존 범용 석유화학제품(플라스틱 등)보다 성능이 우수한 고부가가치 소재. 미래 모빌리티·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

- 사업기간 : 2026. 7. ~ 2030. 12.
- 사업위치 : 대산읍 평신1로 595-10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부지]
- 총사업비 : 165억원(국 100, 도 19.5, 시 45.5)
- 사업내용 : AI 기반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소재의 실증·사업화
지원체계 구축과 효율적 인프라 조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실증인프라) AI 기반 중합-가공-부품화 전주기 실증 플랫폼 구축·운영
 - (시험·분석·평가) 특수고분자 소재의 시험·분석·평가 및 인증·표준화 지원
 - (기업지원) 기업 맞춤형 기술실증,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
 - (인력양성)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참여기관 : ^{총괄}충남도·서산시, ^{주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공동}충남테크노파크·한국자동차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모개요>

- 공 모 명: 2026년도 3차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 신청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지원규모: 과제당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 원 이내
- 지원기간: 2026. 7. ~ 2030. 12.(54개월 이내)
- 지원내용: 미래 원천·첨단 산업기술 선도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지원에 특화된
국가 주도의 공동활용 기반구축
- 주 관: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내열성·내약품성·고강도·경량화 등 우수한 물성을 갖추어 극한 환경에서도 성능 유지
- 탄소중립·디지털화 확산에 따라 첨단산업의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는 전략 소재로 중요성 확대

○ 사업비 현황

- 총사업비: 165억 원(국 100, 도 19.5, 시 45.5)

- 연도별 사업비

(단위: 억 원)

구 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 계		165	15	54	35	36	25
국 비		100	10	25	25	25	15
지방비	소 계	65	5	29	10	11	10
	도 비	19.5	1.5	8.7	3	3.3	3
	시 비	45.5	3.5	20.3	7	7.7	7

※ 사업비 집행(출연기관)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 항목별 사업비

(단위: 억 원)

구 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비고
합 계	165	15	54	35	36	25	
토지비	-	-	-	-	-	-	KCL 부지 (매입 불필요)
건축비 (리모델링비)	10	5	5	-	-	-	지방비 10
연구개발비	155	10	49	35	36	25	국 비 100 지방비 55

4. 검토의견 요지

○ 본 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 「2026년 제3차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시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본 사업은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여 AI 기반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험·평가·인증 및 기업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대산석유화학단지과 연계한 첨단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가 첨단소재 공급망 강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18호
의결연월일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7. 16.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제18호
----------	------

제출연월일 : 2026. 7. 16.

제출자 : 서산시장

1. 제안이유

- 서산은 산업부 「2026년 제3차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됨.(2026. 7. 10.)
-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내 신규과제인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를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출연하고자 함.

2. 출연근거

- 「민법」 제32조
-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지방재정법」 제18조

3. 추진배경

- 미래 모빌리티·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서산의 석유화학 집적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사업화 지원체계 구축으로, 첨단소재 공급망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사업개요

○ 사업명: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 구축사업

■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 기존 범용 석유화학제품(플라스틱 등)보다 성능이 우수한 고부가가치 소재, 미래 모빌리티·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
- 내열성·내약품성·고강도·경량화 등 우수한 물성을 갖추어 극한 환경에서도 성능 유지
- 탄소중립·디지털화 확산에 따라 첨단산업의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는 전략 소재로 중요성 확대

○ 사업기간: 2026. 7. ~ 2030. 12.

○ 사업위치: 대산읍 평신1로 595-10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부지]

○ 총사업비: 165억 원(국 100, 도 19.5, 시 45.5)

○ 사업내용: AI 기반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소재의 실증·사업화 지원체계 구축과 효율적 인프라 조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실증인프라) AI 기반 중합-가공-부품화 전주기 실증 플랫폼 구축·운영
- (시험·분석·평가) 특수고분자 소재의 시험·분석·평가 및 인증·표준화 지원
- (기업지원) 기업 맞춤형 기술실증,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
- (인력양성)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참여기관: 총괄 충청남도·서산시, 주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공동 충남테크노파크·한국자동차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공모개요 】

- 공 모 명: 2026년도 3차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 신청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지원규모: 과제당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 원 이내
- 지원기간: 2026. 7. ~ 2030. 12.(54개월 이내)
- 지원내용: 미래 원천·첨단 산업기술 선도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지원에 특화된 국가 주도의 공동활용 기반구축
- 주 관: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5. 그동안 추진사항

- 2026. 5. 22.: 산업부 공고(2026년 3차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 2026. 5.~6.: 관계기관 업무 협의(道, 市, 충남TP, KCL, 한자연, 생기연)
- 2026. 6. 10.: 사업 대상지 현장 답사
- 2026. 6. 22.: 공모 계획서 제출
- 2026. 6. 30.: 발표평가
- 2026. 7. 10.: 공모사업 선정(산업부)

6. 재정지원(출연) 계획

- 총사업비: 165억 원(국 100, 도 19.5, 시 45.5)
- 연도별 사업비

(단위: 억 원)

구 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 계		165	15	54	35	36	25
국 비		100	10	25	25	25	15
지방비	소 계	65	5	29	10	11	10
	도 비	19.5	1.5	8.7	3	3.3	3
	시 비	45.5	3.5	20.3	7	7.7	7

- 출연기관: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 출연내용: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 항목별 사업비

(단위: 억 원)

구 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비 고
합 계	165	15	54	35	36	25	
토지비	-	-	-	-	-	-	KCL 부지 (매입 불필요)
건축비 (리모델링 비)	10	5	5	-	-	-	지방비 10
연구개발비	155	10	49	35	36	25	국 비 100 지방비 55

7. 향후 계획

- 2026. 下: 공정 실증 인프라 기반조성(부지·설계·기본장비계획·실증설비)
- 2027.: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실증센터 준공 및 실증장비 구축·시운전
- 2028.: 실증 인프라 본격 가동 및 중합 공정 최적화 기반 시제품 제작 지원
- 2029.: 실증 인프라 운영 안정화 및 AI 기반 중합공정 기술지원 본격화
- 2030.: 공정 실증 고도화 및 기업 사업화·자립화 연계 추진

8. 참고사항

- (참고1) 공모 선정결과 공문
- (참고2) 관련 법률 및 조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 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유환철 책임자)
(경유)

제 목 2026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 확정 통보

1. 관련

- 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1조(선정평가), 제22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 나.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5조(선정평가)
- 다.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52호(2026년도 3차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 계획 공고, 2026. 5. 22.)
- 라. 산업기술정책과-886(2026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 확정 통보, 2026.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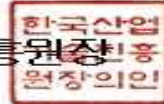
2. 상기 관련,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정 통보하오니, 협약체결 준비 및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과제명(RFP) :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구축
- 나. 주관연구개발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다. 평가결과 : 지원대상
- 라. 향후 진행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불임 종합의견서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기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협약체결 관련 서류를 준비

불임 : 종합의견서 1부

협약체결 관련 부대서식 1부. 끝.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연구원 김미준 실장 2026. 07. 10 송석

참조자

시행 산업혁신기반실-279 (2026. 07. 10.) 접수 ()

우 08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5 한국기술센터 6층 /

전화 02-6009-3446 / 전송 02-6009-3079 / yijun2506@kiat.or.kr / 비공개(5.7)

산업 르네상스를 실현하는 혁신성장 플랫폼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지역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기획 및 연구 사업
2. 연구개발, 기술이전·자문, 정보 보안 등의 기술 지원 사업
3.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사업
7.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 사업
8.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 사업

②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7. 「민법」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보조·출연·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 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7. 30. (목)

제 4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중앙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서산중앙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27.

산 업 건 설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26. 7. 16.
- 나. 발 의 자 : 서산시장(도시과)
- 다. 회부일자 : 2026. 7. 20.
- 라. 심사일자 : 2026. 7. 27.

2. 제안설명 요지

- 서산중앙주차장은 동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조성되는 공동이용시설로, 원도심 주차난 해소와 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임.
- 주차장, 마을카페, 교육·회의장 등 복합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기반 조직에 위탁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 관리·운영 위탁 개요

- 위탁대상 사무 : 서산중앙주차장 관리·운영 전반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수탁예정자 : 먹거리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 선정방식 : 수의
- 위탁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
- 소요예산 :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주차장 및 카페 운영수익금, 자체 수입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며, 별도 시비 지원은 없음.

※ 운영수익 및 자체 수입 규모 등에 따라 운영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4. 검토의견 요지

- 본 동의안은 동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통해 조성된 서산중앙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
- 서산중앙주차장은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기능과 함께 마을카페, 교육 및 회의장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갖춘 도시재생 거점시설로서, 단순한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이 함께 요구되는 시설임.
- 이에 따라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지역기반

조직이 운영할 경우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19 호
의결연월일	

서산중앙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7. 16.

서산중앙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 19 호
----------	--------

제출연월일 : 2026. 7. 16.

제출자 : 서 산 시 장

1. 제안이유

- 서산중앙주차장은 동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조성되는 공동이용 시설로, 원도심 주차난 해소와 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임.
- 주차장, 마을카페, 교육·회의장 등 복합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기반 조직에 위탁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위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30조의2
-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제12조의3
-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5조 위탁 대상사무 및 제8조 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3. 시설현황

- 시설명: 서산중앙주차장
- 위치: 서산시 동문동 303
- 시설규모: 지상 2층 / 옥탑층, 연면적 4,984.94㎡
- 위탁범위: 주차장, 마을카페, 교육 및 회의장 운영과 시설 유지관리 전반

○ 위 치 도



4. 관리 · 운영 위탁 개요

- 위탁대상 사무: 서산중앙주차장 관리 · 운영 전반
- 운영방법: 민간위탁
- 수탁예정자: 먹거리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 선정방식: 수의
- 위탁기간: 허가일로부터 3년
- 소요예산: 시설 운영 ·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주차장 및 카페 운영수익금, 자체 수입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며, 별도 시비 지원은 없음.
- ※ 운영수익 및 자체 수입 규모 등에 따라 운영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5. 단계별 추진사항

- 2026. 7. : 서산시의회 동의
- 2026. 8. : 위탁협약 체결
- 2026. 8 ~ 9. : 서산중앙주차장 관리·운영 개시

6. 참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30조의2
-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제12조 의3
-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5조 및 제8조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7. 30. (목)

제 4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양유정 햇빛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양유정 햇빛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27.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26. 7. 16.
- 나. 발 의 자 : 서산시장(도시과)
- 다. 회부일자 : 2026. 7. 20.
- 라. 심사일자 : 2026. 7. 27.

2. 제안설명 요지

- 양유정 햇빛센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주민 생활편의 증진과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임.
- 1층 마을카페·빨래방과 2층 협동조합 사무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기반 조직에 위탁하고자 함.
-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 관리·운영 위탁 개요

- 위탁대상 사무 : 양유정 햇빛센터 1층 및 2층 관리·운영 전반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수탁예정자 : 양유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 선정방식 : 수의
 - 위탁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
 - 소요예산
 -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카페 및 빨래방 운영수익금, 자체 수입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며, 별도 시비 지원은 없음.
 - 카페 운영 수입, 빨래방 이용 수입, 기타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수입 등을 활용하여 운영함.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공공요금, 소모품비, 장비 유지관리비 등은 운영수익 범위 내에서 집행함.
- ※ 운영수익 및 자체 수입 규모 등에 따라 운영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4. 검토의견 요지

-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양유정 햇빛센터의 1층(마을카페, 빨래방) 및 2층(협동조합 사무실)의 관리·운영을 지역기반 조직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햇빛센터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공동체 활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인 만큼, 지역기반 조직을 통한 운영은

주민 참여 확대와 시설의 효율적 관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동의안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카페 및 빨래방 운영수익 등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민간위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재정부담과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검토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운영수익만으로 시설 운영이 가능한지, 향후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지 등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재정부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향후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서 정한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와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 제출서류를 충실히 갖추어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 결**』

의 안 번 호	제 20 호
의결연월일	

양유정 햇빛센터 관리 · 운영 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7. 16.

양유정 햇빛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 20 호
----------	--------

제출연월일 : 2026. 7. 16.

제출자 : 서산시장

1. 제안이유

- 양유정 햇빛센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주민 생활편의 증진과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임.
- 1층 마을카페·빨래방과 2층 협동조합 사무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기반 조직에 위탁하고자 함.
-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위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30조의2
-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제12조의3
-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6조 및 제8조

3. 시설현황

- 시설명: 양유정 햇빛센터
- 위치: 서산시 읍내동 189-3
- 시설규모: 지상 3층, 연면적 1,165.40㎡
- 위탁범위: 1층 마을카페, 빨래방, 2층 협동조합 사무실 운영과 시설 유지관리 전반
- 대상시설: 햇빛센터 1층 및 2층

○ 위치도



4. 관리·운영 위탁 개요

- 위탁대상 사무 : 양유정 햇빛센터 1층 및 2층 관리·운영 전반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수탁예정자 : 양유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 선정방식 : 수의
 - 위탁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
 - 소요예산
 -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카페 및 빨래방 운영수익금, 자체 수입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며, 별도 시비 지원은 없음.
 - 카페 운영 수입, 빨래방 이용 수입, 기타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수입 등을 활용하여 운영함.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공공요금, 소모품비, 장비 유지 관리비 등은 운영수익 범위 내에서 집행함.
- ※ 운영수익 및 자체 수입 규모 등에 따라 운영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5. 단계별 추진사항

- 2026. 7.: 서산시의회 동의
- 2026. 8.: 위탁협약 체결
- 2026. 9.: 양유정 햇빛센터 관리·운영 개시

6. 참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30조의2
-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제12조의3
-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6조 및 제8조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7. 30. (목)

제 4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 바이오 웰빙 연구특구 계획 변경(7차) 의견제시의 건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서산 바이오 웰빙 연구특구 계획 변경(7차)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6. 7. 27.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6. 7. 16.

나. 발 의 자 : 서산시장(투자유치과)

다. 회부일자 : 2026. 7.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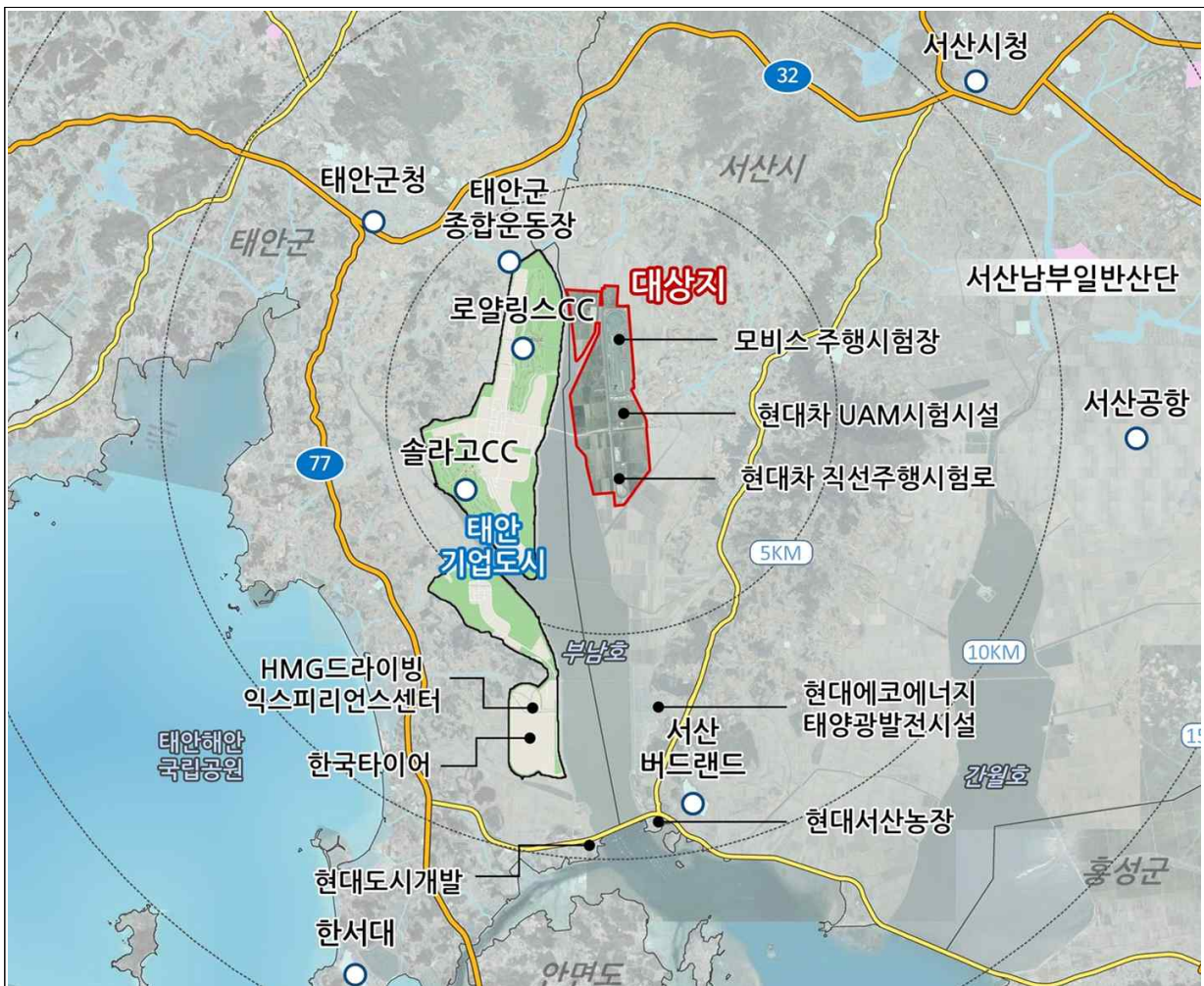
라. 심사일자 : 2026. 7. 27.

2. 제안설명 요지

- 사업 대상지는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서산간척지 B지구 일원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2008년도에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총 6차계획이 변경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임.
- 특구의 장기간 방치된 개발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특화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공전략을 마련하기위하여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 변경(7차)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주문과 같이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3. 주요 내용

- 전 명 :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 심의
-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서산간척지 일원
- 면 적 : 5,998,500m²
- 사업시행자 : 현대건설(주)
- 사업기간 : (기정) 2008. ~ 2025.
(변경) 2008. ~ 2030.
- 근거법령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위 치 도



○ 주요 변경내용

- 특구사업 기간을 2008년~2025년에서 2008년~2030년까지 5년 연장
- 기존 교육·관광·의료·체육·노인복지 중심의 개발계획을 축소하고 농업바이오·연구·청정수소 중심으로 특화사업 재편
- 청정수소특화단지를 신설하고 부지활용 방식을 일부 직접사용으로 변경
- 시장수요 및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관광·골프장 등 사업을 폐지하고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을 확대
-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
- 충청남도 항공모빌리티 클러스터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연구·산업기능 강화

4. 검토의견 요지

- 본 안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의 개발계획을 현실 여건과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재편하기 위하여 특구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변경안은 최초 지정 이후 17년이 지나며 발생한 계획의 사양화·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서산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스마트농업(농업바이오), 미래 모빌리티(UAM), 친환경 에너지(청정수소) 중심으로 특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려는 조치로 보임.
- 실현 가능성이 낮은 레저·관광 등의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국책 사업과 (수소도시, 항공모빌리티, 농업바이오)과 연계하여 사업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계획 변경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됨.

- 장기간 추진이 지연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의 개발계획을 현재의 산업환경과 정책방향에 맞게 재정비하여 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농업바이오·연구·청정수소 중심의 특화사업으로 개편하고 토지 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에는 사업별 추진 일정과 투자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집행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개별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관리와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구 개발이 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본 안건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찬성의견 채택』

의 안 번 호	제 21 호
의결연월일	

서산 바이오 웰빙 연구특구 계획 변경(7차)
의견제시의 건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7. 16.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 변경(7차) 의견제시의 건

의안 번호	제 21 호
----------	--------

제출연월일 : 2026. 7. 16.

제출자 : 서산시장

1. 주문사항

-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 변경(7차)를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7조 따라 다음과 같이 서산시의회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함

2. 제안이유

- 사업 대상지는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서산간척지 B지구 일원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2008년도에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총 6차계획이 변경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임
- 특구의 장기간 방치된 개발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특화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공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 변경(7차)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주문과 같이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3. 주요 변경사항

○ 위 치: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서산간척지 일원

○ 면 적: 5,998,500㎡

○ 변경내용 및 사유

① 사업기간

- 내용: (기정) 2008. ~ 2025. → (변경) 2008. ~ 2030.

- 사유: 사업기간 만료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② 토지이용계획

- 내용: (기정) 교육, 연구, 관광, 의료, 체육, 노인복지 등

→ (변경) 농업바이오단지, 연구단지, 청정수소특화단지

- 사유: (농업바이오단지)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콤플렉스 앵커기업

중심의 국내 스마트팜 생태계 조성 활성화

(연구단지)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연구시설 및 그린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와 연계한 관련 항공 모빌리티 산업 거점 활성화

(청정수소특화단지) 특구 내 농업활동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수소생산시설 설치

○ 기타사항

- 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과(2023년)에 따라 기정

테마파크, 골프장을 청정수소특화단지, 가스공급시설 등으로 변경

-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설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가로망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별 건축물 밀도계획, 획지계획 등 재검토

- 서산 특구 내 용도별 기능과 여건에 부합하는 유치업종 계획을 수립

4.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6차)	증감	조정(안)	기정(6차)	조정(안)
합계		5,998,500	-	5,998,500	100.0	100.0
농업바이오 단지 조성사업	소계	731,330	증) 48,048	779,378	12.2	13.0
	농업바이오단지	503,493	-	503,493	8.4	8.4
	농업체험단지	126,825	증) 182	127,007	2.1	2.1
	첨단바이오단지	101,012	증) 47,866	148,878	1.7	2.5
연구시설 조성사업	소계	2,344,832	증) 86,914	2,431,746	39.1	40.5
	첨단부품연구시설	1,505,035	감) 388,873	1,116,162	25.1	18.6
	자동차연구시설	537,321	증) 52	537,373	9.0	9.0
	연구시설	302,476	증) 475,735	778,211	5.0	13.0
청정수소특화단지		-	증) 666,387	666,387	-	11.1
관광사업	소계	245,436	감) 245,436	-	4.1	-
	테마파크	148,530	감) 148,530	-	2.5	-
	숙박시설	71,915	감) 71,915	-	1.2	-
	웰빙컴플렉스	24,991	감) 24,991	-	0.4	-
의료시설 조성사업	의료시설	47,870	감) 47,870	-	0.8	-
체육시설 조성사업	골프장시설	556,312	감) 556,312	-	9.3	-
노인복지시설 조성사업	실버단지	46,134	감) 46,134	-	0.8	-
지원시설 조성사업	소계	169,328	증) 215,949	385,277	2.8	6.4
	주거용지	33,981	감) 33,981	-	0.6	-
	근린생활시설	-	증) 13,359	13,359	-	0.2
	귀농귀촌타운	91,277	감) 91,277	-	1.5	-
	바이오전시유통단지	44,070	감) 44,070	-	0.7	-
	지원시설	-	증) 371,918	371,918	-	6.2
기타 공공사업	소계	1,857,258	감) 121,546	1,735,712	31.0	28.9
	생태수로	111,888	감) 102,088	9,800	1.9	0.2
	농수로	공공공지	증) 125	15,551	0.3	0.3
		공공공지외	증) 315	196,095	3.3	3.3
	도로(교통광장포함)	365,919	감) 49,370	316,549	6.1	5.3
	하수종말처리장	6,000	-	6,000	0.1	0.1
	정수장	500	감) 500	-	0.1	-
	공원	67,034	-	67,034	1.1	1.1
	녹지	소계	증) 19,040	1,113,751	18.3	18.6
		완충녹지	증) 62,894	171,199	1.8	2.9
		경관녹지	감) 87,852	26,913	1.9	0.4
		기타녹지	증) 43,998	915,639	14.5	15.3
	가스공급시설	-	증) 6,000	6,000	-	0.1
	전기공급시설(변전소)	-	증) 4,932	4,932	-	0.1

5.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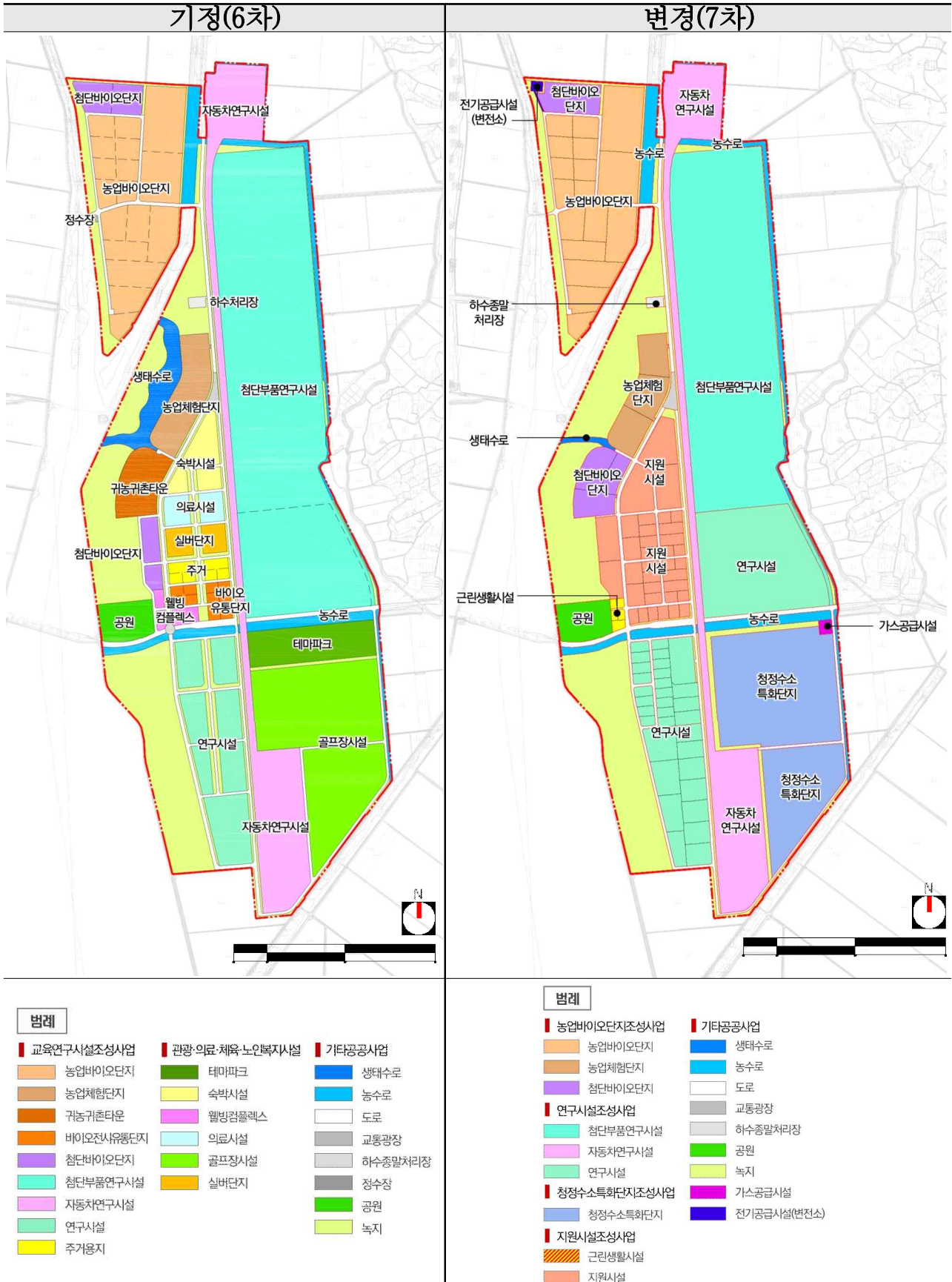
- 2008. 12. 31.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고시(최초)
(지경부고시 제2008-235호)
- 2012. 12. 28. : 특구사업 기간연장 승인고시(1차)
(지경부고시 제2012-527호)
- 2013. 12. 24. : 지역특화특구계획 변경 고시(2차)
(중기청 고시 제2013-54호)
- 2015. 12. 10. : 지역특화특구계획 변경 고시(3차)
(중기청 고시 제2015-61호)
- 2019. 01. 15. : 특구사업 기간연장 승인고시 (4차)
(중기청 고시 제2019-4호)
- 2019. 10. 31. : 지역특화특구계획변경 고시(5차)
(중기부고시 제2019-54호)
- 2019. ~ 2021. : 농업바이오단지 기본계획 및 세부이행계획 수립 / 서산시 및 주민
민원 합의 (검은여, 농지임대 등)
- 2023. 05. 19. : 지역특화특구계획변경 고시(6차)
(중기부고시 제2023-52호)
- 2025. 06. 24. : 지역특화특구계획 변경(7차) 승인신청
- 2025. 06. 26. :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26.6.1.)
- 2025. 07. 03. : 주민공람(~7.24.) 및 주민공청회(7.25.) (서산시 공고 제2025-1694호)
- 2025. 10. 20. :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조치계획서 제출
- 2025. 12. 10. : 지역특화특구계획 변경(7차) 승인신청 제출(서산시 → 중기부)
- 2026. 06. 18. : 서산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
- 2026. 07. : 서산시의회 의견 청취
- 2026. 11.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심의 및 승인고시

- 붙임 1. 위치도
2. 토지이용계획 (변경)(안)도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1」 위치도



「붙임2」 토지이용계획 (변경)안도



「붙임3」 관계법령

관 계 법 령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제2장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화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제2장에서 같다)·군·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특화특구계획을 작성하여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한 경우 그 특화특구계획을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특화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화특구계획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화특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7. 30. (목)

제 4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도시관리계획(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계획(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6. 7. 27.

산 업 건 설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6. 7. 16.

나. 발 의 자 : 서산시장(도시과)

다. 회부일자 : 2026. 7. 20.

라. 심사일자 : 2026. 7. 27.

2. 제안설명 요지

- 천수만 연안환경에 대한 오염원 유입이 증가하고 담수 방류로 인한 해양수질 악화 및 기후변화 영향으로 수산업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인근 어업종사자 및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 현재 마을 주민들의 주된 수입원인 해상펜션, 해상낚시터, 유어장 등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용도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 결정 내용에 대하여 서산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

3. 주요 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자연환경보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자연환경보전지역	10,162,000	감) 859,480	9,302,520	100.0	

※ 금번 변경분(859,480㎡)은 해역부로 미지정지역으로 결정

- 자연환경보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미지정 지역	859,480	-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변경

○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천수만 수산자원 보호구역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일원	10,162,000	감) 859,480	9,302,520	

-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행정구역별 면적 조서

행정구역명			행정구역 면적(km ²)	편입면적(㎡)			비 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 정	변 경	변경후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742.3	10,162,000	감) 859,480	9,302,520	

-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 해역부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m ²)	변경사유
합 계			859,480	대규모 인공호 조성, 연안개발 등으로 악화된 천수만 해양수질로 인해 수산업 생산량이 감소됨에 따라 주민의 경제력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창리B지역) 일부를 해제
변경	①	충청남도 서산 시 부석면 일원	859,480	

○ 육역부 (해당없음)

4. 검토의견 요지

- 본 의견제시의 건은 천수만 창리 지역 일부 해역(859,480m²)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천수만의 해양환경 변화와 수산자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소득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상펜션, 해상낚시터, 유어장 등 관광·체험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사항으로, 현재 창리 어촌계에서 해상낚시터와 해상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보호구역으로서의 기능이 상당 부분 약화된 것으로 보이며,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정적인 운영 측면에서도 보호구역 해제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이번 변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천수만의 해양관광 자원 활용을 통한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찬성의견 채택』

의 안 번 호	제 22 호
의결연월일	

**도시관리계획(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07. 16.

도시관리계획(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 안 번 호	제 22 호
------------	--------

제출연월일 : 2026. 07. 16.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주문사항

- 천수만 연안환경에 대한 오염원 유입이 증가하고 담수 방류로 인한 해양수질 악화 및 기후변화 영향으로 수산업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인근 어업종사자 및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 현재 마을 주민들의 주된 수입원인 해상펜션, 해상낚시터, 유어장 등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 결정 내용에 대하여 서산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

의견청취 사항

도시관리계획(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1. 위 치 : 서산시 부석면 창리 전면 해변부 일원
2.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변경 결정
 -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해제: 10,162,000㎡ 중 859,480㎡ 해제
 -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규모 동일

2. 주요 변경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자연환경보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자연환경보전지역	10,162,000	감) 859,480	9,302,520	100.0	

※ 금번 변경분(859,480㎡)은 해역부로 미지정지역으로 결정

(2) 자연환경보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미지정 지역	859,480	-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변경

나.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천수만 수산자원 보호구역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일원	10,162,000	감) 859,480	9,302,520	

(2)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행정구역별 면적 조서

행정구역명			행정구역 면적(㎢)	편입면적(㎡)			비 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 정	변 경	변경후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742.3	10,162,000	감) 859,480	9,302,520	

(3)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 해역부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m ²)	변경사유
합 계			859,480	대규모 인공호 조성, 연안개발 등으로 악화된 천수만 해양수질로 인해 수산업 생산량이 감소됨에 따라 주민의 경제력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창리B지역) 일부를 해제
변경	①	충청남도 서산 시 부석면 일원	859,480	

○ 육역부 (해당없음)

3. 그 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 2026. 6.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입안요청
(해양수산물⇒도시과)
- 2026. 6. 8. ~: 관련기관(부서)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 포함)
(금강유역환경청 외 11개 기관)
- 2026. 6. 10. ~ 6. 30.: 주민 의견청취
- 2026. 7. ~ 8.: 시의회 의견청취
- 2026. 9.: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6. 10.: 도시관리계획 결정 요청(서산시⇒충청남도)
- 2027. 3.: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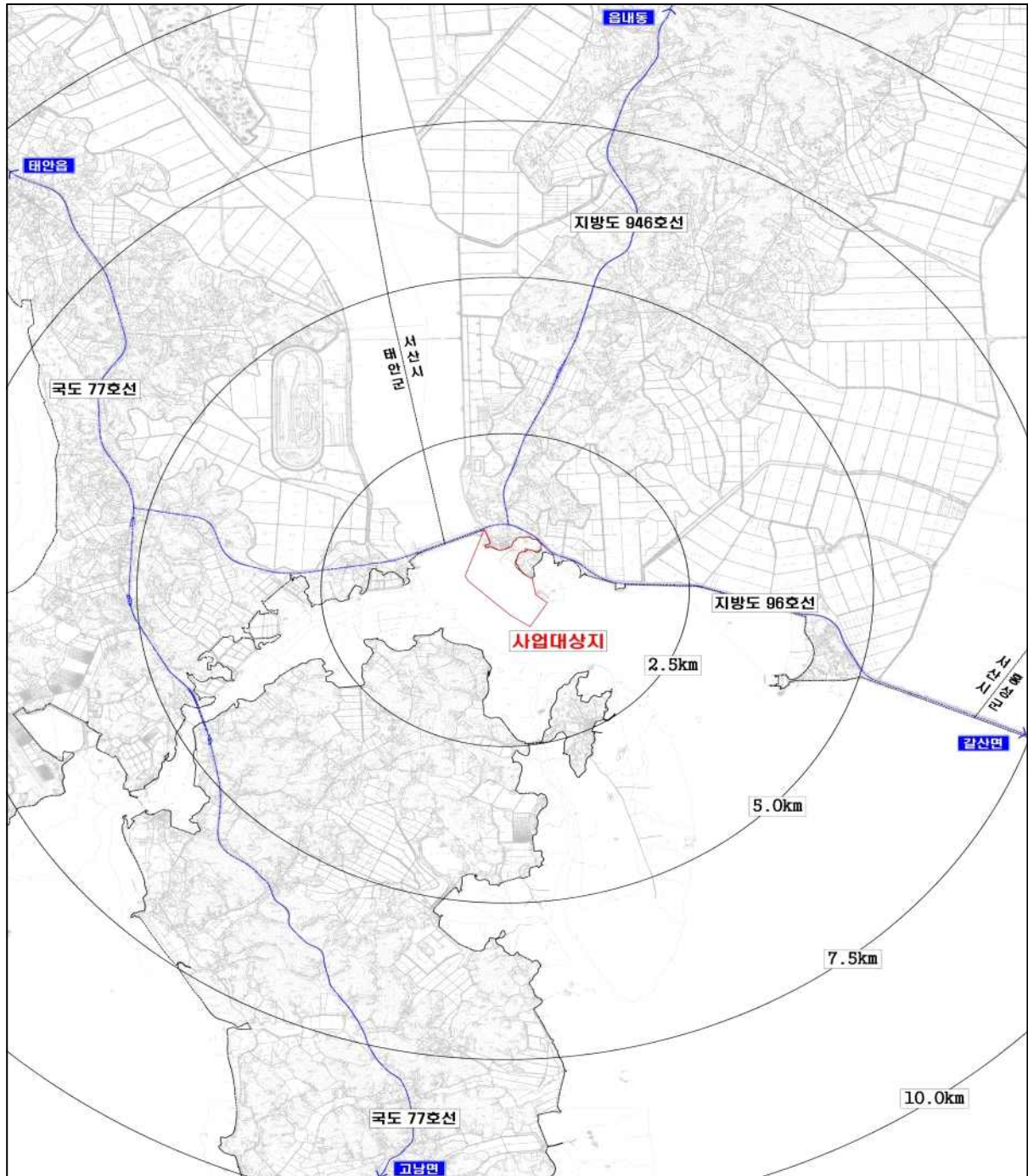
4. 주민의견 청취 주요사항

- 주민의견청취 방법: 서산시 공고 제2026-1673호
- 공 고 일: 2026. 6. 10.
- 열람기간: 2026. 6. 10. ~ 2026. 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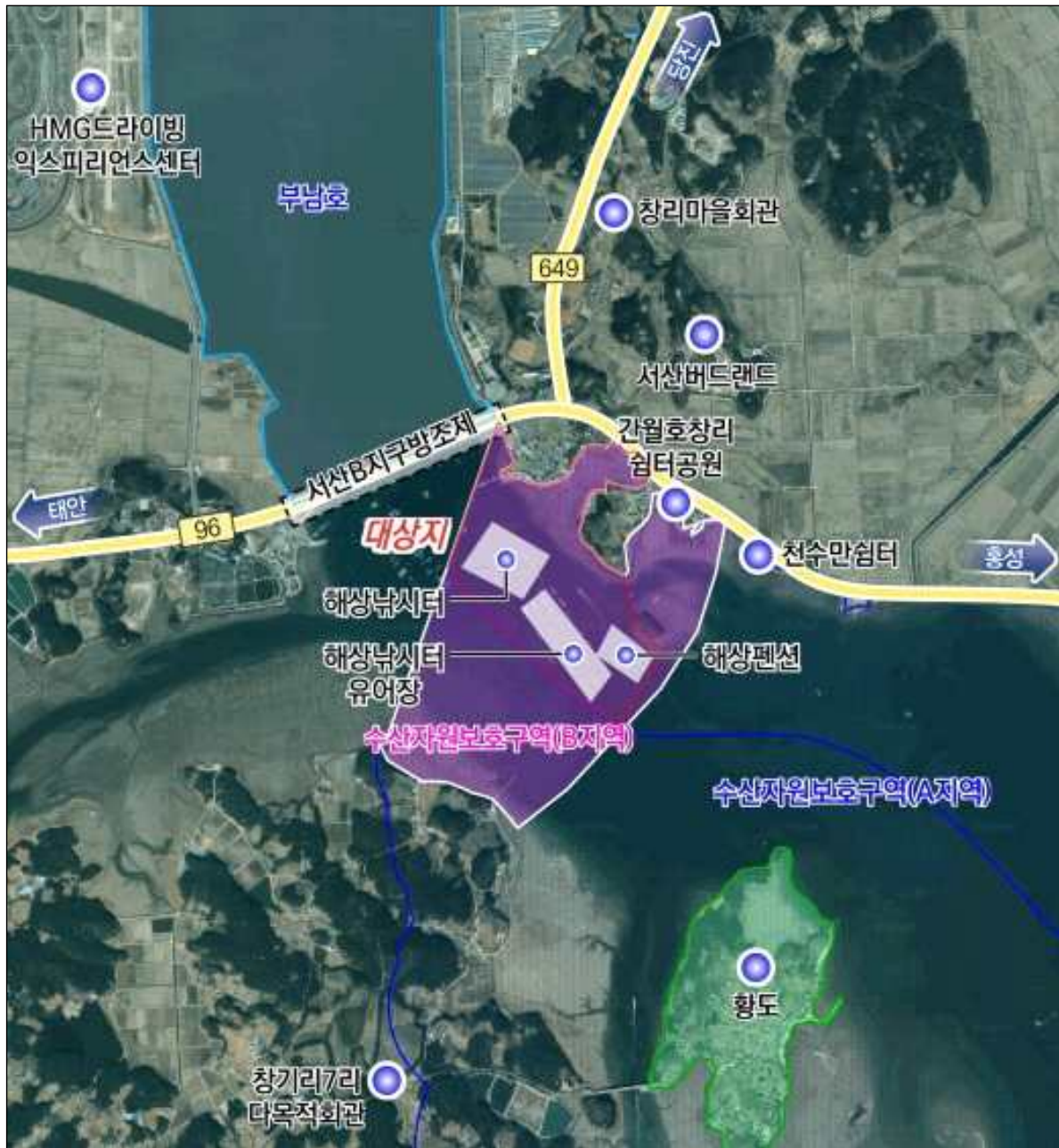
- 열람장소: 서산시청 도시과, 부석면 행정복지센터, 태안군(도시교통과, 안면읍·남면 행정복지센터)
- 의견제출: 제출의견 없음

- 붙임**
1. 위치도 1부.
 2. 현황도 1부.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1부.
 4.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위치도



[붙임 2] 현황도



[붙임 3]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도



[붙임 4]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⑦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3부터 제40조의5까지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7. 30. (목)

제 4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6. 7. 27.

산 업 건 설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26. 7. 16.
- 나. 발 의 자 : 서산시장(도시과)
- 다. 회부일자 : 2026. 7. 20.
- 라. 심사일자 : 2026. 7. 27.

2. 제안설명 요지

- 해미국제성지와 연계한 치유 기반 체류거점 조성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화 체류공간 구축, 대규모 국제 행사 개최가 가능한 공간 및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자 「해미국제성지 기반 내포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글로벌 치유테마 벨리지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 금회 원활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내용에 대하여 서산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

3. 주요 내용

- 공간시설(안)

구분	주요 세부 시설	면적(m²)	비중(%)	비고
녹지	녹지대 등	6,900	37.5	녹지율 법적 기준 충족
도로 및 광장	진입로·연결로(25개 노선), 광장, 나눔마당	4,568	24.8	-
조경시설	수공간(2개소), 잔디광장, 파고라(6개), 테이블셋트	4,264	23.1	-
편익시설	주차장(1,187m²), 화장실(40m², 1동)	1,227	6.7	건폐율 0.2% (지침 20% 이내)
운동시설	바람마루, 어울림마루, 야외체육시설(8개)	779	4.2	-
휴양시설	햇살마루, 치유의쉼터, 쉼터데크(7개)	471	2.6	-
교양시설	야외무대	206	1.1	-

4. 검토의견 요지

- 안건은 해미국제성지와 연계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국제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치유

테마 빌리지' 사업 부지를 문화공원(가칭: 치유틈공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해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해미국제성지와 연계한 치유 기반 체류형 관광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을 신설하고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와 공공 휴식공간 확충 측면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주민의견 제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 계획 결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제 23 호
의결연월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07. 1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의 안 번 호	제 23 호
------------	--------

제출연월일 : 2026. 07. 16.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주문사항

- 해미국제성지와 연계한 치유 기반 체류거점 조성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화 체류공간 구축, 대규모 국제 행사 개최가 가능한 공간 및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자 「해미국제성지 기반 내포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글로벌 치유테마 빌리지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 금회 원활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내용에 대하여 서산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

의견청취 사항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위 치 : 서산시 해미면 반양리 272번지 일원
- 2.사 업 명 : 글로벌 치유테마 빌리지 조성사업
3. 주요내용
 - ①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
 - 문화공원 : A=18,415㎡ 신설
 - ②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2. 주요 변경사항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조서

가. 공간시설(안)

1) 공원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4	치유뜰 공원	문화 공원	해미면 반양리 272번지 일원	-	증)18,415	18,415	-	생산 녹지 지역

2) 공원 결정(변경)(안)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치유뜰 공원	• 공원(주제공원:문화공원) 신설 - 위치 : 해미면 반양리 272번지 일원 - 면적 : 18,415㎡	• 해미국제성지의 순교 역사를 기반으로 한 종교 콘텐츠와 지역의 다양한 치유콘텐츠를 활용하여 방문 및 관광객에게 종교 문화와 웰니스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체류 공간을 조성하고자 공원 신설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가. 총괄조서(안)

구 분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공작물 (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8,415	100.0	40	40	25	시설률 : 62.5%
시설소계		11,515	62.5	40	40	25	건폐율 : 0.2%
도로 및 광장	소계	4,568	24.8	-	-	-	
	도로	2,965	16.1	-	-	-	
	광장, 나눔마당	1,603	8.7	-	-	-	
조경시설	수공간, 잔디광장	4,264	23.1	-	-	9	
휴양시설	햇살마루, 치유의쉼터	471	2.6	-	-	7	
교양시설	야외무대	206	1.1	-	-	1	
운동시설	바람마루, 어울림마루	779	4.2	-	-	8	
편익시설	주차장, 화장실	1,227	6.7	40	40	-	1동
녹지		6,900	37.5	-	-	-	녹지율 : 37.5%

나. 공원 세부시설 조서(안)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부지면 적 (㎡)	건축면적(㎡)		공작 물 (기)	비고
				바닥면 적	연면적		
소계			18,415	40	40	25	시설률 : 62.5% 건폐율 : 0.2%
시설면적			11,515	40	40	25	
도로 및 광장	소 계		4,568	-	-	-	
	도 로		2,965	-	-	-	
	1-가	광장	1,003	-	-	-	
	1-나	나눔마당	600	-	-	-	
조경 시설	소 계		4,264	-	-	9	
	2-가	수공간	294	-	-	-	
	2-나	수공간	294	-	-	-	
	2-다	잔디광장	3,676	-	-	-	
	2-1	파고라	-	-	-	2	
	2-2	파고라	-	-	-	2	
	2-3	파고라	-	-	-	2	
	2-4	테이블셋트	-	-	-	3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부지면 적 (㎡)	건축면적(㎡)		공작 물 (기)	비고
				바닥면 적	연면적		
휴양 시설	소계		471	-	-	7	
	3-가	햇살마루	343	-	-	-	
	3-나	치유의쉼터1	64	-	-	-	
	3-다	치유의쉼터2	64	-	-	-	
	3-1	쉼터테크	-	-	-	7	
교양 시설	소 계		206	-	-	1	
	4-가	야외무대	206	-	-	1	
운동 시설	소 계		779	-	-	8	
	5-가	바람마루	283	-	-	-	
	5-나	어울림마루	496	-	-	-	
	5-1	야외체육시 설1	-	-	-	1	
	5-2	야외체육시 설2	-	-	-	1	
	5-3	야외체육시 설3	-	-	-	1	
	5-4	야외체육시 설4	-	-	-	1	
	5-5	야외체육시 설5	-	-	-	1	
	5-6	야외체육시 설6	-	-	-	1	
	5-7	야외체육시 설7	-	-	-	1	
	5-8	야외체육시 설8	-	-	-	1	
편익 시설	소 계		1,227	40	40	-	
	6-가	주차장	1,187	-	-	-	
	6-나	화장실	40	40	40	-	1동
녹지			6,900	-	-	-	녹지율 : 37.5%

※ 시설률(법적기준) : 제한없음 / 건폐율(지침기준) : 20.0%이내

다. 도로 조서(안)

1) 총괄조서

구분	폭원(m)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비고
합계		979	2,965	25	
공원진입동선	2.0~13.0	344	1,408	5	
공원연결동선	2.0~9.0	635	1,557	20	

2) 도로 세부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m)	면적(㎡)	기점	종점	비고
합계					979	2,965			
소로	3	1	4.0	진입로	173	692	구역계	2-다	
소로	3	2	2.0	진입로	8	16	구역계	소로3-11	
소로	3	3	10.0~13.0	진입로	3	25	구역계	소로3-14	
소로	3	4	3.0~5.5	진입로	103	333	구역계	구역계	
소로	3	5	6.0	진입로	57	342	소로3-4	소로3-25	
소로	3	6	2.0	연결로	2	4	6-가	소로3-1	
소로	3	7	2.0	연결로	2	4	6-가	소로3-1	
소로	3	8	2.0	연결로	2	4	6-가	소로3-1	
소로	3	9	2.0	연결로	8	16	6-가	3-가	
소로	3	10	2.0	연결로	8	16	소로3-1	1-나	
소로	3	11	2.0	연결로	138	276	소로3-1	소로3-23	
소로	3	12	2.0	연결로	19	38	소로3-13	소로3-11	
소로	3	13	2.0	연결로	59	118	소로3-11	소로3-15	
소로	3	14	2.0~8.0	연결로	50	103	소로3-11	소로3-11	
소로	3	15	2.0	연결로	25	50	소로3-1	소로3-11	
소로	3	16	2.0	연결로	8	16	소로3-1	1-나	
소로	3	17	2.0	연결로	7	14	3-나	소로3-11	
소로	3	18	2.0	연결로	3	6	소로3-21	3-다	
소로	3	19	2.0	연결로	21	42	소로3-1	소로3-23	
소로	3	20	2.0	연결로	21	42	소로3-1	소로3-22	
소로	3	21	2.0	연결로	38	76	3-가	소로3-22	
소로	3	22	4.0	연결로	29	116	소로3-1	소로3-25	
소로	3	23	4.0	연결로	29	116	소로3-1	소로3-24	
소로	3	24	3.0~9.0	연결로	82	248	소로3-23	소로3-5	
소로	3	25	3.0~6.0	연결로	84	252	소로3-22	소로3-5	

3. 그 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 2023. 12.: 해미국제성지 기반 내포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 반영
(면적 77,000㎡)
- 2025. 6.: 글로벌 치유테마빌리지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완료
(면적 19,000㎡)
- 2026. 5. 2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및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 2026. 6. 9. ~ 6. 30.: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 2026. 7. ~ 8.: 시의회 의견청취
- 2026. 9.: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공원조성계획 심의
- 2026. 11.: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6. 12.: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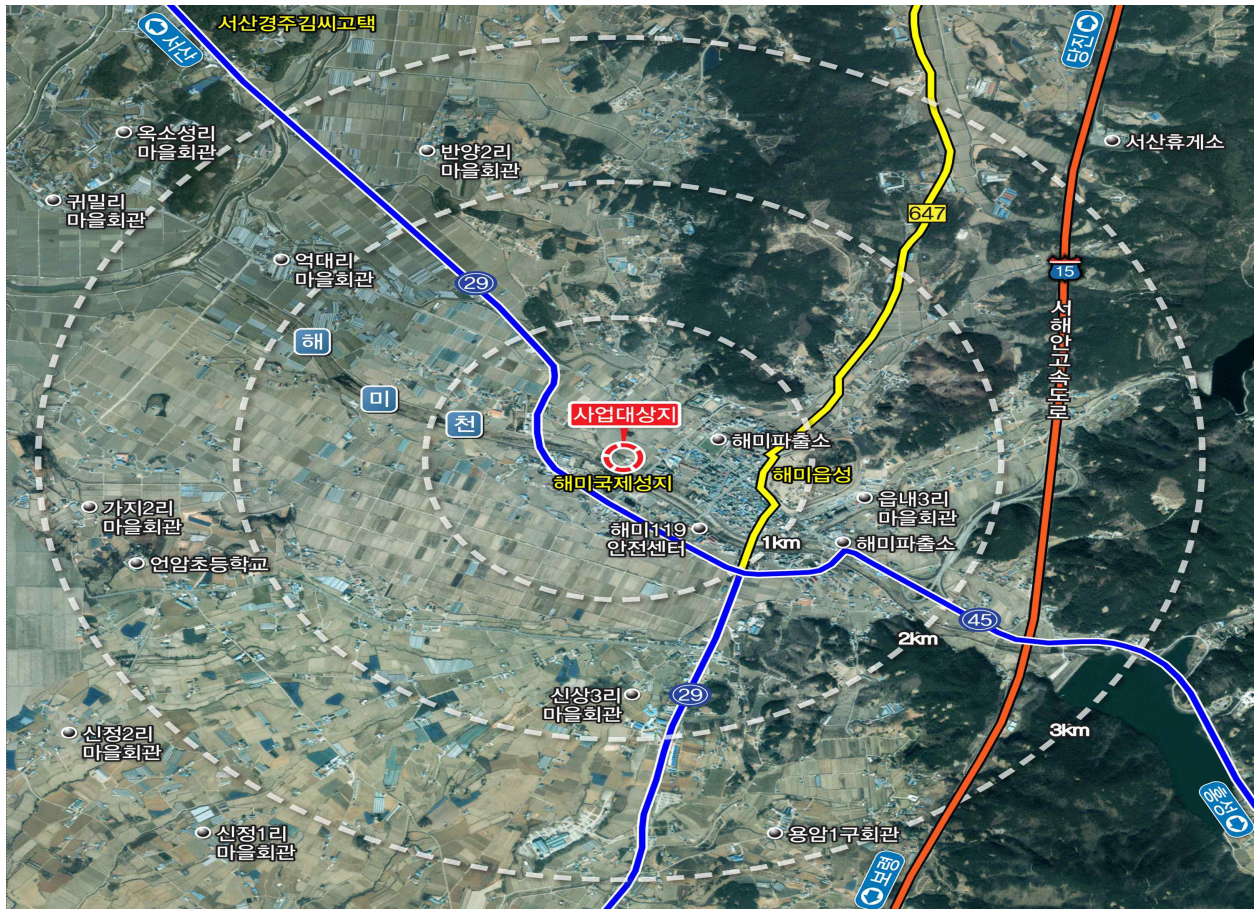
4. 주민의견 청취 주요사항

- 주민의견청취 방법: 서산시 공고 제2026-1680호, 서산시 공보 872호
- 공 고 일: 2026. 6. 10.
- 열람기간: 2026. 6. 10. ~ 2026. 6. 30.
- 열람장소: 서산시청 도시과, 해미면 행정복지센터
- 의견제출: 제출의견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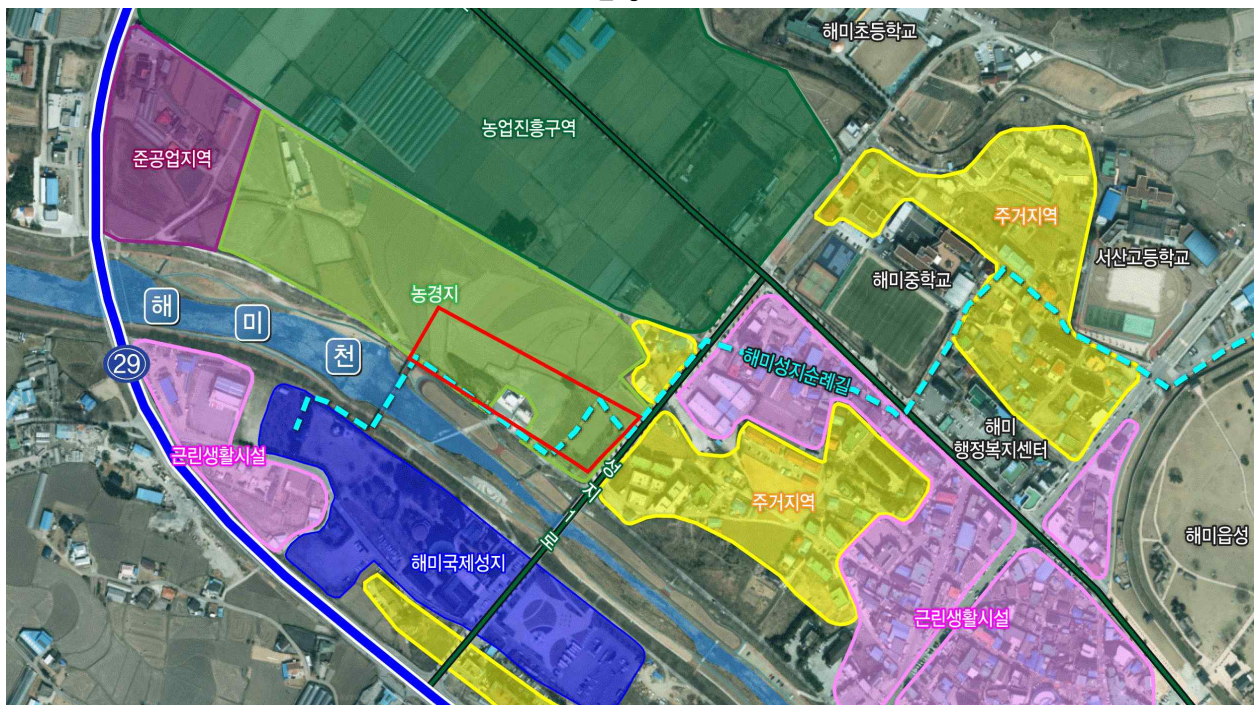
-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2.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도 1부.
 3. 토지이용계획(안) 1부.
 4. 공원조성계획(안) 1부.
 5. 관계법령 1부. 끝.

[붙임1] 위치도 및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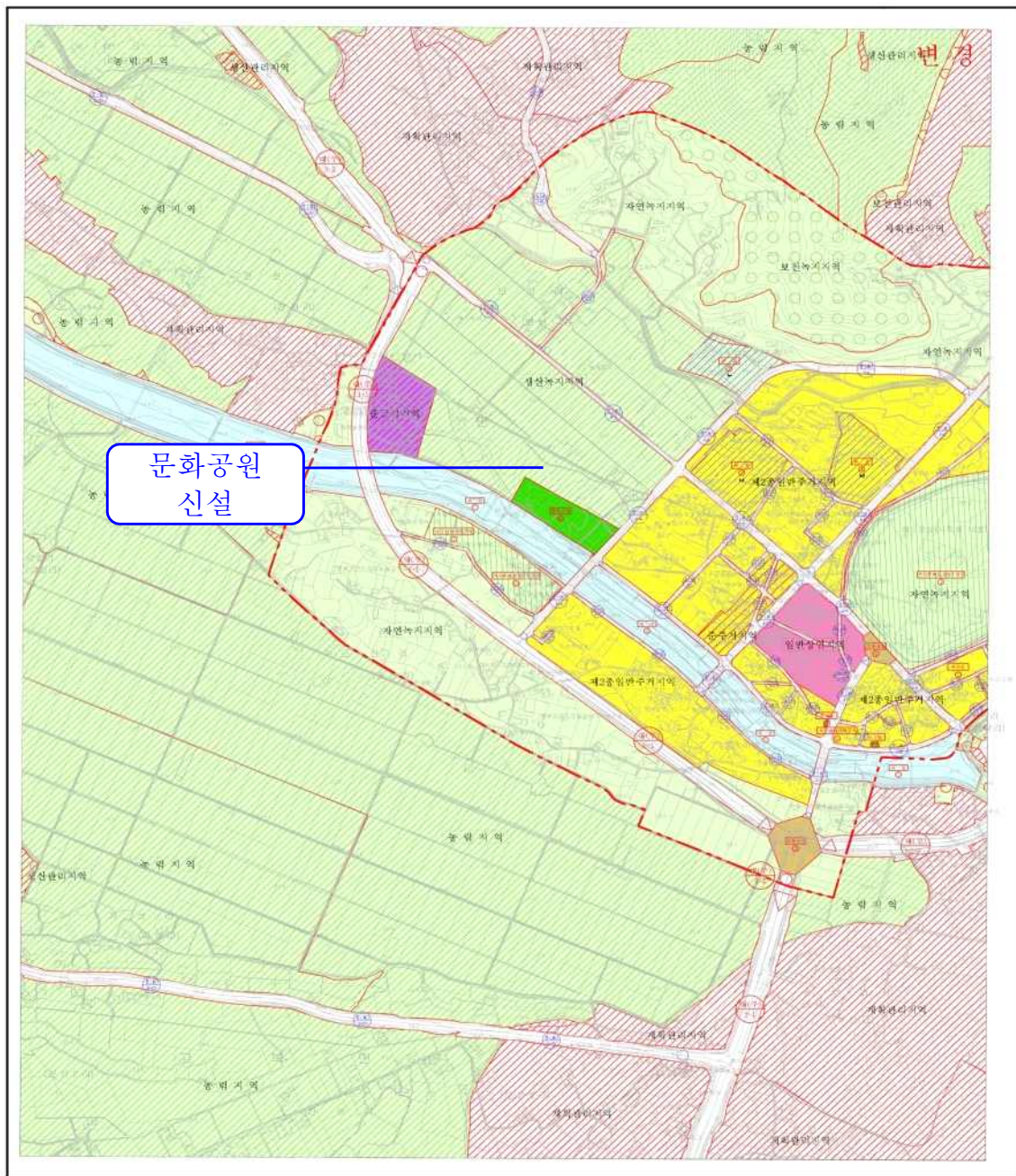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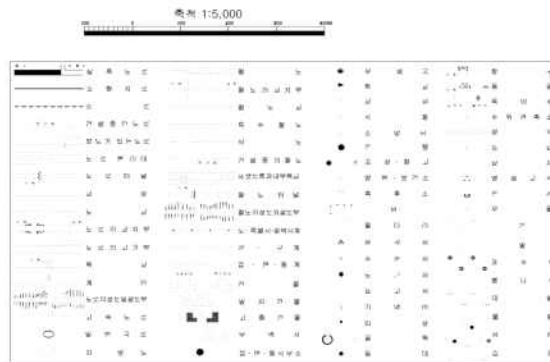
<현황도>



[붙임2]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도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선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대로이외)	도로(중로이외)
공원	공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하천	기타 도시계획시설



[붙임3] 토지이용계획(안)



[붙임4] 공원조성계획(안)



[붙임5]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3부터 제40조의5까지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

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 ①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마음을 **따뜻**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제3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026. 7. 30. (목)

제 4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 서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서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6. 7. 27.

산 업 건 설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6. 7. 16.

나. 발 의 자 : 서산시장(농업정책과)

다. 회부일자 : 2026. 7. 20.

라. 심사일자 : 2026. 7. 27.

2. 제안설명 요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을 체계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고자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2023. 3. 28일 제정하였음.
- 시군은 관련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함으로써 농촌을 삶터·일터·쉼터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경관 보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 내용

가. 개 요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 목표연도 2035년
-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서산시 일원(15개 읍면동)
- 내용적 범위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향후 10년에 대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의 내용 범위

구 분	내 용
기초조사 및 여건분석	인구, 사회, 경제적 특성, 생활서비스시설, 공동체, 토지이용 및 환경경관 관리 현황, 농촌환경관리시설 현황, 농촌위해시설 현황 조사 및 여건 분석
기본구상 및 공간구상	비전 및 목표 설정, 중심지/기초거점, 축 및 거점 권역 등 분석, 농촌공간구조 재편 등
농촌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및 전략	생활 및 기능 연계, 지역특성, 관련계획 등을 고려한 권역 지정, 비전 및 발전전략 설정
부문별 재생계획	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생활서비스 제공 및 공동체 육성, 농촌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 환경·경관 보존 및 관리, 위해시설 정비
농촌특화지구 운용계획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지구별 운영 및 관리방안, 우선 지정대상 결정, 농촌마을보호지구 사업계획 제안
사업추진체계	기초농촌공간 정책심의회, 농촌공간 기초지원기관, 행정전담조직 및 행정협의회, 주민참여단 및 관계자

나.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착수	2024. 12.
○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주민설명회 개최(읍면별)	2025. 02. ~ 2025. 03.
○ 주민참여단 구성 및 의견 수렴	2025. 05. ~ 2025. 08.
○ 충청남도 농촌공간계획 전문가 자문협의	2025. 11.
○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행정협의회 구성	2026. 02.
○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1차) 개최	2026. 03.
○ 농촌공간계획 행정협의회 실과 협의	2026. 03. ~ 2026. 04.
○ 농촌공간계획 전담전문가 자문	2026. 05.
○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2차) 개최	2026. 06.
○ 농식품부 전문가 통합컨설팅	2026. 07.
○ 서산시 의회 의견 청취	2026. 07.
○ 농촌공간계획 기본계획 주민공청회	2026. 08.
○ 농촌공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농식품부·충남도) 완료	2026. 09. ~ 2026. 12.

4. 검토의견 요지

- 본 의견제시의 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서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2026 ~ 2035년)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서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해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계획안은 서산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 난개발, 생활서비스 격차 등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북부와 남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간구조 재편,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농촌특화지구 운영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어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을 전반적으로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북부지역은 산업단지와 연계한 정주환경 개선 및 첨단산업·농업의 융합을, 남부지역은 스마트농업과 생태·문화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농촌 조성을 발전전략으로 구상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춘 차별화된 발전방향을 적절히 정립하였음.
- 본 기본계획은 향후 5개년 시행계획 수립 및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을 위한 필수 법정계획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등 중앙부처의 주요 농촌개발 사업과 연계한 국비 확보의 선행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수립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됨.
- 따라서 단순한 경관 개선이나 단발성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개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향후 수립될 실행계획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 및 소수 의견

『없 음』

7. 심사결과

『찬성의견 채택』

의 안 번 호	제 24 호
의결연월일	

**서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7. 16.

서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안 번호	제 24 호
----------	--------

제출연월일 : 2026. 7. 16.

제출자 : 서산시장

1. 제안이유

- 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을 체계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고자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2023. 3. 28일 제정하였음
- 나. 시군은 관련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함으로써 농촌을 삶터·일터·쉼터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경관 보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 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의견 청취 사항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시 의회 의견 청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향후 10년에 대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2. 계획의 개요

- 가.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 목표년도 2035년
- 나.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서산시 일원(15개 읍면동)

다. 기본계획의 내용 범위

구 분	내 용
기초조사 및 여건분석	인구, 사회, 경제적 특성, 생활서비스시설, 공동체, 토지이용 및 환경경관 관리 현황, 농촌환경관리시설 현황, 농촌위해시설 현황 조사 및 여건 분석
기본구상 및 공간구상	비전 및 목표 설정, 중심지/기초거점, 축 및 거점 권역 등 분석, 농촌공간구조 재편 등
농촌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및 전략	생활 및 기능 연계, 지역특성, 관련계획 등을 고려한 권역 지정, 비전 및 발전전략 설정
부문별 재생계획	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생활서비스 제공 및 공동체 육성, 농촌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 환경·경관 보존 및 관리, 위해시설 정비
농촌특화지구 운용계획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지구별 운영 및 관리방안, 우선 지정대상 결정, 농촌마을보호지구 사업계획 제안
사업추진체계	기초농촌공간 정책심의회, 농촌공간 기초지원기관, 행정전담조직 및 행정협의회, 주민참여단 및 관계자

3. 그동안 추진사항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착수	2024. 12.
○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주민설명회 개최(읍면별)	2025. 02. ~ 2025. 03.
○ 주민참여단 구성 및 의견 수렴	2025. 05. ~ 2025. 08.
○ 충남도 농촌공간계획 전문가 자문협의	2025. 11.
○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행정협의회 구성	2026. 02.
○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1차) 개최	2026. 03.
○ 농촌공간계획 행정협의회 실과 협의	2026. 03. ~ 2026. 04.

○ 농촌공간계획 전담전문가 자문	2026. 05.
○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2차) 개최	2026. 06.
○ 농식품부 전문가 통합컨설팅	2026. 07.
○ 서산시 의회 의견 청취	2026. 07.

※ 향후 계획

- 2026. 08. : 농촌공간계획 기본계획 주민공청회
 - 2026. 09. :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3차) 심의
 - 2026. 09. ~ 2026. 12. : 농촌공간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농식품부충남도)
- 완료

4. 서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주요내용 : 붙임 1

5. 참고사항

- 가. 관련법 발췌 : 붙임 2

[붙임 1]

서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I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도입 배경

1 농촌공간계획의 배경

- 농촌 삶의 질 개선 및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투자 추진
- 난개발 및 농촌소멸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역부족
-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지속가능성 요구
- 농촌공간계획의 필요성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제정(2023. 3. 28.)

난개발, 농촌소멸 등에 대응하여 농촌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마련

2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개요

- (계획체계) 국가 기본방침(10년 단위), 시·군 기본계획(10년) 및 시행계획(5년) 구성
 - 정부는 기본방향만 제시, 지자체가 주민과 함께 상향식 수립
- (계획내용) 농촌특화지구 등을 활용하여 주거·정주 여건 개선, 경제·일자리 활성화, 경관·환경 보전 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농촌특화지구 :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특성화농업지구 등
- (통합지원) 시·군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지자체 간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사업 통합 지원(5년간 최대 400억 원)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 (성격)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향해야 할 농촌공간의 모습과 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전략계획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 (수립권자 및 범위)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청이 관할 구역에 대해 10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시 정비
- 시·도는 시·군 계획의 방향을 조정하고 심의기준을 관리하는 역할 등 수행
- (주요 내용)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되, 시·군 여건을 고려하여 항목 간 통합 등 탄력적으로 수립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II

서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1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대산산업단지와 테크노벨리 등 다양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서산시는 급격한 인구성장과 경제성장을 이루는 반면, 농경지 축소와 토양 및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과 계획관리지역 내 개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 등 난개발 문제가 발생함
 - 서산시 농업지역은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에 해당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취약함
 - * 2024년 서산시 남부 면지역 인구소멸지수 0.2 미만(고위험지역)
- 서산시에는 가로림만과 천수만을 비롯하여 가야산, 팔봉산, 간척지 농업지대 등 우수한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하여 농촌다움 회복과 지역 자원과의 융복합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가 요구됨
-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특성에 따른 정주환경 격차 발생
 - 북부지역은 다수의 산업단지로 인해 인구와 경제, 서비스시설이 집중되어 정주환경이 양호한 반면, 남부지역은 농업 위주 산업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서비스 여건이 부족함
- 농촌 정주체계 재편과 기능별 공간관리,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육성 등을 통한 체계적인 농촌공간계획이 필요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2) 기대효과

- 농촌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과 난개발 방지

- 서산시 농촌공간의 계획적 이용·보전·관리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난개발을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환경 구축
- 농촌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유희시설 및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고령층 및 귀농귀촌인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성 향상
- 사회서비스 확충
 - 교육, 의료, 문화 등 사회서비스 시설 및 접근성 강화로 주민 생활 복지 향상

2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6 ~ 2035년 (10년)
- 공간적 범위
 - 서산시 일원 742.3km² (1읍 9면 5동)
- 내용적 범위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향후 10년에 대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



3 비전 및 목표

(1) 비전

자연과 스마트기술, 사람이 어우러진 미래 농촌, 서산

- 서산의 풍부한 자연·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농업농촌·생활환경을 구축하며, 주민과 다양한 인구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든다는 의미

자연

지속가능한농촌의 기반이자
서산농촌의 정체성 의미

스마트기술

농촌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혁신의 수단 의미

사람

농촌공간을 유지·발전시키는 주체이자
농촌재생의 중심가치를 의미

(2) 목표

- 목표 1.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농촌 정주·생활환경(삶터) 조성
 - 누구나 어디서나 농촌다움을 누리며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생활 기반 조성
 - 생활서비스시설의 확충과 기능 개선, ICT 기반 원격서비스 연계
- 목표 2. 혁신기술 및 융복합산업 기반 농업농촌 경쟁력(일터) 향상
 - 혁신기술 및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농축산업 확산으로 미래형 농촌 경제 육성
 - 선도 농가 육성, 특산물 기반 농촌 융복합산업 확산 등을 통해 농업 부가가치 향상
- 목표 3. 환경생태 자원의 가치 제고와 환경친화적 농촌(쉼터) 실현
 - 주민참여 중심의 보전과 개발을 추진하여 국민이 언제든지 머물 수 있는 쉼터 마련
 - 생태환경 자원 활용, 농업유산 발굴·보전, 주민주도형 마을경관 보전, 생태·역사문화 경관자원의 관광화 등으로 가치와 매력 향상

(3) 추진전략 및 과제

- 지속가능한 거점마을을 만들기 위해 정주·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서비스 거점을 육성하며, 빈집·유희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활용하고 서산형 주거문화 조성
- 농촌 생활서비스를 거점-배후마을 단위로 복합화·고도화하고, ICT 기반 생애주기 맞춤 서비스를 확충하며, 주민 주도의 서비스 공동체 육성
- 스마트농업 도입과 지역 자원을 연계한 융복합 산업화를 통해 농촌경제의 자립성과 성장 기반을 확립하고, 주민 주도의 로컬순환 경제 구축
- 자연·경관·농업 자원의 보전과 주민·공동체 주도의 마을경관 개선, 탄소중립·친환경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공간으로 재구조화

[목표·전략 및 과제]

GOALS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농촌
정주 생활환경(삶터) 조성

혁신기술 및 융복합산업 기반
농업농촌 경쟁력(일터) 향상

환경생태 자원의 가치 제고와
환경친화적 농촌(쉼터) 실현

STRATEGY

농촌주거정주 여건 개선
쾌적하고 자립적인 주거환경 조성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확충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농촌생활서비스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농촌 거점마을 조성

생활SOC 복합화 및 거점-배후마을 연계 강화

빈집유희시설의 창의적 재활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의료 서비스

주거안전망 강화 및 마을환경 관리

주민 주도 서비스 공동체 및 자립 기반 육성

농촌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
스마트 기술을 통한 새로운 농촌경제 육성

농촌 환경·경관의 보전 및 관리
농촌다운 환경경관 조성

스마트 기반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

서산다움 보전을 위한 경관 관리 정립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및 브랜드 고도화

탄소중립 및 친환경 농촌 에너지 체계 구축

농촌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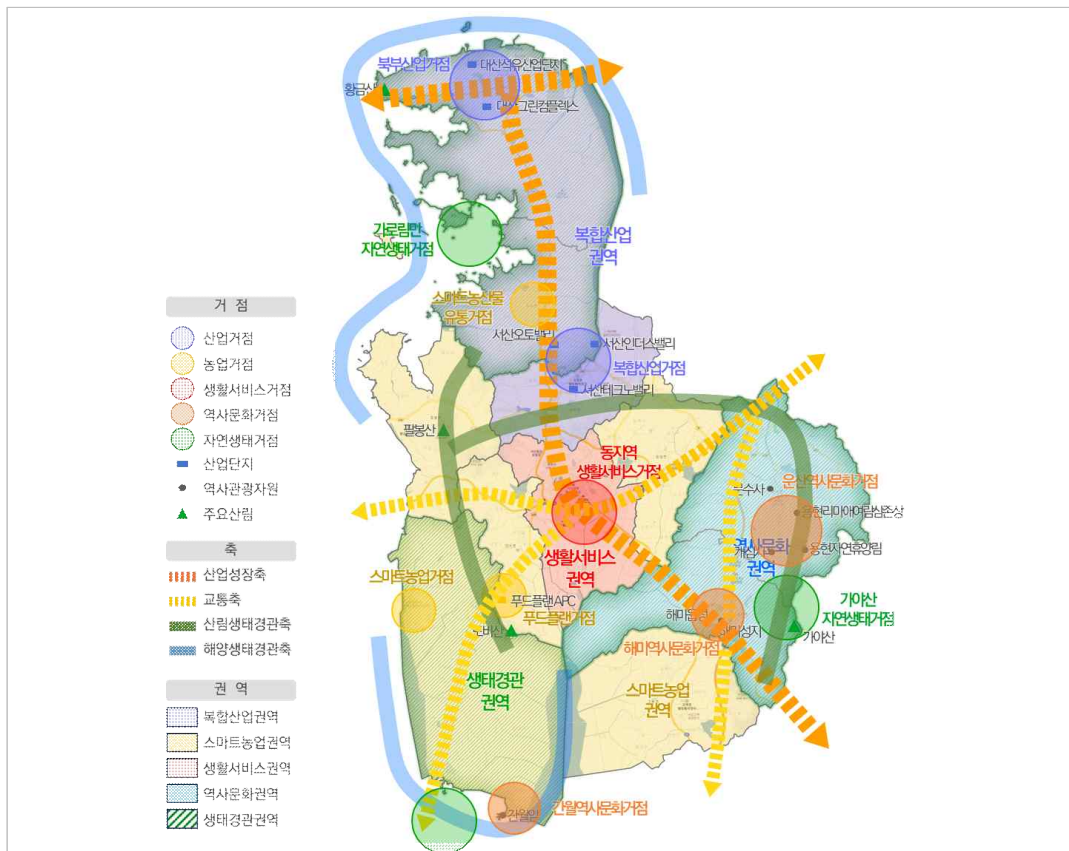
재해 대응 및 쾌적한 농촌 환경 유지

4 공간 구상

(1) 공간구조 : 기능별 거점, 축, 권역

- 자연현황과 산업 및 경제 특성을 고려하여 5개 거점과 3개 축, 5개 권역 형성함
- 동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업 및 첨단산업 관련 거점과 권역의 북부지역과 농업 및 문화관광 관련 거점과 권역의 남부지역으로 차별적인 특성을 보임

[서산시 기능 거점·축·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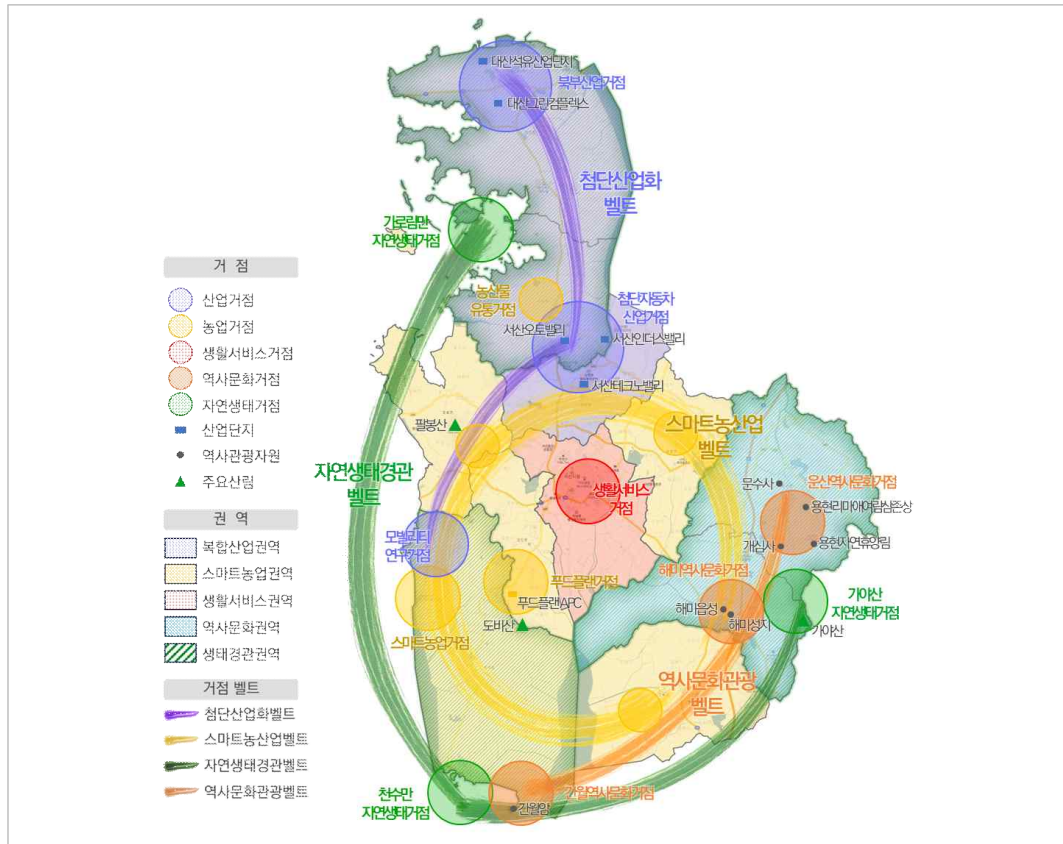


(2) 공간구조의 재편

- 산업거점의 전환과 강화 : 첨단산업화 벨트
 - 북부산업거점과 첨단산업거점, 모빌리티연구거점 등을 연계하여 첨단 산업화 벨트로 구축함으로써 공동 물류 및 유통을 추진하고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연계협력을 추진함

- 스마트 농업 및 유통의 육성과 농촌다움의 보존 : 스마트농산업 벨트
 - 남부지역에서 활발한 농업거점과 스마트농업거점, 농산물유통거점 등을 연계하여 스마트농산업 벨트를 구축함으로써 서산시의 지속가능한 농산업 여건을 마련함
 - 역사문화거점과 자연생태거점 등과의 연계를 통해 생활인구 확대와 6차산업화 활성화를 도모함
 - 농촌마을보호지구와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농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친환경농업과 휴양, 힐링(치유)의 가치를 제고함
- 역사문화거점과 관광거점의 강화와 연계 : 역사문화관광 벨트
 - 운산/해미/간월 역사문화거점 등 역사문화관광 거점을 연계함으로써 역사문화관광 벨트를 구축함
- 자연생태자원 및 경관자원 거점의 지속가능한 육성 : 자연생태경관 벨트
 - 해양생태자원과 산림생태자원 등 수려한 생태자원 거점을 연계하여 자연생태경관벨트로 공간과 기능을 재편함으로써 서산시

[서산시 거점 및 공간구조의 재편]



(3)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이란

-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고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본계획에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함

○ 서산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 자연환경, 행정구역, 인구구조, 산업구조, 토지이용, 중심지 체계 등 여건을 고려하여 서산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북부와 남부로 구분함

- 북부지역은 주요 산업단지와 안정적인 인구 규모와 더불어, 높은 개발 압력과 난개발, 도로정체 등 사회적 비용 발생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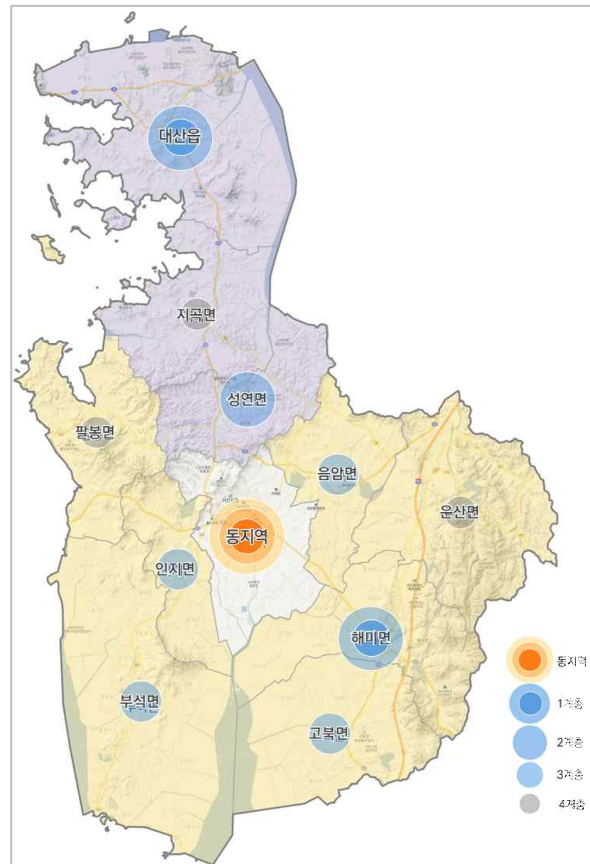
→ 중심지체계의 변화에 따른 미래 공간 계획, 산업구조 변화 및 농업 연계, 난개발 방지, 경제효과의 전달을 위한 전략 및 계획 필요

- 남부지역은 농업과 문화관광업이 활발한 가운데, 인구소멸 및 농업 지속성 저하, 대부분의 관광이 방문형 관광이라는 한계가 명확한 지역

→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스마트 농축산업과 생태경관, 역사문화, 농업을 연계한 체험 및 치유관광 등 체류형 관광 확대 전략 및 계획 필요

→ 하위거점 및 배후마을 원격서비스와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전략 및 계획 필요

[서산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구분]



(4) 농촌재생활성화지역별 발전전략

□ 북부 농촌재생활성화지역

○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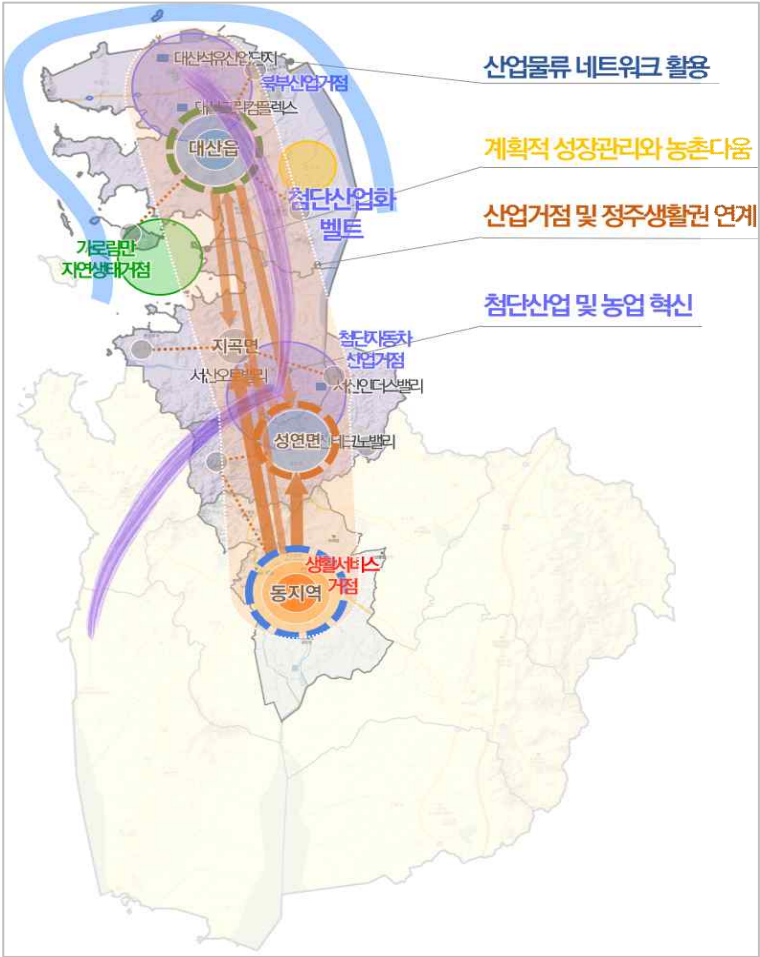
첨단산업과 농촌이 공존하는 미래형 정주·산업 혁신거점 조성

- 북부지역은 산업단지의 성장과 농촌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구조를 구축하고, 산업발전의 효과가 북부 농촌지역 및 남부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주환경과 생활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첨단산업과 스마트농업이 융합된 미래형 농촌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발전 전략 및 계획

- 산업성장과 연계된 정주·생활권 구축
 - ➔ 산업단지와 농촌지역이 상생할수 있는 정주기반을 조성
- 산업과 농촌이 융합하는 혁신경제권 조성
 - ➔ 산업단지와 농업, 창업, 유통 기능을 연계하여 지역 내 경제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농촌지역이 산업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
- 산업·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한 광역 성장축 형성
 - ➔ 산업·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서해안권 첨단산업 및 물류거점으로 육성
- 계획적 성장관리와 농촌환경 보전
 - ➔ 농지 훼손과 난개발, 농촌경관 저하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성장과 보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촌공간을 관리함

[북부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발전구상]

☐ 남부 농촌재생활성화지역

○ 목표

스마트농업과 역사·생태자원이 어우러진 체류형 농촌재생 선도지역 조성

- 현재 추진 중인 남부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과 계획 중인 서산공항

건설, 부석면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을 연계하여 농업·관광·생태가 융합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함

○ 발전 전략 및 계획

- 스마트농업 중심의 미래 농업 혁신 추진

➔ 기존 생산 중심 농업체계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ICT 기반의 스마트농업 체계로의 전환

- 중심지 체계에 근거한 농촌생활서비스 거점체계 구축

➔ 거점을 중심으로 생활서비스 기능을 집적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하는 효율적인 서비스체계를 구축

- 역사문화·생태관광 중심의 체류형 관광권 조성

➔ 역사문화관광벨트와 자연생태경관벨트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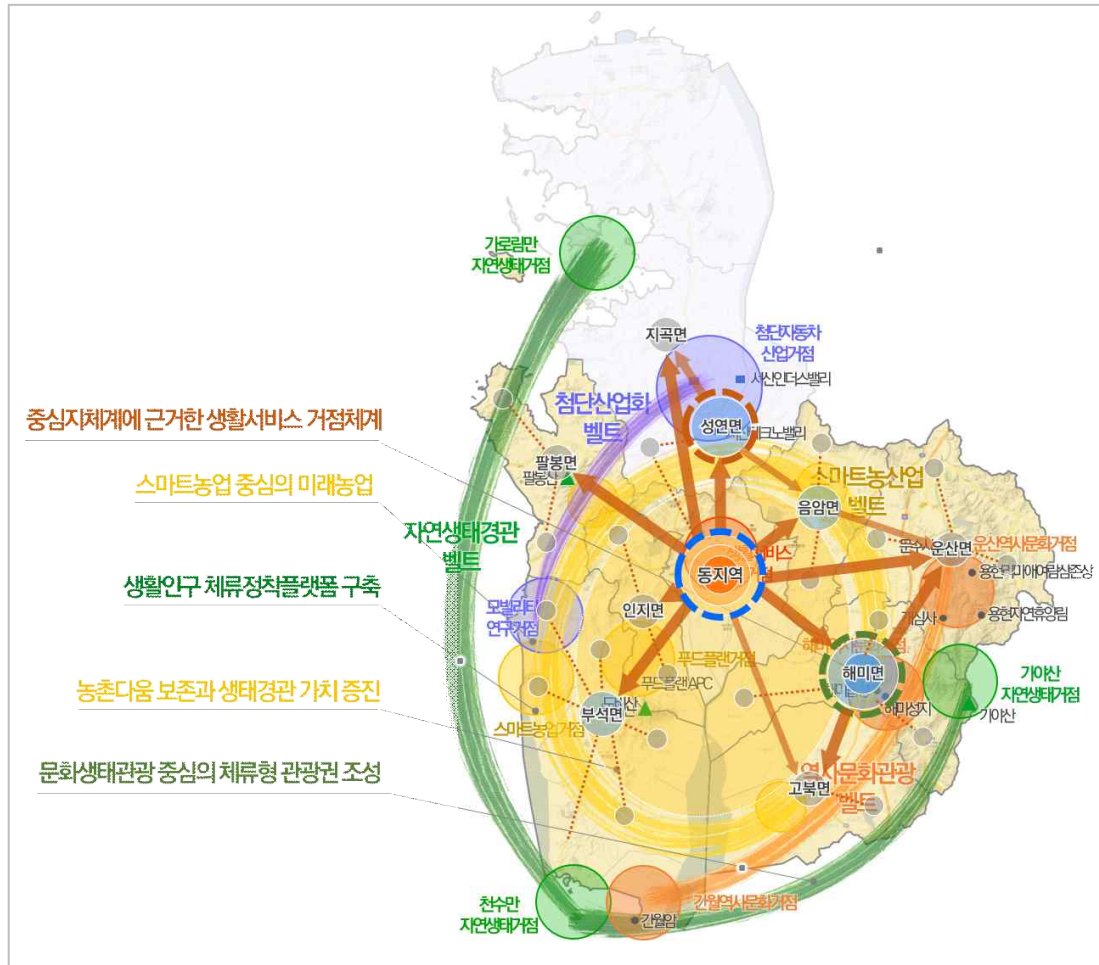
- 생활인구와 귀농귀촌인을 위한 체류·정착 플랫폼 구축

➔ 빈집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체류거점과 귀농귀촌 정착공간을 조성

- 농촌다움 보전과 생태·경관 가치 증진

➔ 농촌마을보호지구 주민협정과 마을 경관협정 등 주민참여형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농촌다움 도모

[남부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발전구상]



5 부분 계획

(1) 부분별 과제 및 세부과제 총괄표

부문	추진과제	세부과제	비고(핵심내용)
부문1. 쾌적하고 자립적인 주거환경 조성	① 지속가능한 농촌 거점마을 조성	1. 테마형 특화주거단지 조성	산단배후 공유주거 공급
		2. 농촌마을 기초인프라 구축	상하수도, 재해대응 정비
		3. 농촌마을의 계획적 공간관리(농촌마을보호지구)	보호지구 경관관리 강화
	② 빈집유류시설의 창의적 재활용	1. 빈집은행 고도화 및 귀농귀촌 연계 자원관리	빈집DB·매칭플랫폼 구축
		2. 유류시설 활용 체류형 주거공간 조성	위케이션·체류주거 조성
		3. 마을 커뮤니티 활동공간 조성	유류시설 복합거점화
	③ 주거안전망 강화 및 마을환경 관리	1. 노후주택 종합 개선 및 긴급 주거안전 지원	슬레이트 철거·집수리
		2. 고령가구 주거안전 관리 및 공동생활 주거모델 도입	공동생활공동체 통합돌봄
부문2.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농촌 생활서비스 체계 구축	① 생활SOC 복합화 및 거점-배후마을 연계 강화	1. 쇠퇴지역 생활서비스 복합거점 조성	복지 문화 돌봄 복합화
		2. 모빌리티 혁신으로 이동권 보장	DRT 행복택시 확대
		3. 디지털 인프라 및 스마트 서비스 보급	시민원·스마트방송 구축
	②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의료 서비스	1. 세대통합형 체육 문화여가 서비스 강화	체육 여가시설 확충
		2. 고령 취약계층 통합돌봄 및 스마트 건강관리	시돌봄·원격진료 지원
	③ 주민 주도 서비스 공동체 및 자립 기반 육성	1. 주민 주도 서비스 공동체 조직 육성 및 자립 지원	협동조합 마을법인 육성
		2.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마을기업·공유주방 운영
		3. 귀농귀촌 정착 및 농촌 융합 프로그램 운영	정착지원·살아보기 운영
부문3. 스마트 기술을 통한 농촌경제 육성	① 스마트 기반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	1. 과학영농 관리체계 및 기후대응 기반 확충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2. 지역 특화작물 품종 개발 및 발농업 기계화 기반 확충	특화작물 기계화 확대
		3. 청년·귀농인 스마트팜 창업 및 정착 기반 조성	스마트팜 창업 지원
	②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및 브랜드 고도화	1. 서산 농특산물 6차산업화 및 로컬푸드 유통체계 구축	6차산업 로컬푸드 육성
		2. 농촌 체험관광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체험·체류관광 확대
		3. 해양갯벌 자원 연계 블루경제 생태계 조성	갯벌관광 블루산업 육성
	③ 농촌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1. 산업단지 연계 농촌 일자리 창출 거점 조성	산단연계 일자리 창출
		2. 농식품 스타트업 창업 지원 및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창업지원·청년창업 육성
		3. 노인 일자리 다양화 및 농촌 복지경제 연계	노인일자리 복지 연계
부문4. 농촌다음 환경·경관 조성	① 서산다음 보전을 위한 경관 관리 정립	1. 서산형 농업경관 발굴 및 경관농업지구 지정	경관농업지 조성
		2. 농촌경관 위해요소 정비 및 혐오시설 관리	경관저해요소 개선
		3. 농촌 농업유산 발굴 및 전통자원 보전	농촌유산 전통경관 보전
	② 탄소중립 및 친환경 농촌 에너지 체계 구축	1. 주민 주도 에너지 자립 및 햇빛소득 마을 확산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2. 태양광시설 공간관리계획 및 주민갈등 관리체계 마련	태양광 입지관리 강화
		3. 농촌 온열원 환경관리 강화 및 자원순환 체계	저탄소 농촌 전환
	③ 재해 대응 및 쾌적한 농촌 환경 유지	1. 기후위기 대응 재해 예방 및 방재 플랫폼 운영	스마트 방재체계 구축
		2. 지역 단위 하천 통합 관리	악취·환경오염 저감
		3. 산업 인접 농촌 대기·수질 정밀 관리 및 주민 건강 보호	환경모니터링 강화

(2) [부문1] 쾌적하고 자립적인 주거환경 조성

○ 기본방향

- 대산·지곡 산업단지의 젊은 근로 인력을 농촌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직주근접’ 과 ‘라이프스타일’ 이 결합된 산업단지 상생형 정주모델 구축함
- 귀농귀촌인, 소형가족,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이 공존할 수 있도록 공공 임대 및 세대 혼합형 주택 등 수요 맞춤형 주거 복지 실현하고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함
-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관점에서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무장애(BF) 수선 지원과 통합 돌봄이 결합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함

○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추진과제	세부과제 및 주요내용
① 지속가능한 농촌 거점마을 조성	1. 테마형 특화주거단지 조성 - 산단 배후 공유스테이 공급 및 분산된 노후 주택의 전략 거점 집약화 추진
	2. 농촌마을 기초인프라 구축 - 상·하수도 선제 구축 및 관리 주체 통합 협력체계 가동
	3. 농촌마을의 계획적 공간관리(농촌마을보호지구) - 운산 한우목장길, 해미 별마을 등 주요 자산 인근농촌마을 보호지구 지정
② 빈집유휴 시설의 창의적 재활용	1. 빈집은행 고도화 및 귀농귀촌 연계 자원관리 - 빈집 DB(483동) 기반 디지털 매칭 플랫폼 운영 및 정비 체계화
	2. 유휴시설 활용 체류형 주거공간 조성 - 위케이션 및 귀농귀촌 살아보기 프로그램 고도화, 체류 주거 공간 조성
	3. 마을 커뮤니티 활동공간 조성 - 기존 커뮤니티센터 기능 재편 및 유휴시설의 도농교류 공간 전환
③ 주거안전망 강화 및 마을환경 관리	1. 노후주택 종합 개선 및 긴급 주거안전 지원 - 소외지역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및 사각지대 가구 긴급 수리비 지원
	2. 고령가구 주거안전 관리 및 공동생활 주거모델 도입 - 마을주택관리소(방문수선), 공동생활홈 조성 및 통합 돌봄 거점 구축
	- 세대 통합형 주거모델 통해 세대 간 교류와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

(3) [부문2]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농촌생활서비스 체계 구축

○ 기본방향

- 분산된 서비스 기능을 하나의 거점으로 통합 및 복합화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제공하는 등 서비스 기능 및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함
- 중심지체계에 근거한 중심지 및 기초거점 서비스 기능 육성 및 강화와 더불어 AI, 드론, 스마트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원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촌의 물리적 거리 제약을 극복하고 주민 서비스 격차를 해소함
- 지역 주민(공동체)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주민 주도 서비스 공동체의 육성과 지속가능한 농촌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함

○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추진과제	세부과제
① 생활SOC 복합화 및 거점-배후마을 연계 강화	1. 쇠퇴지역 생활서비스 복합거점 조성 - 부석·팔봉 거점 내 교육·돌봄·문화 기능 결합 및 보건지소 연계 운영 2. 모빌리티 혁신으로 이동권 보장 - 교통약자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행복버스/행복택시), 생필품·의약품 배달 3. 디지털 인프라 및 스마트 서비스 보급 - 스마트 마을방송 고도화, AI 민원 플랫폼 등 스마트 시스템 구축
②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의료 서비스	1. 세대통합형 체육·문화·여가 서비스 강화 - 유희 및 미이용시설을 주민 수요를 반영한 기능으로 활용 2. 고령·취약계층 통합돌봄 및 스마트 건강관리 - AI 반려로봇, 원격·방문형 진료, 드론 활용 물류·의약품 배송 등
③ 주민 주도 서비스 공동체 및 자립 기반 육성	1. 주민 주도 서비스 공동체 조직 육성 및 자립 지원 - 주민 서비스 사회적공동체(마을법인·협동조합 등) 설립 지원 및 육성 2.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 공유주방 기반 먹거리 생산 등 마을기업 성공사례 확산 3. 귀농귀촌 정착 및 농촌 융합 프로그램 운영 - 컨설팅·금융, 살아가기 프로그램 고도화 지원

(4) [부문3] 스마트 기술을 통한 새로운 농촌경제 육성

○ 기본방향

-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과 친환경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함
- 지역 특화자원과 관광·체험 기능을 연계한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청년농과 귀농귀촌인의 정착 및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와 소득 창출 기반을 확대함

○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추진과제	세부과제
① 스마트 기반 미래농업 경쟁력 강화	1. 과학영농 관리체계 및 기후대응 기반 확충 - 농업기상·토양·생육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기반 과학 영농 체계 구축 - 폭우·침수 대응 관개시설,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병해충 예찰체계 등 확충
	2. 지역 특화작물 품종 개발 및 밭농업 기계화 기반 확충 - 지역 특화작물 중심의 품종 개량과 시험재배 추진 - 밭농업 기계화 기반 마련으로 노동력 부족 대응 및 농업 생산성 제고
	3. 청년·귀농인 스마트팜 창업 및 정착 기반 조성 - 교육·멘토링 등 통해 청년농, 귀농의 정착 및 지역농업 혁신 생태계 조성
②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및 브랜드 고도화	1. 서산 농특산물 6차산업화 및 로컬푸드 유통체계 구축 - 지역 특산물 활용한 가공·체험·관광 연계형 6차산업 기반 구축 - 로컬푸드직매장, 공공급식, 온라인판로 등 확대 및 통합브랜드 경쟁력 강화
	2. 농촌 체험관광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 농촌경관·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콘텐츠와 팜스테이, 위케이션 등 체류형 관광 연계로 생활인구 및 지역소비 확대
	3. 해양갯벌 자원 연계 블루경제 생태계 조성 - 해양생태자원 활용 수산업, 체류관광을 연계한 지속가능 해양 융복합산업 조성
③ 농촌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1. 산업단지 연계 농촌 일자리 창출 거점 조성 - 산업단지 배후지역에 일자리 지원센터, 직업훈련시설 등을 구축하고, 청년·여성·고령층 맞춤형 고용을 위한 농촌형 일자리 생태계 조성
	2. 농식품 스타트업 창업 지원 및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 청년·귀농인 중심의 농특산물 기반 가공·유통·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육성
	3. 노인 일자리 다양화 및 농촌 복지경제 연계 - 고령층 대상 농촌환경관리, 로컬푸드 가공·판매, 복지연계형 일자리 확대

(5) [부문4] 농촌다운 환경·경관 조성

○ 기본방향

- 농촌다운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촌 고유의 경관을 보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경관관리를 추진함
- 주민 주도의 환경정비와 경관관리 활동을 확대하여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함

○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추진과제	세부과제
① 서산다운 보전을 위한 경관 관리 정립	1. 서산형 농업경관 발굴 및 경관농업지구 지정 - 서산 고유의 농업경관자원을 발굴하고, 농촌다운 회복 및 농촌관광 활성화
	2. 농촌경관 위해요소 정비 및 혐오시설 관리 - 악취·분진·소음 유발시설, 빈집 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정주환경 조성
	3. 농촌 농업유산 발굴 및 전통자원 보전 - 서산 고유의 농업유산을 발굴하고 체험·교육·관광과 연계한 활용체계 구축
② 탄소중립 및 친환경 농촌 에너지 체계 구축	1. 주민 주도 에너지 자립 및 햇빛소득 마을 확산 - 주민참여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마을기금 통해 지역순환경제 구축
	2. 태양광시설 공간관리계획 및 주민갈등 관리체계 마련 - 태양광 입지, 경관관리, 갈등관리, 협의체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상생형 수익공유모델 등 계획적 재생에너지 관리체계 정착
	3. 농촌 오염원 관리 강화 및 자원순환 체계 - 분뇨, 폐기물 등의 자원화 통해 탄소저감 및 자원순환형 농촌환경 조성
③ 재해 대응 및 쾌적한 농촌 환경 유지	1. 기후위기 대응 재해 예방 및 방재 플랫폼 운영 - 폭우·침수·폭염 등 기후위기 방재 인프라와 스마트 모니터링 체계 구축
	2. 지역 단위 하천 통합 관리 - 하천·소하천·농수로를 연계한 유역 중심 통합 하천관리 체계를 구축
	3. 산업 인접 농촌 대기·수질 정밀 관리 및 주민 건강 보호 - 산업단지 인접 지역 대상 대기·수질·악취 모니터링, 저감시설, 대응체계 구축

6 농촌특화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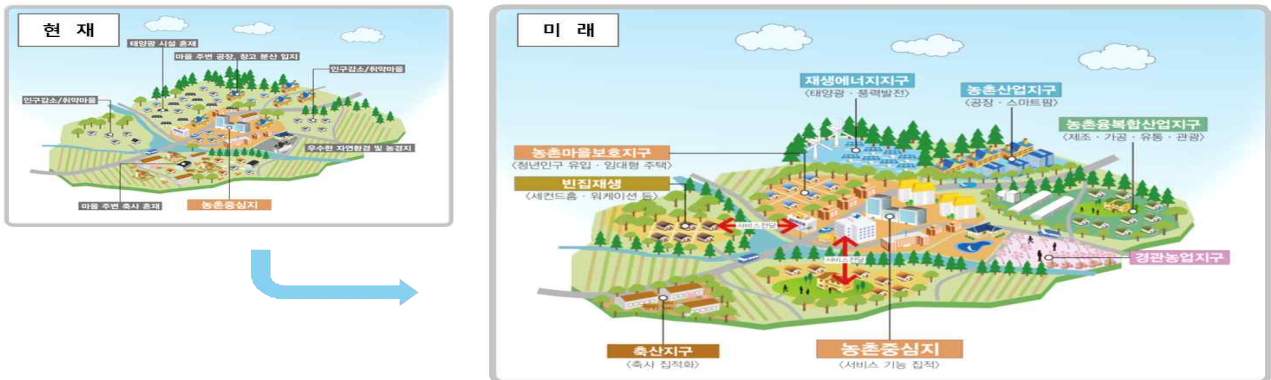
(1) 농촌특화지구 개요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촌특화지구란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의미함

[농촌특화지구의 종류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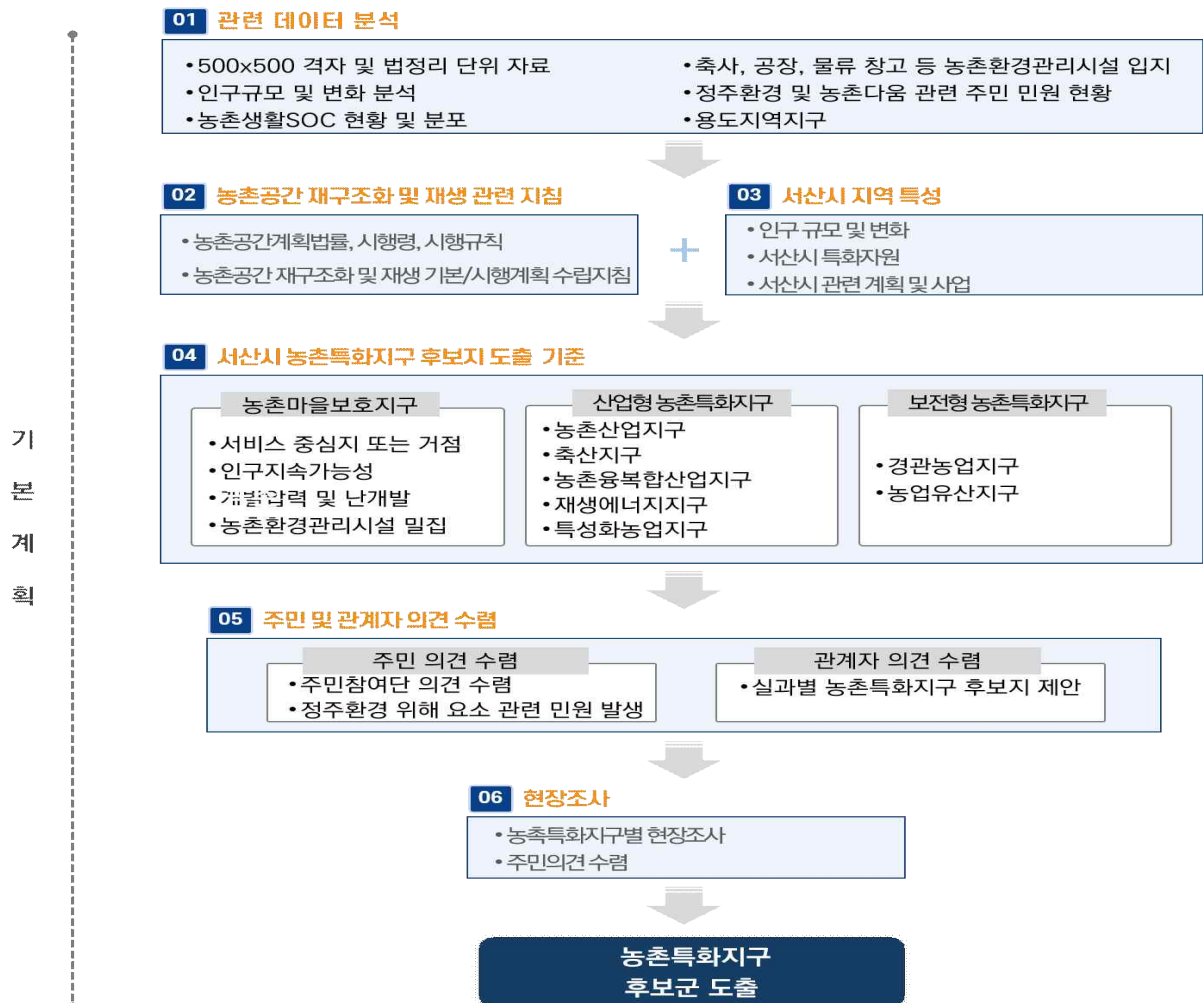
농촌특화지구	내 용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 주민 등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 서비스시설의 입지를 촉진하는 등 정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농촌산업지구	농촌지역 내 공장, 창고, 제조업소 등 산업시설의 이전·집적화를 유도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축산지구	가축사육 시설, 축산 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함으로써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생산·제조·가공시설 및 사무 공간 등 서비스시설을 집약할 필요가 있는 지구
재생에너지지구	에너지원의 환경친화적 전환 등 탄소중립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경관농업지구	동종·유사 작물의 집단화 등 경관 형성을 통하여 농촌관광자원 등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
농업유산지구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촌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거나 관리·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성화농업지구	농업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차별화된 재배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농산물(축산물 제외)을 집약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농지의 규모화·집단화를 조성·촉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활용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개념도]



(2) 농촌특화지구 후보지 도출 과정

- 농촌특화지구 후보지는 관련 법률 및 수립 지침과 서산시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법정리 단위의 개략적인 위치를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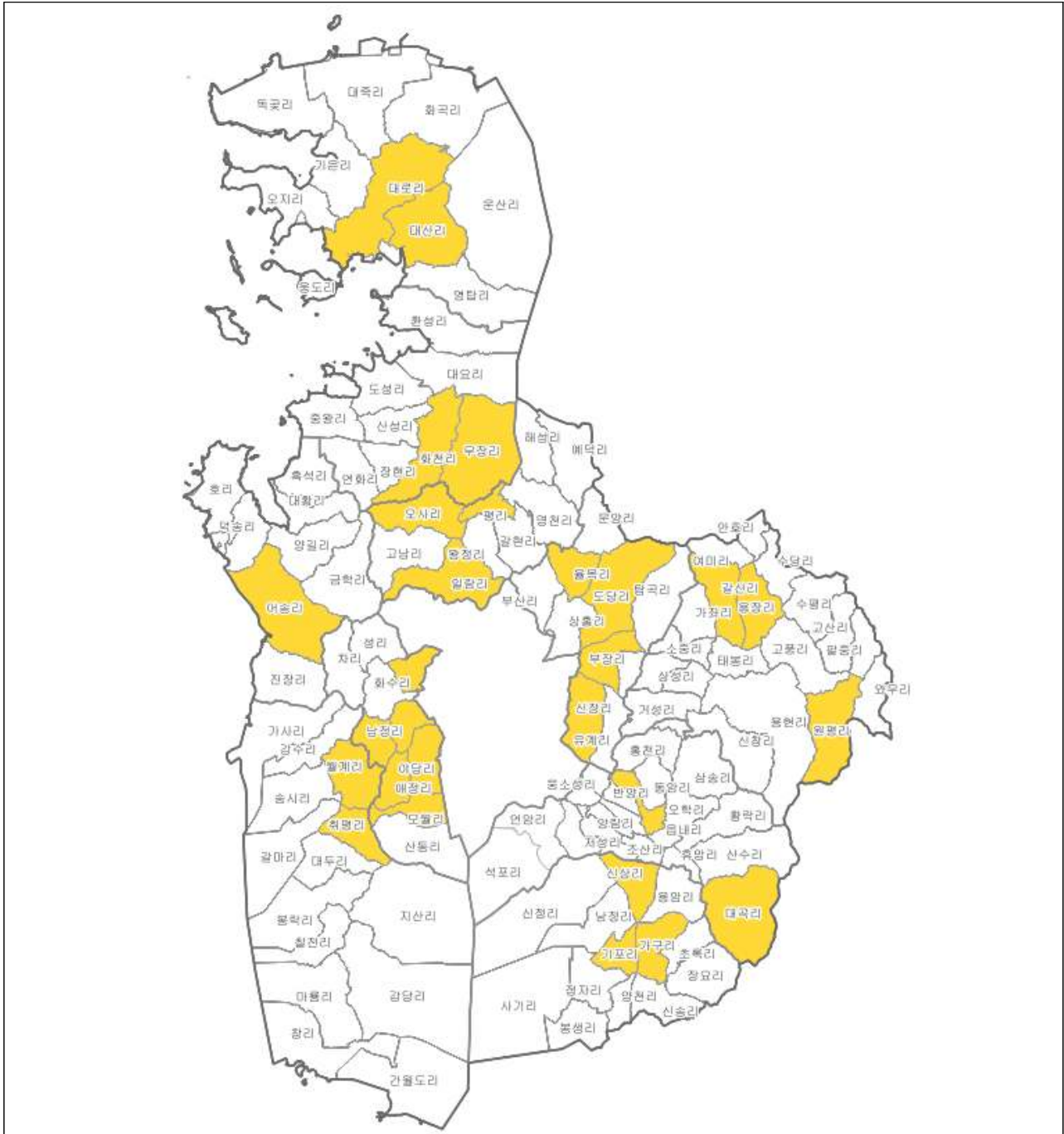


(3) 농촌특화지구 후보지 도출 결과

○ 농촌마을보호지구

- 농촌마을보호지구는 관련 지침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중심지 및 거점마을과 장래 정주지속성장마을, 보호필요마을 등 3가지 유형으로 총 28개 마을이 도출됨

[농촌마을보호지구 후보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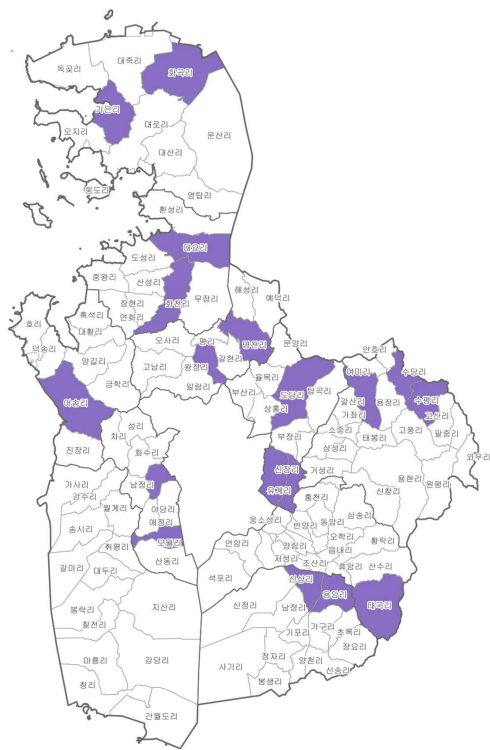
○ 농촌산업지구

- 개별 입지공장과 물류/제조 창고 등 산업 관련 시설이 밀집한 지역, 기존 산업/농공 단지주변에 입지하여 연계하는 마을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총 18개 행정리가 후보지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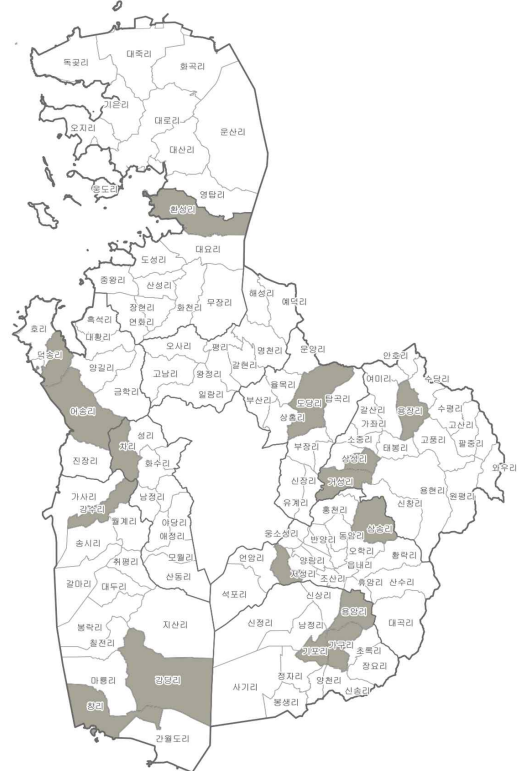
○ 축산지구

- 서산시는 주로 우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에 한하여 돈사와 계사가 입지하고 있으며,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또한 서산시의 용도지역과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토지용도지역을 살펴보면 추가로 축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없음.
- 이에 따라 서산시의 축산지구는 가축사육시설, 축산물가공시설 등이 이미 집적한 지역 중 시설현대화, 악취저감시설, 자원화시설을 도입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인접 마을의 정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함

[농촌산업지구 및 축산지구 후보지 분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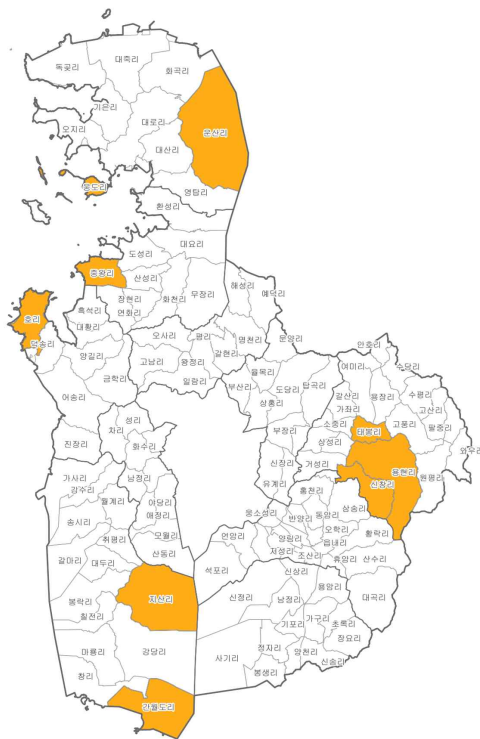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6차산업인증 기업,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농어촌민박 등 6차산업 관련 시설을 검토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서산시에서 계획/추진 중인 관련사업을 확인하여 총 9개 행정리를 농촌융복합산업지구 후보지를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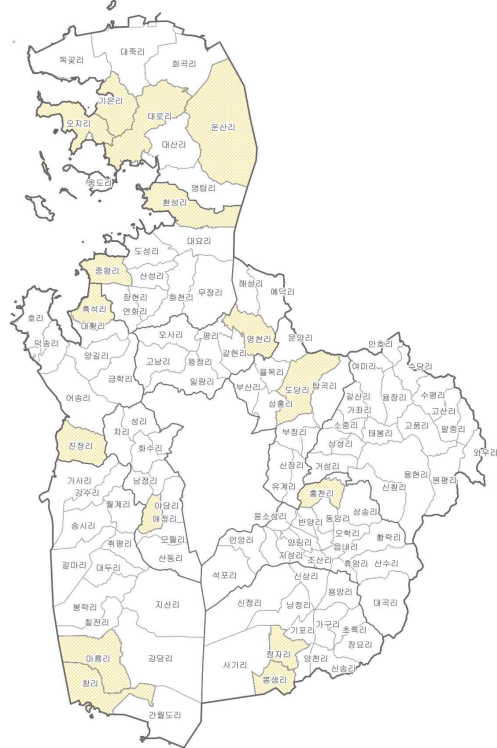
○ 재생에너지지구

- 기존 재생에너지시설인 집단화되어 있거나, 집단화가 필요한 지역을 도출하였으며,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농지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하여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재생에너지지구 후보지를 도출하였음.
- 또한 서산시의 재생에너지시설 관련 계획 및 사업을 고려하여 후보지를 도출하고자 함. 특히, 현재 마을발전소 사업으로 6개 마을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하여 농촌마을과 연계한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함
- 그 결과 총 16개 마을에 대하여 재생에너지지구 후보지로 도출함.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및 재생에너지지구 후보지 분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 경관농업지구

- 경관농업지구는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지역 중 일정 규모 이상 집단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현재 서산시에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대상지가 전무하며, 이는 향후에도 계획이 없음.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지역은 아니지만, 서산시만의 특색있는 농업경관을 발굴하여 서산형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하고자 후보지를 도출함
- 그 결과 총 7개 마을을 경관농업지구 후보로 도출함.

○ 농업유산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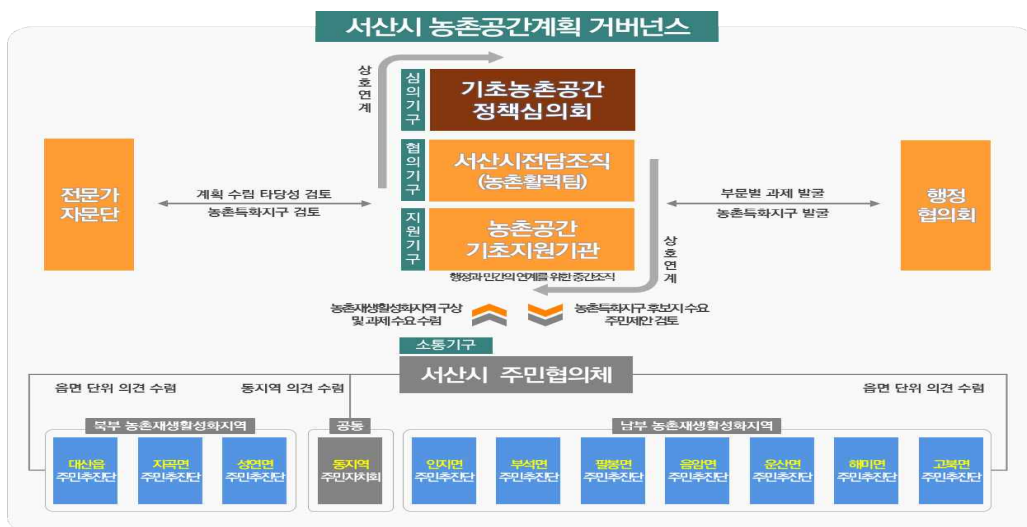
- 농업유산지구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이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과 그 인근 지역을 농업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나, 현재 서산 시에는 국내외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자원이 없음
- 따라서 서산시만의 경관·생태·문화적 가치 등 고려하여 서산시 농업 유산지구 후보지 지정하였음.

- 380 -

7 추진체계 및 운영계획

[서산시 거버넌스 운영 계획]

담당	업무내용	구성
기초농촌공간 정책심의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과제 및 사업계획, 농촌공간특화지구 등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역의 주요 계획에 대하여 심의함	위원장(부시장) 시의원(1명) 전문가(4명) 주민단체(4명) 행정(8명) 등 총18명
전담조직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총괄부서로서 기초심의회와 기초지원기관, 전문가 자문단, 행정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함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
농촌공간 기초지원기관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주민협정 체결 및 주민협의회 구성 지원, 주민제안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며, 행정과 민간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시적인 소통창구의 역할을 수행함	농촌활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각 읍면별 주민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과제 수요와 농촌특화지구와 관련한 수요를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함	읍면별 주민참여단



[붙임 2]

관련법 발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 ② 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 ③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의 목표
 2. 농촌지역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농촌다움의 유지·보전 등 농촌 미래상에 관한 사항
 4. 농촌특화지구 등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사항
 5. 농촌생활서비스시설의 확충과 농촌위해시설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
 6. 농촌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7. 농촌주민의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8. 교통·교육·문화·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공급에 관한 사항
 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농촌공간 구조, 농촌위해시설 현황,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배치, 농촌특화지구 지정, 토지 이용 현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2조에 따른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계획수립권자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농촌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2. 기본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 3. 인구분석에 관한 사항
 - 4.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관한 사항
 - 5.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6.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7. 농촌위해시설 현황과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
 - 8. 농촌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9.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현황과 배치에 관한 사항
 - 10. 농촌 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1. 농촌의 교통·교육·문화·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12. 농촌 환경 및 경관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계획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구조, 토지이용체계,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계획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계획수립권자는 기본계획과 제10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의회는 계획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이나 제10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승인)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자치시장이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이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제3항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방침의 수립·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이하 “기본방침기초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인구 및 가구 현황
 2. 농촌 주거 및 생활환경 현황
 3. 농촌 경제·산업 구조 현황
 4.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분포 및 이용·제공 현황
 5. 농촌 토지 이용 및 경관 보전·관리 현황
 6. 농촌의 난개발 요소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현황
 7. 그 밖에 기본방침을 수립·변경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본방침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및 기본방침기초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공간의 구조 및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할 것
 2. 농촌공간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할 것
 3. 농촌의 생활기능과 생산기능을 위한 토지의 조화로운 이용을 촉진할 것
 4. 농촌의 개발·이용·보전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
 5. 농촌 자원과 자연경관의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종합적 방안을 제시할 것
- ②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계획 기초조사”라 한다)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기본계획기초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수립권자가 해당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명칭 및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5. 그 밖에 계획수립권자가 기초조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기본계획기초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①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일간신문, 방송매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개최 목적
 2. 개최 일시 및 장소
 3. 공청회에서의 주요 논의 사항
 4. 그 밖에 공청회의 효율적 개최를 위하여 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계획수립권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제3항 각 호 또는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승인)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립 · 변경하려는 기본계획의 내용
2. 기본계획기초조사의 결과(기본계획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및 지방의회 의견
4.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대신하는 조직을 포함한다)의 심의 결과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 변경의 승인을 위하여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기본방침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④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의 승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안번호	제31호
의결(보고) 년월일	2026. 7. 30. (제314회 임시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안자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안년월일	2026. 7. 2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안 번호	제31호
----------	------

제안연월일 : 2026. 7. 27.

제안자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1. 감사목적

-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전 등의 심사, 그리고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모범적 사례는 더욱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시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행복과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
-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26. 9. 8.(화) ~ 9. 16.(수)<9일간>

4. 감사장소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5.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전문위원	사무보조직원
이정수	이국찬	김애란, 이경화, 이만, 조동식	신현식	주무관 윤희도 주무관 김소현

6. 감사실시 대상기관

-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 의한 당해 자치단체
 - 시 본청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 : 17개 부서
 - 서산시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 7개 부서

7. 일정별 감사부서 현황 및 감사방법[별첨]

8. 감사요령

감사선언 → 위원장 인사 → 시장인사 → 회의의 공개, 비공개 선언 → 증인선서 → 질의·답변 → 현지확인(필요 시) → 강평 → 감사종료 선언

-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횟수 제한 없이 1문 1답
- 제출된 자료(서류)를 검토·분석하여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도출하여 시정·개선 요구
- 증언, 의견진술, 참고인 진술 청취
-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게 하되,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주지

9. 기타 필요한 사항

- 서류제출, 현지 확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 그 사무와 관련되는 자의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별도 확정하여 의장을 경유 통보
- 현지 확인이 필요할 시 차량준비 및 관계자 현지 설명을 집행부에 요구
-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한 자료 제출 외에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 ※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변경시 해당부서 및 출석대상 공무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별첨]

일정별 감사부서 현황 및 감사방법

일 정 별	대 상 부 서	감 사 방 법	비 고
2026. 9. 8.(화) 10:00~	홍 보 담 당 관	○ 회의식 감사 ○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 필요시 현지확인 병행	○ 감사선언 ○ 위원장인사 ○ 증인선서 ○ 강 평 ○ 감사종료
	감 사 담 당 관		
	자 치 행 정 과		
2026. 9. 9.(수) 10:00~	평 생 교 육 과		
	사 회 복 지 과		
	가 족 지 원 과		
2026. 9. 10.(목) 10:00~	스 마 트 정 보 과		
	기 획 예 산 담 당 관		
	안 전 총 괄 과		
2026. 9. 11.(금) 10:00~	회 계 과		
	체 육 진 흥 과		
	경 로 장 애 인 과		
2026. 9. 12.(토) ~ 9. 13.(일)	문 화 예 술 과		
	세 정 과		
	징 수 과		
2026. 9. 14.(월) 10:00~	토 요 휴 무 일		
	및 공 휴 일		
	일 자 리 경 제 과		
2026. 9. 15.(화) 10:00~	보 건 정 책 과		
	정 신 보 건 위 생 과		
	건 강 증 진 과		
2026. 9. 16.(수) 10:00~	민 원 봉 사 과		
	감 염 병 관 리 과		
	중 합 사 회 복 지 관		
2026. 9. 17.(목) 10:00~	문 화 시 설 사 업 소		
	시 립 도 서 관		
	서 산 문 화 재 단		
2026. 9. 18.(금) 10:00~	부 춘 동		
	감 사 결 과 강 평		

※ 행정사무감사 계획(일정) 변경 시 출석대상 공무원 변경

※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변경시 해당부서 및 출석대상 공무원 변경

의안번호	제 31 호
의결(보고) 년 월 일	2026. 7. 30. (제314회 임시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안자	산업건설위원회
제안년월일	2026. 7. 2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안 번호	제 31 호
----------	--------

제안연월일 : 2026. 7. 29.

제안자 : 산업건설위원회

1. 감사목적

-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전 등의 심사, 그리고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모범적 사례는 더욱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시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행복과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26. 9. 8.(화) ~ 9. 16.(수)<9일간>

4. 감사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5.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전문위원	사무보조직원
강석환	송치윤	가충순, 기양순, 김기욱, 김혜림, 안원기	이희광	주무관 박태현 주무관 최은진

6. 감사실시 대상기관

-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 의한 당해 자치단체
 - 시 본청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 15개 부서
 - 서산시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 6개 부서

7. 일정별 감사부서 현황 및 감사방법[별첨]

8. 감사요령

감사선언 → 위원장 인사 → 시장인사 → 회의의 공개, 비공개 선언 → 증인선서 → 질의·답변 → 현지확인(필요 시) → 강평 → 감사종료 선언

-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횟수 제한 없이 1문 1답
- 제출된 자료(서류)를 검토·분석하여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도출하여 시정·개선 요구
- 증언, 의견진술, 참고인 진술 청취
-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게 하되,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주지

9. 기타 필요한 사항

- 서류제출, 현지 확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 그 사무와 관련되는 자의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별도 확정하여 의장을 경유 통보
- 현지 확인이 필요할 시 차량준비 및 관계자 현지 설명을 집행부에 요구
 -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한 자료 제출 외에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 ※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변경시 해당부서 및 출석대상 공무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별첨]

일정별 감사부서 현황 및 감사방법

일 정 별	대 상 부 서	감 사 방 법	비 고
2026. 9. 8.(화) 10:00~	미래전략담당관	○ 회의식 감사 ○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 필요시 현지확인 병행	○ 감사선언 ○ 위원장인사 ○ 증인선서 ○ 강 평 ○ 감사종료
	투자유치과		
	토지관리과		
	기후환경대기과		
2026. 9. 9.(수) 10:00~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상하수도과		
	도시과		
2026. 9. 10.(목) 10:00~	주택과		
	원스톱허가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2026. 9. 11.(금) 10:00~	도로과		
	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관광과		
2026. 9. 12.(토) ~ 9. 13.(일)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		
2026. 9. 14.(월) 10:00~	농업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2026. 9. 15.(화) 10:00~	서산버드랜드사업소		
2026. 9. 16.(수) 10:00~	감 사 결 과 강 평		

※ 행정사무감사 계획(일정) 변경 시 출석대상 공무원 변경

※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변경시 해당부서 및 출석대상 공무원 변경